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2차 평화재단 심포지엄 토론결과 자료집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펴낸날

2006년 9월 8일 (금) Published on September 8, 2006

펴낸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Published by the Peace Foundation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137-875) 1585-16 Seocho-3-dong, Seocho-gu, Seoul, Korea (137-875)

연락처

T 82-2-581-0581 F 82-2-581-4077

E-mail) staff@peacefoundation.or.kr

Home Page

www.peacefoundation.or.kr

제2차 평화재단 심포지엄 토론결과 자료집

| The 2nd Peace Foundation Symposium

The Third Is a second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2차 평화재단 심포지엄 토론결과 자료집

목차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06 │ 인사말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08 | 축 사

- 08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11 | 마크지멕 (주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소장)

13 기조발표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19 │ 제1회의 주제발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8 | 제1회의 논평

- 58 조셉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
- 60 │ H. E. 킴 루오토넨 (주한 핀란드 대사: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
- 65 정진성 (유엔인권소위원회 정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69 기 김문환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과장)

72 시제1회의 정리발언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5 시 제2회의 주제발표

국내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 77 |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푸는 첩경 원재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한동대 교수)
- 83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접근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91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96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보고 박요셉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국장)
- 100 | 북한인권개선 활동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107 제2회의 논평

- 107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타 소장)
- 110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 114 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 118 기일김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 연구원)
- 120 기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23 | 전체회의 질의응답

131 | 폐회사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 265 | 평화재단 소개
- 222 회의 프로그램

인사말

1996년, 제가 중국에서 북한난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조선에는 지금 식량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어요." 하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란 걸 확인하고는 "굶어죽는 북한 동포들을 살리자"며 전국을 돌며 눈물로 호소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995~2000년 사이, 북한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수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었기에 외부세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죽음'이었고 '조용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량이사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그들을 대신하여 그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견디다 못해 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무작정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인신매매, 체포, 강제송환, 처벌의 연속적 고통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UN 인권 헌장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민의 실상과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해서 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해결하자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처



럼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콘라드 아데나 워 재단>과 재단의 한국사무소 소장님이신 마크 지멕 (Mr. Marc Ziemek)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특히 주한외교사절단 여러분, 외신기자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 진행해주실 분. 발표하고 토론을 맡이주실 여 러 전문가 분들과 그 동안 북한 인권을 위해 애쓰신 여러 단체의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논평을 해주실 EU. 미국. 영국. 독 일, 일본 대사관, 그리고 한국외교통상부, UN인권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EU를 대표하신 핀란드 대사님께 더욱 감사드립니 다.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토론 중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다양성의 풍요로움으로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6년 7월 11일 평화재단 이사장 법류(法輪)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며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먼저 북한주민 인권개선의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평화재단 이사장이신 법륜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 보면 과거 유엔인권위원회의 주요의제 중 하나였으며, 유엔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지위를 격상하여 지난 6월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향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6. 15에는 유럽의회에서 북한정부에게 북한주민들의 표현, 이동, 종교의 자유보장, 사형제 폐지,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이나 인권모니터링 단체의 북한입국 및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오늘 심포지엄에 킴 루오토넨(Kim Luotonen) 핀란드 대사님을 비롯하여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대사관에서 참사관님들이 참석하여 논평을 해주시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문제를 보면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그룹으



로 나뉘어 이념적 갈등을 보여 오고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 른 접근법과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북한인 권문제에 관한 입장은 나름대로 일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 인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평화재단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참으 로 시의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인권문 제에 대하여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인권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데, 각자 자기주장만 하다. 보면 오해와 갈등이 깊어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주 만나서 심도 있 는 토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른 견해들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도 있 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평화재단 심포지엄이 계기가 되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과 그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 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내외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하여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여기에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과 지지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

축사

북한인권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염워하며



마크 지멕 (주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소장)

안녕하세요. 저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대표로 있는 마크 지멕입니 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로)

대표 여러분과 토론자 및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콘 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대표하여 이 심포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일정한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인간의 권리는 전 세계적으 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실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더 파악되어야 하겠 습니다만, 북한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통제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그 운명을 알 수 없게 된 많은 탈 북자들처럼, 북한 밖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또한 공공연한 일입니다.

저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이 심포지엄이 단지 이 심각한 문제를 거론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능한 해결책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 기반을 둔 정치적 성격의 재단으로서 우리 재단은 분단국가라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의 지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민주주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안정과 평화의 가장 확실한 기반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法治)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포지엄이 북한 국내외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상황 개선과 나아가 미래의 통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며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기조발표문

남북화해와 북한인권 개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오늘 우리의 당면과제는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화해, 민족의 통일, 북한 인 권개선 등이다. 한반도의 평화·화해·통일 문제는 인권 문제의 조건이고 원 인이며, 인권문제는 평화·화해·통일운동의 목적이다.

첫째. 현재 가장 긴급한 문제는 평화정착이다.

한반도는 분단 61년, 정전 5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 핵개발. 미사일 발사문제로 촉발된 북 미간의 갈등이 극 에 달해 미국이 군사적 선제공격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초긴장 상태이다. 우 선 이런 당면한 분쟁의 불씨를 꺼야한다.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여 53년간 지속되어온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다

남북 당사자 간, 그리고 남・북・미・중 사이의 평화체제 수립은 한국전쟁 의 완전종식뿐만 아니라 북 · 미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킨다. 나아가 한반 도를 둘러싼 6개국 간의 공동안보조약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 위협도 말끔히 제거해줄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 체제도 안정이 되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즉, 13년이나 되는 장기적 군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동원의 감소, 체제 위협을 이유로 가해지는 각종 기본권 유보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것은 지난 60년간 준 군사 조직화된 북한 사회를 일반 시민사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둘째, 과거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한은 적대적 체제경쟁이 격화되어 전쟁까지 치르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적대감정 때문에 상호간 약속이나 합의가 조금만 어긋나도 불신이 깊어지고 바로 적대관계로 되돌아 갈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언행을 조심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작은 약속일지라도 서로 성실히 지킴으로써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한다.

먼저 과거 60년간 적대적 체제경쟁 하에서 자기 체제를 수호하고 상대체 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전술을 폐기해야한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각종 법률을 개폐하여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전쟁의 외중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및 국군포로와 전향 장기수의 상호 송환 등을 성사시켜 과거 적대관계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분단 상황에서 자국 정부의 법률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 정부의 법률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민족화해선언을 하고 '민족화해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 간 화해와 평화는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로 나아기려면 서로 간에 공통점을 점점 키워나가야 한다.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주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7500만 겨레가운데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은 2000만 북한주민이다. 그러 므로 2000만 북한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에서 신속히 해방되어야 한다. 그 러려면 먼저 북한정부는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우 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개인농으로 전환하여 농민들의 노동의욕을 높여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주체농법을 폐지하고 농업 신기술 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농기구 생산과 비닐·비료·농약 등 농자재 생산 증 대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증산된 식량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남한정부는 3~5년간 식량부족분을 충분히 지원하여 먼저 기이문제 를 해결하고 비료, 농약, 농기구, 농기계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식량생산량 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지원하여 질병을 퇴치 하고, 교육기자재와 난방연료,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북한주민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동의 자유, 말의 자유(언론의 자유), 노동 3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법기관에 연행되었을 때 폭행이나 폭언. 고문을 받지 않아야 한다. 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에 정해진 형벌만큼만 처벌을 해야지 교육용으로 과다하게 임 의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행한 행위가 아닌 아버지 등 친 족의 범법행위로 연대처벌을 받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정치범은 공개적 으로 법에 의해 공정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공개처형 등 반인류적 형벌은 중지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와 국제사회는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여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북한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유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탈북난민은 보호되어야 한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극한적 상황에서 북한을 이탈한 탈북난민들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강제송환하지 말이야 하고, 북한정부는 송환되거나 자진 귀국한 난민들을 처벌하지 말이야 하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탈북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치. '평화. 화해. 통일'

북한인권 현실은 열악하다. 열악한 인권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정부의 참여와 노력이필요하다. 우리가 북한정부를 비난하면 북한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없고, 침묵하면 북한정부의 각성을 이끌어 낼수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정부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고, 그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안보환경을 조성해 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경제지원을 해주고, 북한주민의 인권이 항상될 수 있는 방법을 북한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문제제기를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을 덮어 두자고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드러난 인권 현실만 보고 무조건 북한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체제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열악한 북한인권현실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드러난 인권현실을 관찰하는 데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러한 인권 현실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남북화해와 공존, 인도적 지원과 경협, 민족공동체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관 등이 북한인권 개선을위해 함께 추구해야 할 요소이다.

제1회의

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1회의 | 주제발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



- I. 서론
- 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Ⅲ.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의 실효성 평가
- Ⅳ.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향
- V. 향후 과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북한사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 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상황이 부분적으로나마 알려지기 시작하였 다. 당시 유엔기구차원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1997년과 1998년 인권소 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내부의 구체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 형식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려와 개선촉구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미국과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인권 관련 개선촉구 노력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유럽연합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인식과 인권침해상황이 초래된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매우 편향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이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나 평가보다는 특정사안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와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요구가 병행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매우 극단적인 대결의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선요구가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국제사회와 한국사회는 대북인권정책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춰져 왔다. 물론 국제사회와한국사회가 각기 동일한 인식과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개별국가 및 인권단체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해 다른 시각과 개선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제까지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과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다양한 접근방식이 실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거두어 왔는지를 평가해 보고자한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서 국내외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갈등이 아닌 협력관계 로 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북한당국이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북한내부 에 인권운동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자료는 매 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주민들의 규모가 확대 되면서 북한상황에 대한 자료가 증가하였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서도 나 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사회의 구조적인 인권취 약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개처형, 광범위한 정치범수 용소와 강제노동, 불법 및 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강제 송화된 탈북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과도한 처벌, 사상, 양심, 종교, 의사표 현, 평화적 집회결사,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 제약, 여성의 인권침해. 송환여성 출산 영아살해. 강제낙태. 실종 형태의 외국인 납치 관련 미해결 문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 등이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 국사회의 관심을 편의상 국제인권규약의 분류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국제사회와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심화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 한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 였다.1) 물론 실제 식량난의 구체적인 실상, 즉 지역 혹은 계층에 따라 차이

¹⁾ 한국민권연구소의 장창준 상임연구위원은 과거의 '보릿고개' 경험이 있었으며, 그 당시

를 보이고 있는 식량난의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이 발생하게 된 주요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주의권 경제의 붕괴로 인한 외부적 요소와 함께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초래된 상황에 대한 책임공방은 식량난의 원인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식량난의 원인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및 정권의 차별적 식량분배 등으로 해석 하는 한 부류와, 내부적인 모순보다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 및 비우호적인 국제환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자는 식량난으로 인해 희생당한 대규모 기아실태를 부각시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북한당국에게 돌리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및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식량난이 가중되었다고 평가하는 시각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초래한 외부의 위협이 북한당국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식량난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상에 대한 책임소재도 북한당국에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미국 등 국제사회에 책임을 돌린다. 또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한 국제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 실태, 즉 이사자의 규모에 대해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평가는 상당부분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전반적인 북한경제의 붕괴와 함께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식량난의 원인을 특정요소에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북한당

^{&#}x27;인권유린'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북한식량난을 인권문제로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징한다. 동시에 북한당국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 북한인권위원회는 기아와 인권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식량난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특정지역에 대한 식량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외부지원이 시작되자 식량수입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의 식량난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 나. 과연 북한당국이 지역별 식량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할 능력을 보. 유했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세계의 식량지 원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요구 하는 자유로운 접근 허용 및 분배투명성 조치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었 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사회가 근본적으로 개인의 성분 에 따라 사회적 혜택이 매우 차별적인 체제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식량난 에 대한 대응도 개인의 생명보다는 체제안전이 우선시 되었던 것으로 평가 된다.

2. 체제의 구조적 모순 :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북한주민의 신체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인식은 북한체제 자체 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민주주의' 를 '주민들이 자체의사로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로 규정하면서, 북한체제의 반인권적인 측면들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는 주로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북한당국은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 용소를 활용하여 왔다.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행위 와 범죄가 만연하면서, 공개처형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러한 공개처형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인권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다. 공개처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뿐만 아 니라 국가기물이라는 이유로 전기선, 식량, 소와 같은 물자의 단순절도 까지 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처형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즉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공개처형 관행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시각과 함께. 사회적 범죄를 막기 위해 북한당국이 취한 현실적인 조치로 용인하는 시각이 있다. 공개처형은 적절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사형 집행절차에도 검사가 입회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법률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공개처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볼 때 과도한 형의 집행이며, 어린학생들 을 포함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실시되는 형 집행은 목격자들 에게 극도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으 로 거론되어 왔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개처형을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하여 '문화적 상대주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태형 혹은 미국의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과 동일한 맥락에서 예방범죄차원의 고유 한 행형절차로 파악하고자 하였다.2) 이들의 주요 논점은 북한내부의 문화 적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의 인권을 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당연할 것으로 인정하나. 규모나 실태 면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기한다.3)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특별히 주 목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북하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한국사회 내부의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4)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독일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와 비교하고 있는 반면, 국내적 으로는 북한의 정치현실상 불가피한 사회통제의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과 함 께 북한민주화운동단체들이 탈북자증언을 토대로 정치범수용소 내의 인권침 해 실상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을 부각시켜왔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사회전체가 거대한 정치범수용소와 같다는 지적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 상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5)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북한정권이 유태인 말살

²⁾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국인권재단 편,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2」, 사람생각, 2002; 김근식,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2003.7.30, pp.3-14

³⁾ 장창준 상임연구위원 . "'북한인권법'과 이북인권상황의 실체" 한국민권연구소

⁴⁾ 허만호 "북한의 인권문제 :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와 한국의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간담회」, 2003.7,30, pp.53-98

⁵⁾ 북한인권서울국제회의, 2005.11, 서문.

정책을 추진했던 나치와 유사한 비인도적인 집단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 로, 북한정권의 교체 없이는 근본적인 인권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3. 분단과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

이제까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에서 일본인 납치자의 문제는 포함되었으나, 한국인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관련가족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63 명의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납북자 가족단체6)와 국 군포로 송화추진위원회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여 인권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7)

한국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노력을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수이산가족으로 접근하여 이산기족의 상봉. 주소확인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왔다. 반면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6.25 전쟁 중 반공포로의 일방적 석방 및 체제대결과정에서 납남자 문제 등을 제기함 으로써, 관련 사안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국정부는 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즉 분단시기 '실종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인권 유엔특별보고관은 2005년 11월 한국방문 언론보도 자료에서 전 쟁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과 다수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들의 '실종'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규명과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2006년 6월 통 과된 유럽의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도 남한 납북자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일

⁶⁾ 전후 납북자문제에 대해서는 납북자가족모임과 납북자가족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 쟁 중 납북자문제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있다.

⁷⁾ 최우영. "납북자 인권문제와 송환운동." 북한인권정보센터. 「재외탈북자 및 북한인권문 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04년 하계 북한인권워크숍, 2004. 6, 25-26, pp.33-42

본정부와 관련단체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촉구를 통해 북한당국의 시인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북한은 북일수교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로 인해 납치자 문제를 논의하여 왔으나, 식민지 기간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과 위안부문제와 연계하여 일본의 보상 및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또한 북한당국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권문제 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의 실효성 평가

이제까지 국내외의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는 북한인권상황 및 인권상황의 발생요인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정 권교체 혹은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반면 다른 극단에서 는 북한인권문제가 소위 미국의 적대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평가에 기초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적대정책 중단, 즉 북한체제보장과 지원확대가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서 두 극단적인 접근이 안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점차 나름대로 북한주 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 식이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북한인 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⁸⁾북한은 2006년 6월 1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납치문제가 적대관계에 있는 조일 사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대해 일본 당국에 공식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인도주의 견지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성의껏 풀어주었다. 우리는 납치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일본에 보내주고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그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자, 목격자들과의 증언청취를 근 50시간에 걸쳐 실현시켜 주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사망자들의 유품, 유골들까지 넘겨주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북한인권 개선방식을 비난과 압력의 접근방식과 대 화와 협력의 접근방식으로 크게 분류하여 실제적 효과를 실펴보고자 한다.

1. 비난과 압력

1) 국제사회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비난과 압력은 실제 구체적인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촉구 형태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시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아시아 워치(Asia Watch) 등 인권단체들이 북한 내 정치범 문제와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 러시아 벌목공 문제 등을 제 기하여 왔으며, 1992년 이래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탄원을 접수시켜 왔다. 유엔차원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난과 압력은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국제사회의 인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도 있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개별 국의 차원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이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인권 및 탈북자 보호관련 재정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유엔기구**〉**

1993년 제4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부터 미국, 유럽국가 및 러시아 대표들 은 북한의 인권 실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한당국의 국제인권기준 준수 및 정치범 석방 촉구, 북한당국의 국 제인권규약에 따른 북한의 인권개선 설득. 북한의 기본권 박탈 및 양심수 구금 실종 등 비판, 정치범 구금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심각한 우려 표명,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관한 관심 촉구 등이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해외를 포함한 거주이전의 자유보장, 인권이 사회 정기보고서 제출 등 4개항의 대북인권관련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함으 로써 유엔 기구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문서화하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인권소위 결의안이 주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유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탈퇴를 전격적으로 선언 하였으나, 유엔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엔차원의 북한의 인 권규약 이행보고서 제출요구는 이 후 북한의 보고서 제출과 심의과정에 대 한 참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01년 2 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였다.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부터 3 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2004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 명되었다. 제60차 유엔인권위 결의안에는 북한당국에게 주제별 특별보고관 과의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이후 일부 수용되었다. 유엔인권위차원의 대북결의안에 대해 북한당국이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2005년 유엔총회에서도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유엔인권위와 유엔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 께 기술협력과 대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북한당국에게는 비난과 압력 (naming and shaming)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유엔인권위 원회의 대북결의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적대세력에 의한 체제위협 시도 로 규정하여 왔기 때문에. 대북결의안에 담겨 있는 기술협력 등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유엔헌장기구인 유엔인권위의 대북결의 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로 비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 위와 유엔총회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통과는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 사안 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즉 북한에 대해 특정국가가 아 닌 국제사회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당국에 대해 정책적 제안사항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방 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면 북한은 이미 가입한 4개 인권규약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보고서 제출, 심의 참여, 최종견해 수용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유엔조약기구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사항들이 북한당국

에게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일부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국가보고서 심의는 전반적인 인권실태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특정사안에 대한 지적과 북한 나름의 입장설명 요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요구 방식의 접근이 북한당국으로 하여 금 제한적이나마 실제 대응을 추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 다. 예를 들어 유추해석의 금지 등은 북한형법 개정 시 상당부분 수용하고 자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국은 국무부 인권보고서9) 및 인신매매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10)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여 왔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김정일 위원장의 책임으로 가주하고 북하의 김정일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통 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제고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를 강구 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미국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언급하여 왔으나. 분배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11) 미국은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문제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⁹⁾ 미국은 1977년 카터 행정부에서부터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각국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세계종교자유보고서는 종교자유 보고 서(2004, 9, 15)를 통해 북한을 종교자유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요감시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된 8개국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¹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미 정부기구로 2000년 이후 해마다 미 국무부를 통해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¹¹⁾ 앤드류 나치오스 미 국제개발처장은 2003년 7월 16일 NED 등이 주관한 북한인권학 술회의의 오찬 연설을 통해 북한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권생존(regime survival) 으로, 북한에서는 사회에 대해 완전한 통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는 존재하 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모니터링과 접근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substantial improvement in monitoring and access)이 이루어지고 영양실태 조사와 같은 소요조 사(needs assessment)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증명될 경우에만 대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제기하고자 하였다.¹²⁾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전미민주주의기금(NED)¹³⁾은 북한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한국 비정부기구(NGO)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북한인권개선 촉구는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보다 구체화되 었으며, 여기에 대해 북한당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법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한국사회내의 비난과 갈등으로 인해 북한인권문제 를 제대로 인식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 의 확산이라는 대외정책기조 하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 일방주의적 패권주의 행태로 비난됨으로써 미 국이 특정국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책수단들이 지역에 따 라 차별적으로 실시되는 자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관련 청문회 및 북한자유주간 등 북한인권관련 홍보행사 등에 탈북자들이 참여하 여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미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는 1990년대 초반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증언을 계속하여 왔다. 물론 극단적 인 인권침해상황을 초래한 구조적 모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 에서 북한사회가 유사한 인권침해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질서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으면 보다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안을 도출해 내기 곤란하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던 탈북자 보호관련 재정지원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북한인권특사의 역할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홍보에 치중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주요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를 통해 북한인권국제

¹²⁾ 상원 공화당 정책위 의장인 존 카일(Jon Kyl) 의원 등 4명은 2003년 1월 외교위원회에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 중단, 탈북자 지원 및 미국 망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 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법안은 탈북자를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이 가능한 난민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¹³⁾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은 레이건 행정부가 1983년 미 정부의 민주주의 확대전략에 따라 설립해 한 때 동유럽의 민주화 운동을 주로 지원했다.

회의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열악한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와도 상당한 입 장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2005년 미국무부의 탈북자실태 및 탈북자정책보 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은 중국 등 재외공관을 통한 탈북자 수용이 테러 및 탈북자들의 신변위험을 초래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2006년 북한자유주간에 동남아 체류 탈북자 일부를 받아들이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족에게 정치적 망명지위를 부여한 지역이민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대량탈북유도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은 미국이 인권을 빌미로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인식하 여 왔다. 특히 탈북자관련 미국의 조치가 대량탈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난과 압력은 북한당국의 인권에 대한 경각 심을 높여준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인권실태에 대한 비난으 로 일관되어 북한당국의 긍정적인 대응을 유도해 내지 못하여 왔다. 또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협력 이 바람직하나,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의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본>

일본의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간접적 형태이며 또한 자국의 국가이익 과 연관되어 왔다. 즉 일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상황 개선보다는 북한으로 납치된 피해자 즉 일본인에 대한 인권이며, 이들에 대 한 북한 측의 처리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소극적 대북인권정 책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과 연계되어 있다. 2002년 9월 17일 북일정 상회담은 북일관계에서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일본인 납치에 대한 김정일 위 원장의 인정에 일본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범문제 시인을 계기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여 왔다. 탈북자들의 체험 수기나 증언을 통해 일본사회 내대북 강경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2004년 5월 22일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는 북일 평양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일본인 납치피해자가족 5명의 일본귀환과 북한에서 사망으로 발표한 10여명의 진상을 재조사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에 식량 25만 톤과 천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을 지급하고, 북일수교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 일본정부가 북한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며14) 납치자, 핵, 미사일 등 여타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교섭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납치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인권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온 것이다. 즉 일본정부의 기본적 관심은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북경에서 열린 북핵 6 자회담에서도 일본의 관심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였으며, 이후 북경에서 열린 국장급 실무회담에서도 납치자문제해결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북경의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29명의 탈북자 처리에 있어서도 일본의 입장은 앞으로 해외의 일본 시설에 더 진입하는 것을 고무하지 않는 차원에서, 또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처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본학교 진입 탈북자들을소그룹으로 나누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중국과 협의하는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북송선을 타고 귀국했던 재일교포 93,000명과 일본인 처들의 규모가 6,000여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들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호노력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북송선을 타고 귀국했던 재

¹⁴⁾ James Brooke, "Koizumi's North Korea Trip Is a Flop in Japan," *New York Times*, May 24, 2004.

일교포 및 일본인 처들이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 우, 개인사례별로 처리하여 일본 내에서의 체류를 용인해 주어 왔다. 일본 에 입국한 재일교포출신 탈북자들의 경우 북송당시의 법적 지위를 감안하여 무국적자나 한국국적자로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일본 인 처의 경우에는 탈북 했을 경우, 북송당시 포기된 일본국적을 다시 인정 해 주는 절차를 거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본 은 탈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재일교포 및 일본인 처 본인과 그 가족문제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보호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대량탈북을 유도할 수 있 는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 수준으로 자국의 이익에 기초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 다.

2006년 6월 일본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일본 내 홍보 활동 및 탈북자 보호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납치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북경제조치(특정선박의 입항금지, 외국화 및 외국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들 이 보다 진지한 관심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북한 의 식량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대북제재 조치가 미치 게 될 파장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의회차원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과 유엔 등 다자간 인권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특히 북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북한당국이 점진적이고 가시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양자 간 정치대화와 유엔 등 다자간 포럼을 통해서 대북 인권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15) 물론 이러한 접근은 미국과 는 달리 정권붕괴나 체제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로

¹⁵⁾ 최의철,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서울: 통일연구원, 2005),

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6)

유럽연합은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을 비난하 거나 압력행사를 위해 활용하지는 않아 왔다. 우선 유엔난민고등파무관실에 의하면 2004년 12월 말 현재 320명의 북한 국적자가 난민자격을 얻어 EU회 원국들에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별로 독일이 276명, 영국이 17 명. 네덜란드가 15명. 덴마크가 7명. 아일랜드가 5명으로 밝혀졌다.17) 또한 2006년 3월 국제민간인권단체(NGOs)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대회'를 계기로 유럽의회는 탈북자를 참여시켜 북한 인권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유럽의회는 3월 23일 EU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등 조건부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18) 이어 6 월 15일 유럽의회는 의회절차에 의해 민간기구(Group of th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가 상정한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 다. 결의안에는 탈북하여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강제송환 이 후 위험에 처해 있는 개별사례에 대한 처벌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 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을 포함한 국제인권관계자들의 방 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EU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회원 개별국 차원에서도 북한과의 양자 간 협의로 대북지원을 실시하여 왔으나, 인도적 지원의 수요 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가 실현되지 않을 경 우에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지 못하며. 북한이 희망하는 개발지원으로의 본 격적인 전화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사회

¹⁶⁾ http://www.delkor.cec.eu.int/en/eurorea/humanrights.htm

^{17) 『}조선일보』. 2006년 3월 10일

^{18) 『}조선일보』. 2006년 3월 23일

소위 한국의 보수진영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 구조적 성격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인권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압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19)이러한 입장은 북한인권 침해상황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며. 남북 간 교류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다는 평가에 기반 한다. 다만 북한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북한정권 하에 서는 이권개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의 북한민주화운동을 제 기하는 일부단체들이 있다.

북한민주화운동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문제는 북한체제의 비민 주성에 있다고 인식하여, '행동적인 민주화운동'을 목표로 설정하여 왔다.20)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를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는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UN청원운동과 정치범 구명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왔다. 이들 의 북한인권 활동은 북한정권교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불가능하다 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21) 또한 탈북자동지회도 북한체제변혁을 목표로 북한민주화 및 인권개선관련 운동을 전개하여 왔다.22) 또한 해외탈북자 보 호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온 일부 기독교단체들도 북한체제변혁 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들은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의도 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탈북자 난민지위획득 및 북한종교자유 관련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이들 기독교 단체들은 미국과의 연대 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¹⁹⁾ 허만호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 개입과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2003-2005 북한인권관련 연구보고서, pp.17-58

²⁰⁾ 곽대중, 「한국시민운동의 북한인권문제 무관심에 대한 고찰」(서울:자유기업원, 2005)

²¹⁾ 동 단체는 "나치수용소에 버금가는 전대미문의 인간도살장에서 죽음만을 축복으로 기다 리는 20만 정치범" … "수백만의 목숨을 독재수단으로 삼는 수령유일체제를 머리에 이고. 어찌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녕을 논할 수 있으며, 인류의 정의, 인간의 양심, 자유와 박애를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22) &#}x27;우리민족은 일제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싸운 인사를 애국열사로, 민족의 영웅으로 … 무한히 존경 … 지금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참상은 일제 통치를 몇 배로 능가 … 우리 들은 북한에 남겨놓고 온 … 그들을 하루빨리 구하기 위해 한 몸 바쳐 싸워야 합니다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비난과 압력에 활동의 주안점을 둔 대부분 단체들은 북한체제 변혁 이외는 별다른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소위 보수차원에서도 북한 정권의 개혁 등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반도 위기상황의 재현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인권문제의 거론이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3) 또한이들 단체들은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입장이 북한인권유린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여 왔다. 24)이들 단체들은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민간단체결의문"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북한인권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인권문제 중요성 인식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생존위협에 대한 해소, 교류와 협력을 통한 외부접촉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모색은 지역갈등 및 혼란으로 인한 인권악화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대화와 협력

^{23) &}quot;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는 점이 인권유 린을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 …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행위 …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 올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 역할 특히 중요 … '퍼주기' … 일방적인 지원만 할 뿐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계하지 않았기 때문 … 결과적으로 김정일 악마체제를 공고히 하는데만 기여 … 한국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북한인권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

²⁴⁾ 대한변호사협회는 2005.12 성명서를 통해 대북식량 및 비료지원과 공동행사 등 정치적 해결만으로 북한인권문제 해결할 수 없으며, 인권문제 논의를 통해 북 체제붕괴 없이 개방 된 국제사회 동참,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 국제사회

EU는 1995년 5월부터 전반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과 양자간 교역이나 협 력협정을 체결할 때 인권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시켜 왔다. 따라서 EU국가 들이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의제 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25)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수교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EU국가들의 수 교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과 독일은 대북수교를 서둘렀고, 이에 대해 프랑스는 '공조정책'을 주장하며 비판을 가 했다. 이와 같이 회원국 간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2000년 11월 20일 EU 는 대북 행동지침(EU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을 채택하여. EU와 회원국들이 대북 관계개선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합의하였 다. 즉 인권상황의 개선, 특히 유엔인권협약의 준수, 북한일반주민들의 외부 지원에 대한 접근. NGO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 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대북정책은 북한의 입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야 한 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인권을 국제사회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 적인 가치로 여기고 대외정책에 반영하여 왔다. EU의 대북인권정책은 아시 아정책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아시아에서 EU의 적극적 참여로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고, 빈곤퇴치,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을 지원함 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 및 법치 존중에 대한 가치를 전파하고자 한다. 또 한 EU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여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래의 정치, 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26)

EU는 2001년 5월 14일 유럽연합과 북한 간 외교관계를 정식 수립하면서

²⁵⁾ 허만호 "2003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과정 및 내용분석," 「제22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권리 학술토론회, 북한인권시민연합, 2003.5.26

²⁶⁾ 유럽과 아시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틀(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s).

http://europa.edu.int/comm/external_relations/sia/doc/com01_469_en.pdf 그리고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r10100.htm 참조

인권대화를 요구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포용정책으로 과거 인권 사각지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인 입장을 선회한 것이 다.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압력을 견제하려는 북한은 EU와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외교관계 수립과 인권대화 개최에 양자가 합의하였다.

EU는 북한 인권에 대해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 면서 EU-북한 간 정치대화의 일환으로 인권세미나 및 기술협력을 추구하여 추진하여 왔다. EU는 인권회담(2001.6.11~12) 및 EU 인권세미나(2001.6.13) 등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성사시킨 바 있으며, 2002년 6월에는 북한과 인권문제의 지속적 협의에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EU는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대북지원을 통한 체제 개방을 유도하여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인권 및 세계평화를 존중하는 나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EU는 북한의 인권과 기본권 훼손, 법의 지배 부재,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유엔기 구와 NGO등의 접근 곤란 등을 지적하였으나, 북한당국은 인권문제가 없다 는 입장만 견지27)하였다. EU는 북한을 인권대화에 이끌어냈다는 데에 의의 를 부여하였으나, 일련의 인권대화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특히 프 랑스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외국 NGO에 대한 제약 철폐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개방 등 인권문제를 대북 수교조건으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인권관련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랑스는 북한 의 인권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MSF와 같은 자국 NGO 들의 활동을 통해 탈북자문제 등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다.

EU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설을 통해 교류를 증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역할에 관심을 갖고

²⁷⁾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r10108.htm 및 대북한 행동지침 2000년 11월 (Korean Peninsula— European Union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 http://www.fes.or.kr/K Unification/GAC-Nov2000.htm 참조

핵문제로 악화된 북미관계를 감안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의 중재자로서 역할 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EU는 북한인권문제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러나 북한당국은 EIJ와 서방국들이 특정 국가를 선별적으로 거명하고 비난 하는 것은 그릇된 관행으로 실질적인 인권상황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 북한당국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인권문제 거론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지만 EU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하였다. 북한당국 의 이와 같은 반응은 북핵 6자회담의 지지부진한 진전 등으로 미국과의 관 계개선이 난관에 봉착하고 미국이 인권문제로 대북압력을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미국과 EU를 분리시켜 국제적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방편으로 활용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당국의 의도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결 의안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북 한 핵문제가 악화되고 기타의 국제적인 관심 사안이 제기되면서, EU도 핵문 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없이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과 의 교류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한국정부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서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남북당국 간 대화의 당사자로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촉구 를 하기에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북인권정책 4원칙을 설정하 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다. 첫째,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 리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

토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정부는 제60차,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에 기권하면서 투표입장설명(EOV)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동감하며, 남북관계 확대를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우리정부는 북한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스스로 변화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촉진시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또한 정부는 식량난 등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조 하에국내입국을 희망할 경우 전원수용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4년 7월에는 정부가 특별기를 투입하여 동남아 체류 탈북자들의 집단입국을 지원하였으며, 이로인한 남북관계 경색도 감수하였다. 우리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회의및 남북대화 등 계기시 마다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및 국군포로납북자에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변화,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해결을 촉구하여 왔다. 또한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위해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왔으며, 북한인권 NGO 등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국내외 배포를 분기별로 지원하여왔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 남북한 화해협력과정에서는 이산기족 상봉 등 급박한 인도적 사안 이외의 북한인권문제는 거론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남북 간 에는 호혜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부터 한 차원 높이는 차원에서 남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체제 유지를 지원하면서 하바도 평화와 안전을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대비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 간안보의 확보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한국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빠른 진전을 기대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도 동일한 중요성과 속도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크게 제고되었다. 따라서 향 후 경제협력과 인권문제가 비대칭적 구조로 나타난다면 한국국민들의 저항 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위협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이고 간접 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미국의 '2004 북 한인권법' 발효 등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중국과 기타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과 인권문제를 검토해 보면 발전이 곧 인권개선으로 연계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경제개발과 인권개선이 상호강화(mutually reinforcing)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남북교류 및 경 제협력과정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 다.

국제사회의 압력 이외에도 북한의 인권존중과 민주화는 중장기적인 차원 에서 한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이자 한반도 및 지역 안정의 주요 과제임을 인 식하고 인권과 국익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 회는 좀 더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이익과 인권을 동일

시하는 균형적인 접근에 따라 남북관계와 인권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당국에게도 인권문제는 국제적 고립 탈피, 경제협력 등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인권문제는 북한의 선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권존중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대북인권접근은 호혜적인 차원에서 경제지원과 인도적 사안 해결 및 인권개선 설득 등을 병행하는 원칙 수립과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3) 한국사회

소위 진보진영으로 불리는 한국인권단체들의 경우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유보하는 이유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여타의 인권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28)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우 선론을 제기하는 논리로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개선촉구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북한 스스로 인권 항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facilitator)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외부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서방, 특히 미국의 접근법이 함의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²⁹⁾ 또한 이라크 침공을 통해 보인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북한의 경우에도 인권을 명분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의 인권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

²⁸⁾ 박경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녘 인권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상황과 국제 협력, 2005,11,3

²⁹⁾ 정기열. "북한인권문제의 통전적 이해." 경실련 통일협회 토론회 자료, 2006.5.2

체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인권운동단 체들을 반북운동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유엔과 국제인권은 미국의 일방주의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담론이 지속되면서, 진보진영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대 한 유보적인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인권개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상 황에 놓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단지 '미 제국주의의 불순한 내정간섭'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적극적 문제제 기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실패한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가능성 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소위 '불량국가'로 규정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근 본적인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남북한에서 변혁적 운동이 동시에 형성되고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미국의 북한인권문제제기와 강력한 군사적 위협감축을 전 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과정에서 인권적 관심이 표명되어야 한 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우선론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내정간섭 혹은 제국주의적 개입으 로 규정짓는 것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4) 중국

유엔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인권문제를 근거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식민지 통치를 경험한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서방의 인권문제 제기는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당시국들이 상황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압력과 이중적 수단을 가지고 특정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비난하였다.30) 중국은 명시적으로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북인권결의안의 채택 배경을 미국의 일방주의와 연계하여 비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논리로 특정국에 대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가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탈북자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는 탈북자문제가 관련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3국 추방의 형식으로 탈북자의 남한입국을 묵인하여 왔다. 또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처벌은 가급적 피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사회의 탈북자강제송환 금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주자'라는 명분으로 송환을 지속하여 왔다. 송환과정에서도 일부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입국 시도로 인한 중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심문기록을 북한에 인계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탈북자문제로 인한 자국 내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대량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실혼 등으로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들 문제가 공론화되지만 않는다면 현상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중유 지원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중국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거래와 지원 의 규모가 상당할 것 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요한 생 명선(life line)으로 기능하여 왔다.

³⁰⁾ Statement by H.E. Ambassador SHA Zukang, Head of Chinese Delegation, on Item 9 at the 59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1 April 2003), http://www.china-un.ch/eng/45906.html.

중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적 태도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을 침해하는 것은 삼가 하나, 기타 일 반적인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침묵과 우회적인 조치를 취하여 왔다. 국제사 회의 강력한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최근 탈북자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 역시 탈북자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은 가능한 한 탈북자문제를 포함 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모호한 전략을 구사하는 등 소극 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으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면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 등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 한 인권문제가 연관되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든지, 기타 사안에 대 한 입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일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 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중국의 우회적인 언급은 주로 탈북자 처리와 연 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 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취해 왔다. 초기 탈북자 에 대해 양자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조-중 양국이 상호 송환에 합의 한 것은 중국 측이 탈북자를 국경을 넘어선 범법자의 차원에서 파악한 것으로 인권 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식량문제에 따른 생존권 문제를 인권문제 보다는 '일시적 경제적 유민'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였 다. 한편 탈북자 문제가 국제화되고, 중국외교정책 및 대외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자 중국의 입장은 국제법 원칙에 원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기본적으로는 평화공존 5원칙에 의한 내정불간 섭을 존중하나, 탈북자의 경우처럼 북한 경내를 탈출하여 중국소관 상황이 될 경우 이를 사안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안에 따른 처리란 국제 적 여론에 주목받을수록 중국이 탈북자 처리에 있어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 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중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불간섭 정

책이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인권 참여를 종용하는 우회적, 간접적 권고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평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북한관련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동시에 국제사회의 관심현안으로 제기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개선이 동시에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이 시작되었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하는 것은 북한인권상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북한정권에 대한선호를 떠나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 평화 사이의 민감성과 두 사안의 상호보완성에 주목하게되었다.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적 환경마련은 남북, 북미, 북일 관계등 탈냉전이후 지속되어 온 적대적 대립관계의 완화 및 종식에 있다는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체제 중심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군사주의 극복 및 군축'이라는 남북한 동시과제를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적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3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북한인권개선 노력은 병행되어야 한다. 특정사회의 인권개선은 해당 사회의 발전 상태와 삶의 질, 인권에 대한 인 식수준, 우선순위와 현실적 가능성, 해결주체의 실천력, 법제화와 정책적 수 용력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좋은벗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권적 차원과 체제적 차원의 인권침해 문제제기는 의도와 절차에 있어 왜곡될 여 지가 많으며, 수용되어지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³¹⁾ 정욱식, "북한인권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2003-2005 북한인권관련 연구보고서, pp.59-68.

적극적인 인권대화 및 북한이 인권대화에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인권 개선환경 조성을 위해서 는 한국정부와 민간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지속적인 우려표명과 북한당국 의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 인 권에 관심을 갖는 주체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접근이 되어서는 곤 라하다. 정치적 편의에 의해 북한인권 논의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화의 당사자 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총체적이고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특정국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 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모든 측면이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인권의 한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총체 적이고 균형 있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완 화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은 남북한 주민 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 한이 외부의 안보적 위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 소시켜야만 보다 본격적인 인권개선 촉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당국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남북인권대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논의에 대한 능동적 개입 과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Ⅳ.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향

1.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시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북한인권 각 개별사안 관련 정확한 실태 및 최근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 한계를 보여왔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상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난으로 인한북한사회의 통제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증가 등으로 인해 북한내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이전 보다 많이 열려 있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가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확인할 수있는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원(information sources)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는 북한인권 관련 조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체계적 인권실태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체류 탈북자의 경우 체류의 장기화, 체류지역의 확산 등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중국 내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실태 및규모를 파악하고 상황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 인권침해 사례에서 구금시설 등에서 일선 공안요원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심각한 점을고려하여 독일사례를 원용,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방지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32) 북한의 인권상황은 지역 및 계

³²⁾ 윤여상, "북한인권 피해조사 및 기록보전소 설립과 운영 방안"

층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서도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권력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사안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변화에 따른 혼란, 무질서, 관료부패로 인한 주 민들의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2.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 병행추진

한국사회의 대북인권 논의에서 초래되고 있는 남남갈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압력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 더욱 심 화될 기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남남갈등의 주요 요인은 한국사회가 대북인권개선 환경과 방식을 정치적 편향에 의해 자의적으로 모색하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 식은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하게 되는 과정과 절차, 결과 및 국내적 대응 과 연계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남 북관계, 한미 간의 공조, 지역관련국내의 협력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 해서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대 북인권개선 접근방식을 새롭게 정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 권 의제의 설정도 북한주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탈북자. 이산기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사안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해결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각 사안별 우선순위 및 연계전략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율하는 방향으 로 접근방식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 북한 인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인권개선은 한반도 평

http://nkdb.org/bbs1/view.php?id=kornkbdpaper&no=15 (검색일 2006.5.13)

화·번영에 기여할 것 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 논의와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경제난 극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와 민간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추구하는 한편, 협력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이 한반도 평화정착과정과 병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필요하다.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북한내부의 인권침해상황의 파급효과가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정책은 관련사안 들과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노력이 북한의 체제위협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평화번영정책 하에서도 국내외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우리정부가 대북정책 추진 시 염두에두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정리하고, 실제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북한인권상황 개선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북한의 빈곤퇴치 과정을 통한 인권개선

북한의 인권상황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악화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식량난 해결 등 근본적으로 빈곤문제에 대한 접근 노력 없이는 사실상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식량난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식량권은 북한주민들의 자유권 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 문에, 대북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현실상황을 이용하여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체제의 붕괴를 우 려하는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경제난으로 인해 악화된 인권상황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 및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최소한의 위기상황의 발생을 막아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존의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 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행 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북한사회가 빈곤퇴치를 위해 사회적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대북지원은 사회개발지원 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개선 노력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지원은 단순한 물품의 제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응급구호와는 달리 사회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의미한다.33) 사 회개발(social development)의 개념은 단순한 경제성장(economic growth) 뿐만 아니라. 화경적 관심(environmental concern)과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지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개발지원의 영역으로는 식수공급, 가족계획, 문맹퇴치, 소득증대 사업지도 등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빈곤층을 조직하여 스스로 개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조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층의 권익옹호와 지도력관리력 제고를 위해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주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투명한 방식으로 대북개발지원

³³⁾ Catharine Gwin, Joan M. Nelson, eds. Perspectives on Aid and Development,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Policy Essay, No.22, 1997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은행의 아태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실제 개발의 목표가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단위개발(Community Driven Development), 성평등(Gender)을 사회개발 및 빈곤퇴치의 주요원칙으로 상정, 사회구조적 갈등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개발 사업을 통한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 개발의 사회적 환경적 악영향을 감안한 사회보호망(Social Safeguards), 공적 영역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선정(Good Governance), 사회참여 및 시민사회(Participation and Civil Society)로 설정되어 있다.34) 개발지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원과정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방안들이 개발지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계획에 토지소유 혹은 경작권과 여성역량강화, 이동노동과 교육접근권, 사법제도, 사적영역의 인권역할, 빈곤퇴치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과정에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35)

이와 같이 북한사회 빈곤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의 하나로 규정되는 여성들의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빈곤상황으로 인한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빈곤퇴치 과정에서 여성적 관점을 투영(gender mainstreaming)함으로써, 여성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북한사회 빈곤퇴치의 주요한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세대주에 대한 소규모 대출제공 등의 방식으로 여성 스스로 빈곤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³⁴⁾ World Bank, Social Development Strategy for East Asia and Pacific; World Bank, Empowering People By Transforming Institutions: Social Development in World Bank Operations

³⁵⁾ Philip Alston and Mary Robinson, eds.,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owards Mutual Reinforcement(*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eter Uvi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Bloomfield: Kumarin Press, 2004)

4. 북한의 법치 지원 (rule of law)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특정지역에서 인권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치확립(rule of law) 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36) 특정사회에 서 사법제도상 문제는 인권보호체계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법률이 나 사법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거나, 경찰, 검찰을 포함한 사법제도 상 문제점은 인권침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법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법 치확립은 '인권문화' 확산을 통해 실제 인권의 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연 계되어 있다. 또한 간접적 차원에서 법치확립은 경제개발과 연계되어 보 다 효율적인 인권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법치확립은 민 주주의 및 선정(good governance)에 주요한 요소로 기능하여왔으며, 실제 제대로 기능하는 사법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민주주의 노력은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법치확립은 전쟁 및 갈등 방지를 통해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제기구 및 서방국가들은 인권침해 지역에 대한 법치 확립을 지원하여 왔다.37) 또한 법치확립지원이 특정지역 인권개선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여 왔다.38) 상당수의 아시아국가에서는 법 집행과 관련 '법치(rule of law)'와 '명령에 의한 지배(rule of order)'39)간 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법집행기관들이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

³⁶⁾ Randall P. Peerenboom,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What's the Relationshiop, http://repositiories.cdlib.org/uclalaw/plltwps/5-21 (검색일 2006년 5월 12일)

³⁷⁾ USIP, Rebuilding Afghanistan: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Security and the Rule of Law, 2001.12.11, http://www.usip.org (검색일 2006년 5월 12일)

³⁸⁾ Meryam Dabhoiwala, "Effectiv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Human Rights www.ahrchk.net/pub/mainfile/php/pandp/165 (검색일 2006년 5월 12일)

³⁹⁾ 명령은 법률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을 말한다. http://100_naver.com/100_nhn?docid=62207 (검색일 2006년 5월 12일)

에 법집행자로 기능하기 보다는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사회 질서유지(order enforcement)를 강조하는 경우 범죄수사 과정에서 주요한 인권존중 원칙(구타 및 고문 금지)이 무시되며, 경찰이 사법부 및 검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치권력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이는 법치와는 달리 불공평하고 불투명한 절차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특정사회에서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마련하고 부패를 근절시키는 것은 인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러한 법치확립은 사회개발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법 치확립 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안으로 평가된다.

복한당국이 최근 보여준 긍정적인 대응(법률 개정 등)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치관련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협력을 위한 내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반인권적인 제도 및 법률 등에 대해 북한당국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인권상황에 대한 북한 나름의 논리나 인식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사회와 국제사회 간의 시각 및 문화의 차이를 좁혀주기 위한 한국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사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법집행과정에서 주요한 인권원칙들을 숙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법요원들의 교육자료들을 원용하여, 남북한이 공동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국제경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와 계약분쟁 해소, 상거 래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등 각종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인바 이는 곧 인권문제인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인권문제는 경제문제이며 북한정권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하고 국제사회의 설득과 권고에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개별국가가 인권적 차위에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별국 가들도 '국가인권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법치지원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법령들이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아직 갖추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의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법률 집행체계가 독립적이고 형평성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기관의 인력교 육 및 체계구축에 필요한 물자 등 재정적 지원과 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이 자의적으로 집행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법률이 주민들 의 인권보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V. 향후 과제

북한인권 개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갖 고 있는 국제사회와 한국사회가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치적 차원의 대북인권 논의를 뛰어 넘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행위주체 별 역할 분담과 실천대안이 안고 있는 한계와 위험을 공유하면서 지속적 인 대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국제 적인 다자간 틀에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 양 자 간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대화 및 협력 노력 없이 비난과 압력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대립만 악화시킬 수 있다.

북한당국도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레짐에 참여하는 것이 인권게임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및 협력노력에 대해 만족할 만한 진전노력을 보이지 못하여 왔지만,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북한이 가입 당사국인 국제인권규약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북한인권사안 중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인한 반감 없이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을 발굴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당국과 대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의 요구는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북인 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북한의 정부 교체나 체제의 변화를 겨냥하는 것은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북인권압력은 국제규약에 의한 인권유린의 중단에 있고, 그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북한사회 환경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개선의효과가 주민생활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 권리를 높여주기 위해 북한당국이 필요한 내부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인도적 사안 해결에 우선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권개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북인권정책에서 중장기적인 목표에만 매달릴 경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북한이 나름대로 개선노력을 취할수 있도록, 최근의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

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북한당국 과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북한은 국제관계 에서 인권문제가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 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남북한사회에서 적대감해소를 통한 평화문화 형 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인권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

제1회의논평 1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

우선 북한의 식량위기와 어떻게 식량부족이 인권 억압과 결부되어 있는지 와 같은 인권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매우 어려운 주제를 균형 있게 분석해 주신 이금순 박사님의 발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시해야하고, 또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인권에는 식량과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한의 현실과 국제 사회가 바라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만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유와 투명성, 법치(法治), 식량, 협치(協治, Governance)같은 관련된 측면들과 이들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자주 논의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만, 미국은 하나의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와 상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 사법부는 행정부와 시민종교 단체의 반대 기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게 망명을 허용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부분들이 저마다 다양한 의견과 대응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다 저렇다



고 규정짓기는 힘듭니다.

둘째로 미행정부가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부시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 동들은 북한정권의 붕괴라기보다는 북한의 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목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권 정책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것일 뿐,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정책들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 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미국정부의 목표는 북한정권이 핵확산 금지조약이나 미사일 실험과 같은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르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논문은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발제자께서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화

제1회의 | 논평 2

H. E. 킴 루오토넨

주한 핀란드 대사: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

EU의회의 승인을 얻은 인권 가이드라인은 현재 모든 국가 간 대회에 적용되고 있으며, 크게 시형제도와 고문, 아동 문제, 그리고 무력 분쟁의 네 가지 영역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U는 대외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 국가들과 인권 대회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과의 대회처럼 인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이란이나 수단과의 대회처럼 폭넓은 의제 중의 하나로 인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주요 목적은 인권의제를 EU의 다양한 외교정책 의 중심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EU는 개발도상국들과의 쌍무적 관계에 있어서,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法治)를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원칙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몇몇 특수한 안건들은 시안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형제도,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이슈들은 공공연한 의제들이며, 협치(協治, Governance)나 성평등 문제들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가 이러한 안권문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EU는 EU의회와 UN, 그리고 관련된 포럼 등에서 결의안을 제출하고, 비판을하게 됩니다.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EU는 인권 의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의장단과 차기 의장단 그리고 EU위원회가 함께 북한을 연례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이타깝게도 지난해의 방문은 북한이 취소했고 올해 가을로 예정된 방문도 아직 성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방문하는 EU내의 회원국들 또한 북한 당국과의 개별적인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화가 기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 EU는 언젠가 북한당국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 문제들에 귀를 기울일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북한은 가입한 규약에 의거하여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비판의 여자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출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이는 인권상황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EU는 인도적 지원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진행될 뿐 인권 의제와는 전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문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결과는 북하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금순 박시님의 발표문 내용이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평화

제1회의 | 논평 3

쥬디스 고프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세계 전역의 인권개선은 영국 정부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면서 외교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권이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인권, 시민적 자유, 민주주의 등의 가치들을 확산시키기위해 국제적이고 양자적인 관계를 통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여기서 영국을 대표해서 발표하면서, EU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25개 국가로 이루어진 EU도 역시 다른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인권 문제들을 거론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인권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EU안의 우리의 파트너들이나 우리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국 역시 인권보고서의 여러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보고관들을 초청하여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들이 지적하는 것들을 수용합니다. 사실, 모든 유엔 보고관들께는 언제든 영국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공식초청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많은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영국과 EU를 우려케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인권침해상황의 세부사항들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



고관인 비팃 문타폰교수의 과거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도 인권이슈가 자신들을 때리기 위한 막대기라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 아무런 숨겨진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 해서 이 문제를 종결시킬 의도만 있다면 북한의 인권보고서와 관련한 우리 의 우려사항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과정에 일정한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 난 2001년부터 평양에 대사관을 상주시키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북 한 인권과 그 외의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 대사관직원들은 우리의 관심 사안들에 대해 고위급 수준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게 얼마나 느리던 간에 건설적인 개입(engagement)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 금까지 영국과 EU는 북한에 대해 인권사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 다.

2004년 7월에,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비팃 문타폰교수가 유엔북 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과 보고관의 임명. 둘 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EU는 2005년 4월에 유엔인권위원회에 또 다른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더 많은 다수의 지지로 가결되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결의안들에 부응하지 않자 EU는 다시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제기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분명한 의지에 부응해주기를 충심으 로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유엔을 무시한 채 북한에서 의 인권 문제가 미국과 소수의 유럽 국가들이 제기한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총회의 표결에서 88개 국가가 찬성을 한데 반해 반대를 한 국가는 21개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금순 박사님은 발표에서 EU가 핵문제와 인권 문제 때문에 인도적 지원

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

문제를 정치적 의제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EU의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당국이 2005년 12월 31일부로 북한 내의 인도적 단체들이 인도적 활동을 중단하고 떠나야 하며 모니터링도 제한될 것이라고 8월에 공표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올 3월, EC와 북한 사이에는 그동안 보류되고 있는 EC지원 활동들을 북한에 남아있는 NGO들을 통해 재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조심스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정부가 인권과 다른 문제, 특히 핵개발 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완전하고 정상적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인 우려에 반응을 보일 때까지, 영국은 EU 국가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과함께 적절한 국제기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권에 대한 대화가 설사 6자회담이나 더 광범위한 개입에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21세기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권문제를 위한 직접대화와 개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정책들이 기적적으로 변화를 유도해 낼것이라 기대하면서 그저 관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격려할 것이며 우리의 건설적 인 개입을 통해 영국과 EU,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북한 정권을 인권 의제 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서 국제사회의 우려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날이 속히 오기 를,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우리의 이런 정책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1회의 | 논평 4

정진성

유엔인권소위원회 정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제가 인권 소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인권 소위원회를 대표해 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개인으로서 듣고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담은 이금순 박사님의 논문을 읽어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 리고 EU 여러분들과 미국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금순 박사님께서 결론에서 지적하셨듯이, 정보의 부족이라는 것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북한 사회 의 폐쇄성 때문이지요. 그래서 외부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기 힘들고, 다른 한편 북한의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 르는, 갇혀진 상태라는 사실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변화를 위해서는 내적 동력이 중요하네. 그 동력이 현재 북하에서는 무기력 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탈북 여성 105명에 대해 조시를 하였는데요. 그 내용 중에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아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탈북자라고 하면 북한 주민 중 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외부 접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단 두 명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 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김일성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여성조차도 '유엔에서 어떠한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는 미국의 책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북한 정부가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린 1990년대 국제사회의 북 한 인권 논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 니다. 유엔인권소위원회와 미국 인권 기구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 금순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지적하고 계십니다. 핀란드 대사와 미국 대 사관 분도 똑 같이 지적하듯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90년 대 초부터 유럽의 NGO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 인권위원회 결의안이 나오고, 2005년에 총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북한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보고서를 1984년에 제출한 후 13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1999년에 다시 제출 했으며, 2005년에 3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권리 규약에도 북한은 1989년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10여년이 흐른 2002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2003년 아동권리규약 보 고서를 냈고 2001년에는 여성차별철폐규약에 가입을 하고 곧바로 2002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고서를 내는 것이 곧 북한사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 사회에 대응을 하는 모습 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사형선고 조항을 33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사형선고가 가능한 나이도 17세에서 18세로 높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의 법 개정에서 거주 여행의 자유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할 때, 아무튼 억압적인 상황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폐쇄된 북한 사회가 국제 사회에 노출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입장

을 정하고 그러한 흐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밑으로만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EU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 는 조금 지나치게 냉정한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북한이 인권위원회나 인권소위의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최초 인권소위에서 결의안이 나왔을 때는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것을 마치 북한만의 독특한 행위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위원회에서 국별 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대개 개발도상국인데요, 그 대상이 된 거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굉장히 큰 반발을 합 니다. 새롭게 신설된 Human Rights Council에서는 이 국별 결의안을 없애 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반발에 대해서 너무 과민 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북한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최대한으로 살려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 서는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 안보문제와 완전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대시분들은 투명한 태도로 설득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특히 북한 여성 문제를 볼 때. 북한의 정 치적 경제적 후진성과 봉건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당장 절대적인 국제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비판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특정 이슈에 맞춰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금순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경우를 보아도,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여성 할례라든가 인도나 파키스탄, 네팔에 있는 카스트 제도의 폐해 등 인권침해 문제들을 그 사회 내부에서는 거의 고치지 못하였지만 외부 국 제 사회에서의 논의가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단지 문화 상대주의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머무를 수 없으며,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점들의 해결은 결국 북한의 폐쇄성과 뗄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까지 내려오는 내적 동력 을 끌어오는 데에는 지금 정도의 개방성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북한 사 회의 폐쇄성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노력, 가령 인권 논의, 관광, 유학, 국제 회의 등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적 지원도 북한 사회를 개방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핀란드 대사님이 이 박사님이 인도적 지원 축소를 주장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이 박사님의 주장은 인도적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의 개발 능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새롭게 고안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북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도, 한국 내 탈북자들의 적응이나 다른 지원에 대한 관심은 약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 만두고, 건전하지 못한 청소년 문화에 빠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다 적극적 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의 | 논평 5

김문화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과장



제게 있어 이번 심포지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지향 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인권은 법률적인 문제, 정치적인 성격. 경제 사회적인 성격. 심지어는 유리적인 성격마저 지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구나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성격 이외에 북한이라는 특수성, 안보문제, 같은 민족이라는 문제 등의 추가적 요. 소가 있어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는 기 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접근법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냉전이 종식된 지 15년이 지나고 있지 만 아직 한반도에서는 냉전적인 사고가 잔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금순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동감합니다. 매우 현실 지향적이고 기능한 분석 틀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 술치 않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제가 1년 가까이 인권 사회과장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 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양한 의견을 접 한 것은 제가 앞으로 일 해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기본 입장은 작년 12월 초에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매우 소중하 게 생각한다.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 세 번째, 북한은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의 기도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의 공개적인 대북 인권 요구는 자칫 남북관계의 불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정권교체(regime change)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셨지만, 인식(perception)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생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한국 정부는 1995년 이래 매년 40만 톤의 식량과 1999년 이래 3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고 있고, 탈북자는 2006년 4월 기준으로 8200명 정도를수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북한 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 여섯 가지를 나름대로 구분하면, 현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은 서너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단 상황에서 오는 특수성, 식량난에서 오는 생존권, 북한 체제 내부의 자생적인 발전, 그리고 점진적인 인권 개선 추구가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네 가지 정도의 상황변화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첫째,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족하기 때 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보 확대 및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EU, 일본 그리고 주요 NGO들의 압력에 대해서는 상술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 6월에, 한국의 인권 외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위와 권한이 격상된 인권이사회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 6주간 열렸던 인권위 원회가 이제 1년에 최소한 10주, 4번을 열고 그 외에 특별회기를 열수 있습 니다. 즉 주요한 유엔의 인권 기구가 준상설화 되었고, 한국은 초대 이사국 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내적인 분열 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진영 과 진보진영 간 이념적인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관련한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인권 개 선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인권에도 더욱 중요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사회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 NGO 등 다양 한 행위자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EU는 국제사 회에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이념대립과 냉전 구조라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의 의제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규범이나 여 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익숙해지게 만들고 인권과 관 련된 능력을 배양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여러 분이 강조하 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3가지입니다. 첫째, 식량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이와 관련, 지원 물품의 배분에 대한 투명 성도 증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 을 허용하는 쪽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는 여성과 아동이 북한에서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지원을 할 때 특히 여성과 이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거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WHO. UNICEF 등과 협력해서 지원을 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화

제1회의 | 정리발언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요한 토론과 지적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국 내에는 한 가지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 등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연구 자로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근 인권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정진성 교수님이 토론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북지원과 탈북자문제를 주로 연구해 온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받는 처벌은 반 인권적이고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변화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북한 당국이 나름대로 단순 탈북과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탈북을 구분해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북한의 안전원들이 탈북자들을 구타하거나 고문하는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가령 같은 수감자들이 대신 구타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인권침해 지적을 피해가려



하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송환 탈북자들 이 처하게 되는 구금시설 내의 열악한 위생상황도 특정 시기에 부분적인 보 수공사를 통해 개선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국제 사회에서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 여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용되지 않아서 상당부분 국제사회와 북 한 당국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달에 미국 인권 특사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 사한 방식으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설사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이 라든가, 그리고 북한 인권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특정 부분,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EU 차원에서 북한 당국과의 인권 대화 내용, 그리고 북한의 인권 실무자들을 위한 기술협력 상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변화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 한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국제 사회가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과 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적인 소수 실무자들이 인권 의식이 나 규범에 대해서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 이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 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그리고 독일서기관님이 통일 전 서독에서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북한 인권센터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 인권 침해 사 례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북 한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일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대신했고, 현재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차원에서는, 인권기관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돕기 위해 북한 내에 상주하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유럽연합의 NGO 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NGO들은 단순히 긴급지원 차원의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전문성을 갖고 북한에서 지역개발, 그리고 북한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개발지원 사업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이를 개발 지원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규정하면서 개발 지원을 또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NGO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방안을,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 및 실무자들이 외부 세계를 좀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

제2회의

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2회의 | 발표 1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푸는 첩경

원재천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 캠페인 이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1. 들어가는 글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계륵(鷄肋)이다. 받을 수도 내칠 수도 없 는 주제가 되었다. 좌우와 보수-진보를 가르는 시금석이 되어간다. 국제사회 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더 가열되어 간다. 유엔 인권위, 미국의 북한인권법 안, 정부와 시민단체의 엇갈리는 대북인권정책 등이 혼란스럽게 얽혀있다. 이를 놓고 섣부른 이념논쟁으로 치닫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 사안을 함부로 왜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기본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국제화 된 사안이다. 남한이나 북한내

부의 체제적 필요에 따라 덮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당국에게는 점진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하고, 인권문제가 체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같은 것이 통과되자 뒤늦게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전개될 상황을 예견하면서 국제적 프로세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안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시안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는 이미 활동을 개시했다. 또한 유엔과 유럽 권에서도 북한인권 이슈화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활동과 그에 따른 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었다. 국제 인권단체들 간에는 북한 인권의 여론화에 대해 공감대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부의 예산지원이 가세함으로써 더한층 활성화될 여건이 조성되었다. 궁지에 몰린 탈북자들의 단체행동도 예상되고, 특히 재중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은 국내외에서 강하게 이슈화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에 반발해서 더 강한 고립정책을 쓰게 되면 문제는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정부는 인권문제에더 이상 침묵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3. 재중 탈북자 문제 대응

재중 탈북자의 문제는 북한, 중국, 남한이 다 해결을 원하는 사항이다. 해결이 늦어질수록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압력은 커지고, 당사자인 세국가의 부담이 가중된다. 미국의 북한인권 결의안의 절반 정도는 재중 탈북자의 상황을 다루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이 국제법, 중국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다루도록 강하게 촉구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명분이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이 다 구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정치적 타협으로 풀려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원칙적 대응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이제 난민문제에서 여성, 어린이, 종교의 자유의 문제 등 으로 계속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일단 재중 여성 탈북자들(전체 탈북자의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의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를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 NGO의 접 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해야 하며, 중 국에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합법적 신분을 허락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해 야 한다. 세 국가 당국자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면 재중 탈북자 문제는 비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대안은 무엇인가? 아시아 인권 레짐(regime)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서 '레짐'이란 정부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21세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군사경제 패권화. 일본의 군사경제 패권화가 긴박하 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지역안보 체제 논의가 중요하게 떠오 르고 있다. 중국-대만의 긴장, 중국-일본의 영토분쟁과 더불어 남북한의 문 제를 풀어갈 논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 내 경제체제를 다룰 공 간도 필요하다. ASEAN. FTA 등이 가동되고 있으나 그 구조 내에서 남한이 나 북한의 역할은 전혀 주도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권 전체를 향해 인권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제안하 자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주도권을

발휘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사안이다. 아시아권에서 자유와 민주화가 가장 진전된 나라에 속하고, 과거 독재정권의 이픔을 비교적 잘 극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었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 등을 놓고 볼 때, 기본권 보 장이 잘 이루어진 나라이고, 인권개선의 경험을 갖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 활동이 활발하고, 과거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이들이 정권의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는 등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 지역 인권체제를 확립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지역 인권체제가 이미 설립되어있어서 유엔 등에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인권 결의안을 논의할 때, 해당 국가들은 지역 인권체제의 틀을 통해 인권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대국의 일방적 압박을 완충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인권위원회, 미주인권협약(1969), 아프리카인권헌장(1963), 아랍 인권위원회(1969) 등 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륙에 지역 인권협약이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 있다. 아시아 인권협약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이런 방향이 북한에게는 어떤 설득력을 갖는가? 일차적으로 북한은 아시아 인권협약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즉 북미나유럽, 유엔 등에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직접 그 논의에 나서게 될 때 스스로 아시아 인권기준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입장이 되므로 북한정권이 논의의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중국이나 인권이 취약한 다른 국가들의 케이스와 함께 논의가 진행되므로 인권을 매개로 북한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남한사회에 끼치는 유익도 적지 않다. 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고 인권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아시아 인권협약이란 장을 통해서라 면 북한이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인권개선을 거론하는 것 이 남북 양측에서 당연시 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는 보수나 진보나 이론 (異論) 없이 동의하고 호응을 할 것이다.

이권이라 결국 삶의 질 문제이다. 북한이 선진사회를 건설하기 원한다면 인권 문제, 즉 삶의 질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 한이 WTO체제에 가입하려면 그 틀에서 요청받는 여러 조건들, 국제상거래 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계약분쟁 해소를 위한 법원 설치 등 각종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의 확립이 곧 인권개선과 직결되는 바, 인권문제는 경제문제와 분리된 것이 아니며, 북한정권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임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전향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세계 각국에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세계 체제에 제대로 편입되기 힘들 것 이다.

아시아 인권 레짐을 만들자는 구상은 사실 유럽에서 헬싱키협약을 통해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모델이다. 헬싱키협약은 70년대에 서부 유럽이 동부 유럽과 소련의 영토와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그들이 준수할 인권의 최소 기준을 만들었던 사례이다. 동유럽은 체제보존과 경제 지원을, 서유럽은 동유럽의 인권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안정화를 이루 었다. 북한체제의 일방적 붕괴는 지역 내 역학관계 및 평화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 고 북한 내에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어 북한의 민주적 질서 성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해내는 것이 최선이다.

5. 결론

대한민국은 21세기를 향한 국가비전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호응과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는 다름 아닌 아시아 인권중심국을 지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아시아 인권 협약을 제창함으로써 권역 내의 인권 논의를 주도하고, 아시아 인권법원이 한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시아권 민주주의의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국가생존전략으로 유엔국제법원과 국제형사법원을 유치한 바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인권교육과 국제법의 중심지로 국가를 자리매김한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21세기형 국가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 모두가,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살고 싶은 나라', 인권이란 고귀한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를 안팎으로 천명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평화

제2회의 | 발표 2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접근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전제

1)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 유엔 인권규범은 현실적이고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제임.
- 인권의 보편성, 불기분성,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한다면 각 체제와 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의 잣대를 마련하 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문제의 제기 역시 가능함.
- 북한당국 역시 최근 들어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우리식 인권기준'을 내세 우는 대신, 유엔인권규약에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방침임을 밝히고 있음.

2) 이른바 '인권 외교' 혹은 '자유의 확산'의 오류

- 그러나 이러한 인권규범을 국제정치 현실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 민주화 혹은 인권 담론이 국제정치에서 공평하게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음.
- 냉전시기 중동에서 서방세계는 봉건 왕정을 지지했고,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권위주의 군부정권을 지지하거나 쿠데타를 직접 지원하기도 함.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에 대해서는 지원이, 유엔 감시하에 직접투표로 선출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에 대해서는 경제봉쇄가 취해지고 있음.

3) 분쟁갈등의 예방과 인권개선

- 봉쇄와 압박, 군사적 위협 같은 수단의 사용은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시 되는 체제를 긴장시키고 권위주의적 체제에 내적 구심력과 정당성 제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 △권력자들보다 민중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 △다른 목적을 위해 우월적 힘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음.
- 코소보, 이라크, 아프간, 이란 등에 적용된 제재수단이 이들 국가의 민주 주의와 인권개선에 기여했다고 확신할만한 근거는 없음.
- 반면, 분쟁의 완화나 해결을 통해 양자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이는 분쟁(무장갈등 포함) 해결과 인권 (혹은 정의) 실현이 밀접히 연결됨을 의미.
- 2. 적극적 평화와 개입정책 :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개선

1) 적극적 평화와 과정적 정의

- 갈등분쟁의 구조적 요인이 제거된 상태(presence of justice)를 '적극적 평화'로 정의함. '적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권개선과 민주 화까지를 포함. - 한편, 적극적 평화론은 결과의 정의(substantive justice)만큼 결과에 이르 는 과정의 정의(procedural justice)도 중요하다고 보고 '과정과 본질의 변 증법'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과정을 담당한 측이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 다고 강조.

2) 간섭과 봉쇄 아닌 개입 (Engagement)

- 적극적 평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으로서의 개입.
- 권력만이 아닌 민중을 고려한, 정부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의 인도적 개 입.
- 분쟁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해당 사회의 민주적 주체 형성의 긴 과정을 고려한 섬세한 지원과 배려.
- 해당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연대적 개입.

3) 분쟁 당사자(장본인)의 접근

- 북한에 대해 남한 혹은 미국은 분쟁과 갈등의 한 당사자로서 존재.
- 예를 들어 남한의 분단국가와 시민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때려잡자 김일 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의 구호와 함께 형성되어 왔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남한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는 새로 운 의제일 수도, 낡은 의제일 수도 있음
- 남한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제기가 민주사회다운 문제제기가 되려면 내적 으로 지난 냉전분단시대의 정치적 구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며. 외적으로는 과거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 북한주민에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주자'는 북한해방론에 머무르거나 인권을 위해서는 외세의 정치군사적 개입을 용인하는 입장에 경도됨으로써 '인권과 평화'라는 본래적 가치를 도리어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

4) 참여연대의 접근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북한 인권을 모니터하는 전문단체는 아님. 한 반도 평화 정착과 군비경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체임.
-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하반도 인간안보의 확대와 긴밀히 연결된 주제로 인식하고 있음.
-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연대적 실천을 지지함.
- 단, 참여연대의 북한인권 접근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함.

가>인권의 정치화 배제와 인권개선의 윤리성 유지.

나>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다>갈등 예방적 접근원칙의 고수.

라> 분단과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에 유의.

마>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병행.

3. 유엔결의안의 한계

1) '결의안' 외의 방법

- 유엔인권결의안이 소외 '자유의 확산정책' 혹은 '변환외교'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에 유의.
- 그 결과 국제기구에서의 접근이 아무런 실효를 낳지 못하는 낙후한 '비 난의 정치'로 전략하고, 오히려 해당 국가(예컨대 북한) 인권 개선의 가능성 을 악화시키고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유의.
- 결의안 대신 북한당국에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처럼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외부에 공개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함을 전달하고 촉구하는 정부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다중 트랙의 대화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한 '인권기술협력과 자문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이 필요.

2) 실질적 인권대화의 필요성

- 인권개선을 위한 건설적 지적과 비판은 장려되어야 함
- 갈등 지향적 접근, 과도한 정치화의 접근을 피하고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
 - 북한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부터 접근하는 단계적 접근.
- 인권문제의 제기주체를 다원화. 특히 시민사회의 개입을 강화.
- 정부 수준에서 인권개선을 촉구할 때 자국 내 인권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처명.
-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대회에서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수성(분쟁구조의 특 수성)을 고려한 접근법을 찾기 위해 한국정부와 한국 인권단체들의 조정자 적 역할 확대.
- 4. 남북인권대화와 국제인권 협력

1) '한반도 인권'과 남한 정부시민사회의 역할

- 대결과 갈등의 당사자로서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과 공동책임을 인정.
- 우월적·대결적 접근이 아닌 포용적·연대적·성찰적 접근.
- 한반도 분단 상황은 인권 규범 중 '발전권'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요구

2)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대화로부터 시작

- 우선, 남북 간의 인권대화는 북한체제전환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는 분단구조로 이해 왜곡된 남북의 제도와 관행을 상호개선하기 위한 대화 로부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출발해야 함

- 더불어 북한인민의 인도적 위기극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전제하는 것이어야 함. 특히 북의 경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그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직접적 혹은 우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함.
- 북의 권위주의 체제의 존립근거가 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 도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증진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
- 방어적 전력으로의 선 군축조치,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반인권적인 냉전제 도의 철폐 등 남한 정부의 자발적 평화·인권 증진 조치들과 남북 대화가 연 계되어야 함.

3) 국제사회와의 협력

- 한국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및 한반도 인권개선(발전권 포함)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되, 압박보다는 대화,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질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함.
- 특히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속가 능한 개발원조, 한반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한 상호노력에 대한 지지 등을 균형 있게 호소하고 제기해야 함.
- 한국 인권단체들도 한반도 인권 개선과 인도주의적 개입, 적대와 분쟁갈등의 완화 노력 간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이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연대를 적극화해야 함
-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인권과 무관한 외부 세력의 영향이나 자금으로부터 독립적인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가> 개발원조와 북한인권 연계의 문제

- 시급한 인도주의적 지원 외의 개발원조 제공과 북한인권 개선을 연계해야 한다는 구상은 원칙적으로 타당함. 다만 이는 제재수단이 아닌 인센티브로 기능할 때 효과적임.

-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미 지난 수십 년 간 인권상황과는 무관한 요인들 에 의해 그 같은 원조로부터 격리되어 왔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냉전시기의 수 십 년간 '농성'체제를 강화해 왔고, 탈냉전 이후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20세기 말의 수년간에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라는 이름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해 왔음.
- 최근 북한경제체제는 완만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개발원조 로 인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역기능보다 북한인민의 후생을 증진시키. 고 변화에 따른 부작용 -궁핍 속의 시장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됨.
- 특히 시장의 확대가 인권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개발 원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시장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 북이 주장하는 이른바 '선군정치'는 제재의 강화가 아닌 적대의 완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인권문제나 체제의 내재적 한계를 이유로 경제적 제재나 개발원 조를 중단시키는 것은 현명치 않음.

나> 6자회담과 북한인권 연계의 문제

- 다자간 군축과 안보협력. 인권 증진 등의 의제를 동시에 합의한 유럽식 인권대화모델이 한반도에도 적용될지 의문.
- 80년대 유럽(동서를 막론하고)에 존재했던 종교의 공통성, 공통규범, 민 주혁명 경험 등 중재력을 행사할 주체와 시민사회 기반이 동북아에서는 부 재.
- 한반도에서 핵 문제 해결과 다자간 평화협력체제, 인권개선 등이 연계된 패키지로 제기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절한지 의문임.
- 더욱이 이를 체제전화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인권증 진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쟁 유발적 행동으로 가주될 수 있음.

-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문제와 적대의 해소가 인권개선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고, 인권문제를 평화체제 문제나 반전운동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 직.

다> 탈북자 문제

- 조중 국경지대는 북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따라서 민감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지역임.
- 탈북자들의 남한 혹은 제3국으로의 망명은 적극 보호, 보장되어야 함.
- 하지만 탈북자들은 다양한 동기가 있고, 탈북자 인권은 망명의 권리 외에도 다양한 층위에서 조명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이들의 국경 출입이 보다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기획탈북에 반대함. 기획탈북은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인권탄압에 대한 유혹을 강화시킬 수 있음. 이를 자제함으로써 탈북자 인권 문제제기의 정당 성과 그 개선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음.

평화

제2회의 | 발표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1.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우리단체의 원칙
 - 1)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궁극적 주체는 북한인민이다.
 - 2)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일정한 변화가 필수불가 결 하다.
 - 3) 북한이 극단적인 통제사회인 조건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활동은 대단 히 중요하다.
 - 4) 인권문제의 해결을 특정한 이념과 연결시켜는 안 된다.
- 2. 우리 단체의 지난 활동의 개요
 - 1) 선전 홍보 활동

¹⁾ 이 글은 논문 형태의 완성된 글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수행 한 제반활동을 간단히 기술하고 그에 기초해서 앞으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우 리 단체가 중점을 두어 진행할 사항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가> 목표

(1)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인권문제를 비롯한 북한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나> 방법

- (1)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기관지 <Keys>의 한글판(월간) 매호 2000부 발행 및 배포, 영문판(계간), 일문판(계간) 각 1000권 씩 발행 및 배포
- (2) 2004년 12월부터 인터넷신문 <dailynk.com> 한글판, 영문판 운영, 하루 총인원 8천~1만 명 접속

2) 교육연구 활동

가> 목표

- (1) 북한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전수한다.
- (2)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활동가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 (3) 향후 북한의 변화 이후에도 북한의 재건을 비롯한 제반문제를 북하사람들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들을 준비해야 한다.
- (4) 북한인권 제, 북한의 민주화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의 재건,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 등의 주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다.

나> 방법

- (1) 매년 년 3차례의 <북한인권 포럼> 개최, 매 회 당 4-6개의 강좌 실시. 내용은 북한의 인권현실, 북한체제의 미래, 북한의 개혁개 방 가능성,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탈북자나 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
 - 참가자는 주로 대학생, 젊은 탈북자, 일반 시민 등.
- (2) 방학을 이용 년 두 차례 대학생 회원을 중심으로 회 당 3-4일간

- 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집중 교육.
- (3) 연구위원회를 두어 앞서 서술한 정책 등을 연구, 각 종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서 발표 및 토론.
- (4) dailynk.com 주최의 정기적 정책 토론회 실시.

다> 출판 활동

- (1) 목표 선전홍보 활동의 일부로서, 교육연구 활동결과를 북한관련 서적으로 출판하다.
- (2) 결과 북한의 기아, 수용소 등 인권침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체 제, 북한의 미래 등에 관한 30여 종의 책 출판.

라> 중국 내 탈북자 지원활동

3. 앞으로 활동의 중점 방향

1) 원칙적 방향

가> 지금까지 10년여의 북한인권운동은 북한 밖에서 한국이나 국제사 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움직임이 주된 것이었음. 예) 식량 등 인도적 지원. 탈북자 구조. 국제회의 개최. 인권결의안 채택 등등

나>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궁극적 주체가 북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앞 으로는 북한 내부로 눈을 돌려야함.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발전된 현실을 깨닫고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방안.

2) 주요 활동 방향 (dailynk.com 확대 강화 : 중국어판 발행) 가> 중국이 완전히 민주화된 사회는 아니지만 개혁개방의 심화와 더 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인민들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중국의 지식인이나 북한관련 정책전문가들에게 북한의 변화가 중국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이롭다는 사실을 설득,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

나> 대북 정보유입 활동의 확대 강화

- (1) 대북 단파방송 송출
- (2) 라디오 유입
- (3) 성경 불경 등 종교서적, 비디오, 서적 등의 유입 <참고 자료-1> 북한에서 접한 한국 언론기관 및 채널(복수응답)

경험매체	명수	비율(%)	
극동방송(기독교)	2	0.65	
녹화비디오	1	0.32	
KBS/사회교육방송	32	10.52	
자유북한방송	2	0.65	
RFA(자유아시아방송)	11	3,61	
한국일보	2	0,65	
MBC	3	0.98	
VOA	2	0,65	
기억 못함/기타	3	0.98	
없음/무응답	261 85.8		
합계 (응답자수)	319(304)	104,81	

자료인용 : 한국언론재단 '새터민 언론접촉현황조사'

<참고자료-2> 북한에서의 한국 언론매체 이용 빈도

접촉빈도	명수	비율(%)	경험자 비율 (%)		
거의 매일	15	4.9	22.7		
주 1~2회	15	4.9	22.7		
월 1~2회	10	3.3	15,2		
2개월 1~2회	2	0.7	3.0		
1년에 1~2회	5	1.6	7.6		
북한에 있을 때 1~2회	19	6.3	28 <u>.</u> 8		
소계	66	21.7	100.0		
접하지 못함, 무응답	238	78.3			
총계	304	100.0			
리크시아 · 된그시므레인 'poor 게임만 시므크호컨취크기'					

자료인용 : 한국언론재단 '2005 새터민 언론접촉현황조사'

4.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1) 워칙

가> 북한인권문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세계사 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문제를 남북화해협력정책 의 종속변수로 보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임. 나> 북한체제의 본질적 속성과 연관해서 볼 수밖에 없음. 즉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개혁 없이는 본질적인 인권개선은 요원한 문제. 다>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권문제와 연계해 대응하는 원칙적 자세 필요.

2) 방법

가> 북한이권결의안이나 북한이권관련 지원법안제정 등 국회와의 역할 분담.

나>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 (1) 국가인권위의 중립적 구성과 인권위 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 (2) 북한인권 관련 학위 소지자나 북한인권 단체 유경험자로 담당부 서 운영
- (3) 북한이 한 측면으로는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전면 에 나서기 어렵다면 인권관련 국내외 NGO와 연계해서 대응.

평화

제2회의 | 발표 4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보고

박요셉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국장)

1. 한기총 소개와 역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한국교회 63개 교단과 22개 기관단체, 5만 교회, 1200만 신도들이 소속된 연합기관으로서 교회와 사회, 국가와민족, 역사와 세계를 향한 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기총에 인권위원회가 2년 전에 설립되어 북한 인권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종합적인 북한사역은 17년 전 설립된 남북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수많은 사역과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북한인권의 문제가 북한 내의 동포들과 탈북한 동포들을 향한 사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실상과 김정일 정권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여 흔들리지 않고, 한국교회가 바른 인식과 하나 된 힘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수호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와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한 영향력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계교회와 시민들과 건전한 세력들과 우방국가들과 UN을 동원하여 하루빨 리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날이 속히 오도록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북한동포를 위한 한기총의 사역

한기총은 지난 17년간 북한을 상대한 사역을 5가지 문으로 감당하여 왔 다. 그것을 '앞문, 뒷문, 옆문, 윗문, 영문' 사역이라고 표현한다. 한기총과 회원교단과 단체와 교회와 신도들이 감당한 북한사역이 너무나 많고 또한 비밀을 유지해야할 특수사역들이 있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대 략적인 사역은 다음과 같다.

- 1) 앞문사역은 남북 간의 공인된 채널을 통한 종교교류협력, 인도적지원. 프로젝트사업, 지속적인 관계형성, 개방개혁유도, 평화정착사업이다.
- 2) 뒷문사역은 중국의 탈북동포 구제와 인권보호와 선교와 구출 및 북한내 지의 전략적인사역이다. 이 사역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고, 수많은 사역자들과 현지의 동역자들이 활동하였고, 수천 명의 탈북동포들이 집중적 으로 보호·양육 받았고. 현재도 다양한 사역이 진행 중에 있다.
- 3) 옆문사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우방 국가들과 UN과 세 계적인 언론방송과 인권단체와 유력자들을 동원하는 협력사역이다.
- 4) 윗문사역은 방송, 인터넷, 위성TV, 라디오, 비디오, 음반 등 각종 매스 미디어를 총동원한 사역이다.
- 5) 영문사역은 영적인 사역이며 실천적이면서 미래적인 사역이다. 이는 북 한동포를 위한 기도, 대북선교전략연구, 북한인권 심포지엄, 통일선교대학 운영, 북한사회재건기금 적립, 북한사역자 양성, 대한민국 수호사업, 통일한 국 건설사업 등을 실천하여 장차 북한 동포들과 함께 자유평화통일의 주체 적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향후 주요사역
- 1) 한기총은 '한국교회 북한인권문제 특별연구위원회'를 지난 5월에 설립하여 7월까지 한국교회가 합의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9월중 한기총과 전 교단의 동의를 얻어 한국교회의 영향력 있는 힘을 모아 향후 새로운 북한인권개선의 실천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 2) 한기총은 '중국내 탈북동포 보호 및 구출사업'을 한국교회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탈북동포의 인권을 위해 중국정부에 긴밀한 협력을 구하는 민간외교를 집중하고자 한다.
- 3) 중국내 탈북동포와 공식적인 방문자를 상대한 선교 사업을 강화하고, 북한으로의 재입국 지원과 북한 내지 특별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
- 4) 중국내 탈북여성과 탈북아동과 탈북청소년 등을 집중 보호 관리하며 생계지원과 교육과 인권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5)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세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북한인권 개선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 참여하면 서 한국내 애국세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 6)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연구기관, NGO, 방송언론을 북한인권 현장으로 안내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우방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의 현장 방문 지원과 북한동포의 인권실상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도우미사역을 지속 적으로 전개한다.
- 7) 북핵반대와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 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한 촛불기도회' 등, 서명운동과 유력한 행사를 개최한다.
- 8) 기타

- 4. 한국교회와 정부와 중국, 북한 및 세계를 향한 촉구
- 1)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동포를 지극히 사랑하며 북 한동포의 인권과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이전보다 10배 더 기도와 헌신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하며, 모든 선한방법을 동원하여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 2) 한국정부는 국가와 권력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고 북한동포도 예외 가 아님을 깨달아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을 염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뜻을 천명으로 알고 시급히 받들기를 바라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 호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이 없는 무조건적 대북지 원과 교류 사업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 3) 중국정부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을 체포, 구금, 강제송환하여 왔다. 그러 나 UN상임이사국의 일원이며, 세계강국으로서 2008 올림픽과 2010 세계엑 스포를 주최하는 국가적 이미지와 위상과 향후 역할을 고려하여 더 이상 탈 북난민을 박해하거나 강제송환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 4) 북한정권은 '인민공화국'이란 명칭에 부끄럽지 않게 북한주민의 생존권 과 인간 존엄권과 종교의 자유와 거주통행의 자유와 언행의 자유 등을 보장 하고, 60년간 북한주민을 억압하고 살상한 죄악을 토해내고, 각종 인권만행 의 실상을 사죄하며 이제는 돌이킬 것이며, 지금도 악명을 떨치고 있는 정 치범수용소를 하루속히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 5) 한반도 관련국들과 유엔 및 국제단체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지금까 지 힘써온 것에 깊이 감사하며. 계속적 지지와 참여를 촉구한다.

"북한인권개선운동은 내일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다"

평화

제2회의 | 발표 5

북한인권개선을 활동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1. 북한인권개선활동의 목표

- 1)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좋은벗들이 갖는 관점
- 가> 실사구시적인 접근으로 북한인권의 실체와 진실을 파악한다.
- 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인권개선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주민이어야 한다.
- 라> 북한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 마>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¹⁾ 이 글은 논문 형태의 완성된 글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좋은벗들이 수행한 제반 활동을 간단히 기술하고 그에 기초해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단체가 중점을 두어 진행할 사항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 2)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목표
- 가> (현장)조사활동을 통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및 상황을 알려낸다
- 나>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다.
- 다> 북한인권 상황 및 개선책에 대한 국내외 북한인권단체와의 연대 를 도모하다.
- 2.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지난 활동개요
- 1) 1996년 ~ 2001년까지의 주요 활동

가> 활동방향

- (1)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심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이 겪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생존권적 인권. 당시 주민들에 게는 인권이란 생존 그 자체의 문제.
- (2) 북한의 식량난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이품을 알리고 이것 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지원, 현장조사 및 지원활동, 여론화 작업 을 진행.
- (3) 식량난의 실태와 발생원인.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탈북 및 식량난민들의 실태. 식량난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에 주목. 인 권에 대한 주민의식 등 조사

나> 주요 활동

(1) 조사활동

- a. 탈북난민 1,855명 면담조사결과 '식량난실태조사보고서'(1998)
- b. 중국 동북부 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북한식량난민 실태 및 인권보고서'(1999)
- c. '북한주민의 북한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보고서 (2000)
- d.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비교 조사보고서'(2000)
- (2) 난민현장 지원활동 북한긴급식량지원 및 재중 북한난민들을 위한 생명의 보따리 등 다양한 지원 사업(1998-2003)
- (3) 국제여론화 작업 북한난민보고서 제출(UNHCR, UNHCHR 등 UN 산하 기구 방문, 난민지원 요청 (1998-2001)
- 2) 2001년 ~ 현재까지의 주요활동

가> 활동방향

- (1) 탈북자 인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 본격화
- (2) 현장 난민지원 및 국내입국 탈북자 정착지원 시작.
- (3) 재중 탈북자 실태조사 및 여성, 아동난민 지원
- (4) 식량난과 북한인권의 관계 주목,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
 -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하여 정치시민적 권리를 제기
 - (5) 장마당 전면허용, 이동권 보장, 개인영농 인정 등 경제사회권의 보장
 - (6) 우선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개선으로 탈북자 및 생존형 범죄자 처벌 위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개선, 신분제와 연좌제

철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과제 제시

- (7) 최근의 북한사회 변화를 담아내고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려 대 북. 이권정책 결정에 기반 마련. 2004년 9월부터 [오늘의 북한 소식] 발행
- (8)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에 따라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정보제공. 실질적 개선방안 중심의 논의를 위해 유엔인권위 및 협약중심 의 북한인권 모니터링 및 대안보고서 제출

나> 주요활동

- (1) 조사활동
- a. '북한식량난과 인권'보고서 (2004) 발간
- b. 재중탈북난민 실태조사(2005, 2006) 및 여성, 아동난민 지원
- c. [오늘의 북한소식] 현재 매주 한글판·영문판 발행(6월21일 현재 26호 발행). 일어판 월간 발행. 국내 1만 2천여 명 웹 메일 발 솟
- d. 국제여론화 작업
 - 유엔인권위 및 북한이 가입한 유엔협약중심의 대안보고서 제 출 및 모니터링
 - 60차(2004), 61차(2005) 유엔인권위, 31차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 적권리 심의위원회 (2003), 36차 유엔이동권리심의위원회(2004), 70차 여성권협약(2005)
 - 주한 각국 대사관 및 관련단체에 북한인권, 북한사회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 활동
- (2) 국내여론화 작업
- a. 토론: 국내시민사회단체 및 북한인권 관련 단체 토론회(2003). 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2004),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과 북한인권

법" (2004),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전문가집중토론회(2006)

- b. 출판활동: [민족의 희망찾기],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등 10여종 발행
- c. 대중교육: 시민들에게 북한의 인권상황과 해결방향 교육 '쌀독에서 인권난다' 대중통일강좌(2004), 통일대화마당 '북한동포들에게 들어보는 나의 삶 나의 꿈'(2005), 어떤 나라 사람들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2006)

3. 앞으로의 활동방향

1) 주요사업방향

가> 북한조사사업의 확대

- (1) [오늘의 북한소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소식, 주민들의 삶 등 북한 사회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전반적인 기초자료의 제공, 대북정책, 인권정책 결정 기반 형성
- 북한 전역, 전 분야의 소식 전달

나> 난민문제의 실질 해결 노력

- (1) 재중 북한난민, 특히 여성과 난민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활동 전개
- 실태조사 및 지원 활동
- 동북 3성 지역의 약 10만의 난민추정, 5만의 이동난민 추정
- 결혼한 여성의 경우 대부분 빈곤가정, 중국공안의 단속과 강제송 환 위협, 뇌물로 무마, 아동의 경우 호구가 없거나 있어도 빈곤가정 이므로 학교교육 잘 받지 못함.

- (2) 현실적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 여성난민보고서. 난민아동 보고서 발행
 - 결혼한 여성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인정, 임시체류 및 거류인정. 불법체포시 강제송화 반대. 태어난 아이들의 호구 인정 및 학교 교육
 - 현지 빈곤가정이 대부분이므로 최소한의 생계벌이를 위한 자활지 워
 - 난민이동의 경우 호구가 없는 아동의 경우 호구 인정, 구호차원의 장학금 및 학교교육 지원
- 다> 북한내부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북한자체의 법의식,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
- 2) 한국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기대사항 가> 안정적 법제화를 통한 북한지원 및 국민여론 형성
 - (1) 북한사회의 변화와 이후 전망에 대한 적극적 대책 수립과 국민 여론의 적극적 형성 노력
 - (2)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
 - (3) '대북인도적 지원법', '민족화해법' 등의 적극적 법제화
- 나> 북한과의 점진적 인권외교 북한과의 공식. 비공식적 인권대화 및 협상력 제고

다> 대북인권정책의 보편성 획득

(1)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이라는 수 세적 대응보다는 대북지원과 인권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적극

- 적 개입방식으로 변화
- (2) 한국정부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논리개발
- 3) 한국 내 북한인권활동 단체 및 기구에 대한 기대사항 가> 다차원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접근
 - 인권의 개선은 해당 사회의 발전 상태와 삶의 질,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해결주체의 실천력, 우선순위와 현실적 가능성, 법제화와 정책적 수용력에 따라 이루어짐.
 - 어느 한 분야의 발전이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나> 실질적 해결책 중심의 논의
 -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 상치되는 것 아님.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현실적인 개선책에 대한 연구와 노력 필요. 단계적이고 순차적 접근이 필요함.
- 4) 국제 북한인권활동에 대한 기대사항
 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작업 필요
 나>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2회의 | 토론 1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타 소장)



저희 북한이권정보센타는 북한에서 발생한, 혹은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작업은 지난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서독 정부에서 해 왔던 일들인데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차원에서 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의 경계가 불분명 하게 논의가 진행되리라 여겨집니다. 발제의 내용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입 장을 대변하는 단체도 있고, 보수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면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새로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분들이 아예 오시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만(웃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그 어느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도. 설사 북한 당국자가 와서 듣는다 하더라도 크게 거부감을 가질만한 것이 아 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많 이 늘어났다는 증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인식의 성숙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 다. 다시 말해, 이제는 정부와 NGO사이, 그리고 NGO단체들 내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 접근이 이루어지고 논의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이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제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사실 오늘 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새로운 이야 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발언하는 사람이 달라졌을 뿐 그 내용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초기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많은 NGO들이 노력을 집중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단체들의 다른 시각들이 있었고, 국내의 여러 단체에서 '도대체 북한의 인권을 왜 거론하느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오히려 관심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러한 관심 제고가 상당부분 성공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저희 연구자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축적의 필요성, 객관적인 정보의 부족 및 그 신뢰성에 대한 검증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지요, 마지막으로 기술협력에 대한문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간 논의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중 캠페인 등을 통해서 관심을 제고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향후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는 정보축적에 대한 것, 기술협력에 대한 것,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 축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좀 더 집중해야합니다. 저희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정보 접근은 대단히 어렵고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독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술협력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북한 인권은 북한 내의 주민들이 제기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데, 바깥에서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에 그러한 인식을 가진 주민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 조직이 결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인식이 확장된다는 것은 통일 후에 건전한 북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이 매 우 더디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제적인 역할 분담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를 통해 국내에서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대략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난 상황이고. 누가 할 것인가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민간에서도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 만 지금 시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서는 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정보를 축적하는 것, 캠페인 하는 것 등을 한 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재외 탈북자들을 돕는 일은 중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테마에 대한 분배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골고루 분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

사회자

유여상 박사님 감사합니다. 토론자로서 지금까지 나왔던 논의들을 정리해 주시고, 향후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역할 분담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해 주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 무국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우선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가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의 실현은 최 고의 목표이고,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해 왔는데, 최근 북한 방문이 금지되었습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활동 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문에 보고서가 뜸해지고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앰네스티 본부는 지금까지 방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앰네스티 한국지부 가 현재 북한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좋은 벗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북한 소식'이라는 소식지가 있는데, 한때 이 소식지의 내용들을 읽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동안저에게 북한은 몇몇 단체들이 주장하는 공개처형, 고문, 정치 수용소 등, 그렇게 어둡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지에는, 분명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북한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혹은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 순수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를



통해 국제사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회의 모습이 심각하게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런 단체들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 문 제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단체 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만 보 더라도 달라진 논점과 달라진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 중.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와 경제적 지원이 인센티브로 기능해야 한다는 제안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목표라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 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북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중에 서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누구나 공감하는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가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보고서에서 중요문제로 지적하 고 있으며, 국제 사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 다. 다음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 이는 노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개방을 촉구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정보는 탈북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이 항상 진실된 증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 의한 일관된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근거한 지 속적인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와 관련하여 4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제도와 관련한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 제 중의 하나인 공개처형은 사형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사형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반대하기는 하지만 공개처형이라는 방식을 이 유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처형을 비난하는 분들 중에 사형에는 찬성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 개처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형 폐지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두 번째로, 원재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아시아의 인권 주도국에 대한 내용은 크게 환영하고, 꼭 추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인권에 있어 아시아의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UN에서 권고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한국이 아시아의 인권 리더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때 대한민국 정부가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기총에서 제출한 발표 내용 중에 '한국 내 애국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애국이 인권 문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참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거론하면서 유엔 결의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2005년에만 61개, 2006년 6월까지 42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대상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이고, 북한은 그 61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마치 국제 사회가 북한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잘못된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것은 북한 인권 개선의 과제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개인을 구하기 위한 국제적 인권 운동의일환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상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야하는 각국의 정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인권에는 국경이 없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인권단체들은 달라야 합니다. 인권을 말하는 모든 단체들은 북한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거론해서도 안 되고 북한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에 관련된 일로서 인권을 말 할 수 있는 것은 인권단체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온 견해들 중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한국의 내부에서 이 점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의 여러 단체들은 스펙트럼에 있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만, 북한의 정치 문제 등을 중요시하는 단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여론의 편중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단체들의 활동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그 문제점들을 인식한 여러 다른 인권단체들이 연구와 조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 만 앞으로 조금 더 균형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화

사회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세 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기총에서 말씀하신 애국과 인권과의 관계, 대한민국이 원재천 교수님 그리신 아시아의 인권 주도국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 그리고 공개처 형 문제는 민주화 네트워크에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로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다룰 때 그것과 관련한 주변의 다른 문제들, 가령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한반도의 안보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제들은 북한 인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냐 하는 '존재'(sein)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어떻게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당위'(sollen)의 문제입니다. 이 둘은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분석과 정책개발 과정에서 양자를 혼돈해서는 곤란합니다.

먼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NGO의 활동에 대해 향후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북한 인권을 볼 때,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그 개념을 절대적이거나 획일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어진 조건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경우, 북한정부를 포함하여 각 행위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대안적 방안을 개발하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 인권상황의 복잡성과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을 고



려할 때, 북한 인권을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해서 접근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 운동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한 단체가 수행하는 북한이권 관련 활동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뜻으로 서, 그럴 때 서로 다른 분야에서 북한 인권개선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존중 하고 역할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이 세계에서 보편적인 큰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평화, 지속가능한 개 발. 화해. 민주주의 등과 같이 인권과 함께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다른 보편적 가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이나 접근방 법이 단체마다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각으로 북한인권 논의를 환원하는 것은 절대적 이고 배타적인 접근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고, 실질적 인권개선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들은 결국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북한 정치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규정을 떠나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북한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 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주요 인권침해자인 동시에 인권보호자라는 야누스의 얼굴을 한 존재라고 한다면, 북한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를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폭로하고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북한정부와의 파트너십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 다. 그 때 우리가 어떤 방안을 갖고 북한정부와 대화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 1회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최근 북한 정부가 취한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조치들을 모두 선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 들을 평가해주고 감시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먼

저, 국내 NGO들의 많은 기여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었고 결국 유엔의 결의안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정부의 인권침해 책임을 거론하고 비판하는 식의 전략(naming and shaming strategy)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접근은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에는 소홀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악의 수준으로 가정하거나 선정적인증언에 바탕을 둔 접근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권개선 방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북한의 위협인식을 기중시켜 북한의 경직된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인권 논의에서 고려할 점입니다. 이는북한인권운동에서 NGO의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헬싱키협정의 동북아시아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헬싱키 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력균형입니다. 1970년대 유럽에서는 동서 진영 간 세력균형이 있었지만 현재 동북아 질서, 특히 북한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익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헬싱키협정의 경우, 서방에서는 사회주의진영의 인권 개선, 그리고 사회주의국진영의 입장에서는 영토작정치적 현상유지와 서방과의 경제교류와 같은 상호 이익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헬싱키협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의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다자적 틀을 이용하자는 표피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자적 틀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가능하려면 객관적인세력균형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행위자간 타협에 의한 이익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북한인권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역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에 시민사회가 없고 북한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인권 개 선의 일차적 주체는 해당국 정부와 국민들입니다. 여기에 국제사회는 조력 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주객전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최근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개입한 여러 국 제분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들의 북한인권 논의는 우리 자신의 인권상황을 성찰하는 노력 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사회자

서보혁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를 정리하자면 우선 북한 정부의 이중성 즉,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과 인권 을 개선해야 하는 당위 주체로서의 측면 이 측면에서 보자면 파트너십이 중 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에서 북한정부의 민주화라 는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재천 교수님께는 지역 인권 개선이나 헬싱키 협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시무 소의 게일 김 연구워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일 김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 연구원)

어떤 국가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주로 외부적 유인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정치적 의지; 2) 기술적/재정적 역량, 3) 그리고 타협될 수 없는 하나의 보편적 척도인 기준(standard)이 그것입니다. 물론 인권 기준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국가는 그 비난과 책임을 다른 국가나 기구에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만, 국제사회 또한 유도 요인을 만들어내고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인권을 개선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권 레짐(regime)이 한갓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우선 인권 유인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헬싱키 협정이 하나의 모델이라면, 그 협정이 참여(engagement)를 향한 더 큰 행동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특히 최종안에 포함된 안보 보장조치 때문에 그 협정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협정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인 발전은 국내 시민 사회 운동의 노력 덕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아시아는 모든 국가들이 비판 받기 쉽고, '인권' 하면 정권교체의 미사여구로 연상되고 있어서, 국가들로 하여금 인권 레짐에 참여하도록만들 유도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토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국가 간에 만연한 의심, 불신과 민감성을 고려하면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그런 레짐의 형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국제사회의 틀 바깥 에 존재하는 북한의 경우는 인권이라는 창구를 통해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 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에 접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 것이지만. 안보상황이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안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다른 국가 들은 안보와 인권문제를 구분시키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북하과 진지한 협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 의 일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그 능력을 증대시 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는 매우 긴 과정이 될 것인데, 문제 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인권 기 준이 달성될 때까지 누군가는 그 간극을 메우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시민사회와 NGO들 이 바로 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최대한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두 개의 다른 의제로 국경 간 인신매매와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신매매 금지 대책은 사람을 사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기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병행해 서 운영해야만 합니다. NGO들은 중국내에서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극심한 빈곤을 해결해주면서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인을 위한 아동교육이나 직업훈련, 기본적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연다면, 중국인들의 협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사회자

마지막 토론으로 연구위원이신 김수암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인권 문제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 하는 문제와 그 인권의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후자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고, 그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낳은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을 보면 결국 미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충돌 문제 입니다. 미국은 소위 '자유 확산'전략으로 접근하고, 북한은 그것을 수령 옹립 체제 의 붕괴전략으로 인식하면서 북미 간에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논리상의 정면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에서 과연 이러 한 논리상의 문제가 현실적인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면충돌 현상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는 보수 진보 양진영의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주권의 원칙 등으로 인해 당연한 현상입니다. 진보진 영에서 볼 때 남북한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 법제상의 한 일부로 종속변수화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개선 과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와의 공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할 경우 국제적인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구체적 인 개선의 논의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의 쟁점으로 '압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 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주민들 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주체적으 로 인권 개선의 역할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장기적인 개방 전략과,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파해야 한다는 개선 전략에 대해 모두가 공통의 분모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압박'을 생각한다면, 북한을 단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의 폐 쇄성을 고려할 때, 단지 현재 상황에 안주하면서 외부적인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저절로 이러한 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라 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97, 98년 유엔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가 거주여행의 자유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1998 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 거주여행의 자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하나 는 2001년 소위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에 관한 북한 보고서를 냈을 때. 규약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검토 문안에서 북한의 형법 중 유추 해석 조항 을 폐지하고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 북한은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해석조항을 폐지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개선요구까지 경계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사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북한이 제출한 B 규약보고서 심의 당시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에 대 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라든가 여성 차별 폐지라든가 또한 A규약에 입각하여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 할 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편향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존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진보진영은 생존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 체적 전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도 단기적인 개선 방안에 집 착한 나머지, 어떻게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가 약하다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주로 국경지역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될 뿐, 내륙지방에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을 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 경우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평화

제2회의 |

질의토론

사회자

지금까지 청중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 4개만을 추려 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발표한 순서의 반대로 하 겠습니다. 먼저 노옥재 국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지금까지 '북한소식'을 통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알리고 있는 것과 관 련하여, "앞으로 그 원인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서 어느 정도 보장 되고 침해되는지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 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소식'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들은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는 수준이 구요. 향후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인권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 에 있어서도 실제로 북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보편 적인 인권의 기준에 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모니터링 할 것이고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나가면서,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인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기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부장

("애국이 북한문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김희진 시무국장 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애국세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한기총 은 보수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단체 내에서 인권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라 평가 하고 싶습니다.

애국주의라 함은 인권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 애국주의 세력은, 북한 인권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인 친북을 지향하며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 그리고 북한 인권 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 으로 진행해 나가는 세력에 대한 보수주의적 해석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한기홍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즉결처형뿐 아니라 사형제도 자체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김희진 사무국장의 지적에 대해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 제의 핵심은, 북한이 자기들의 형법적 절차조차도 전혀 지키지 않고 단지 20분 만에 판사가 판결하고 어떤 변호도 없이 바로 즉결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탈북자의 60%이상이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 면을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잘 못된 점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 거론이, 정권 타도를 위한 전술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일이라면 찬성합니다.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운 영할 경우, 북한 사람들이 개성으로 와서 남한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교류하 고 협력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현 금 주고 금강산 가서 관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만약에 김일 성대학 학생 100명이나 1000명을 서울대학교에 데리고 와서 한 달씩 합숙 하며 교류할 수 있다면 설사 현금을 일부 준다 해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실제적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와서 남한을 겪어 보았습니까?

한편, 제가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자 한들, 실제로 김정일 정권이 타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자 한들, 우리 국민이 그런 정책을 선택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 박정 희 정권이 경제발전을 할 때.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민주화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는 (북하의) 경제 수준이 이직 낮기 때문에 민주화를 자꾸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중 잣 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가 할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화해 협력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을 어떻게 다 제 생각으로 통일 시킬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책에 대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요.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님 순서입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저한테 주어진 질문은 좀 당황스러운데요 "진보진영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할난이 섞여있는데, 진보의 개념부터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제생각에는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집단은 "좋은벗들"과 법륜스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 가는데 사람 살리는 운동은 안 하고 무엇하느냐'면서 저희를 설득하고 다니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법륜스님이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활동가라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보 진영 안에도 다양한 계열이 있는데요, 참여연대가 진보주의적 단체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미국의 모델을 염두에 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 보공개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한 편, 예를 들어서 북한의 탈북난민들 의 실태를 가장 먼저 국내에 소개했던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 운동을 하던 진보적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화해운동, 연북운동을 진행하는 큰 그룹이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요. 그 분들이, 비록 최근에는 아니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한 적도 있었다는 것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분명 히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 들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한다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해 협력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적인 얘기를 해보면,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면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사일 판매는 모든 나라가 하는 무역 이고요. 안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 반적으로 군부는 군이면서도 산업조직이고 경제조직이고 노동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이 갈 경우에 북한 체제가 훨씬 더 개방화되는 효과가 나 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군대를 통해서 인권이나 재건 이 가능하다고 믿는 시각을 교정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내 진보세력이 북한 인권 개선은 물론 세계 인권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중국 인권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중국남부의 인권 침해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어 나는 일들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미국역사에서 서부 개척시대라고 불리는 것, 또 영국 역사에서 영국의 엔클로져(Enclosure)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적 요소입니까. 자본주의적 요소입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남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보다 가혹합니까? 영국의 엔클로져운동 시기보다 더 가혹합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권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재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재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제가 아시아 인권 레짐(regime) 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과 관련해, 서보 혁 박사님께서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이르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인권 레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100%의 확신을 갖고 말씀 드리건대, 20—30년 내에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인권 조약이 나오고 새로운 인권 레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내다 볼 때,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갈수록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주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삶의 질을 다룰 공통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현재 한국에 많은 몽골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계신데요, 이런 몽골이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몽골 어린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어야한다는 것과 기본적인 의료 및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사람들이 다른 아시아 나라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이런 것 들이 양자 간에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아시아인권 규약은 다자간에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헬싱키 협약의 결정적인 부분은 사실 유럽에서 정권, 혹은 체제 보장이었습니다.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를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정권 교체(regime change)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이상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변화(regime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도 북한의 체제를, 자의든 타의든, 인정하고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문제 해 결을 위해. 여러분들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무력사용을 일종의 현실 적인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한 바람이지요. 무력이 사용되면 한반도가 불바. 다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상호 선제공격을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게 이야기하고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인권 등의 여러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아시아 인권 레짐의 주역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 적은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인권국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중 탈북자 문제의 핵심 이슈가 그들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 문제와 법적 보호 문제인데, 한국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할 때 중국 측이 '그럼 한국은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00년 이후에야 난민을 받기 시작했고 아직 받아 들인 난민이 100명도 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질문에 대해 별 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보안법 등의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인권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와야 하고, 저도 하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은 중국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우리 탈북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 해 결을 추진할 수 있고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곳은,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 중국입니다. 가령 정진성 교수 님은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 계시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셔야 겠죠. 유엔에 있는 여성차별금지조약이나 어린이 보호조약 부문 등에 한국 대표들이 가 있으므로 재중 탈북자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NGO들도 재 중 탈북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한, 중국 정부들이 더 이상 뒤에서 은밀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한은 "탈북자가 더 이상 한국으로 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 던지, 중국은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던지, 북한은 "우리도 더이상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등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그럼 남한이 탈북자 관련 경비를 지원 하겠다. 중국이 부담이 되면 몽고 같은 곳에서 유엔의지원 아래 임시 난민 캠프를 만들자"는 등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정부가 재중 탈북자들을 위한 임시 체류비자를 내주는 등 실제적인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시도를 이미은밀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그리고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관련국들의 지혜와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두 시간이 넘도록 제2회의 주제,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 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못한 것이 사회자로서 아쉽습니다. 오늘 나온 이 이야기들이 향후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계기로 작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륜스님으로부터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폐회사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오늘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얼마나 깊이 논의했느냐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 한국과 외국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 안의 진보와 보수가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이픔을 해결하기 위 해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는 평화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자는 의견 혹은 그보다는 당장 굶어죽는 사람들과 인신매매되는 사람 들을 긴급하게 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등의 견해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크게 보면 우리가 역할분담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얼마든지 해결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재천 교수님께서 하나의 제안을 해 주셨듯이.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 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일부라도 덜어줄 수 있는 운동을 하자는 등 구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거나 힘을 한 쪽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진행해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모임 이 우리 사회가 하나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기를 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 can be done Human Rights? to improve

-Focusing on Practical Approaches-

1322121

N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cusing on Practical Approaches
The State of the state of

Contents

136 | Welcoming Remarks

Ven. Pomnyun Sunim (Chairperson, the Peace Foundation)

138 | Congratulatory Speech

138 Cho, Young-Hoang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141 Marc Ziemek

(Representative of Konrad Adenauer Foundation in Korea)

143 | Keynote Speech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 South Korea and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 Possible ways to move forward together?

Ven. Pomnyun Sunim (Chairperson, The Peace Foundation)

150 | Session 1 : Presentati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Divergent Approaches

> Lee. Keum-So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80 | Session 1: Panel Discussion

- 180 Joseph Y. Yoon | Minister-Counselor Political Affairs, The US Embassy in Korea
- 182 H. E. Kim Luotonen | Ambassador of Finland to Korea
- 184 Judith Gough | Political Counsellor The British Embassy in Korea
- 188 Chung, Chin-Sung | Member of the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192 Kim, Mun-Hwan | Director of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196 | Session 1: Presenter's Closing Comment Lee, Keum-Soon

199 | Session 2 : Presentation

Practical Approaches by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201 • A Reasonable Approach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Challenges and the Refugee Issues in China |
Won, Jae-Chun | Director of International Campaign,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fessor of Law H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School

211 • The 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s Approach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 Lee, Tae-Ho | Deputy Secretary General, PSPD

221 • Practical Programs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n, Ki-Hong | President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228 • Report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s Efforts for Better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Rev. Joseph Park | Director, Committee for Society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234 • Assessments and Prospects on the Action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

> Noh, Ok-Jae | Secretary of General Good Friends - Centre for Peace, Human Rights and Refugees

243 | Session 2 : Panel Discussion

- 243 Yoon, Yeo-Sang | President, NKDB Center
- 245 Kim, Hee-Jin |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248 Seo, Bo-Hyuk | Research Fellow,

Community of Korean Political Studies

251 Gail Kim | Research Analyst

North East Asia Project, International Crisis Group

254 Kim. Soo-Am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56 | Plenary Discussion (Questions & Answers)

256 Noh, Ok-Jae | Secretary General, Good Friends

- 257 Cho, Gi-Youn | Manager, Department of Society, CCK
- 258 Han, Ki-Hong | President

Network for NK Democracy and Human Rights

- 258 Lee, Tae-Ho | Deputy Secretary General, PDPS
- 260 Won, Jae-Chun | Director of Campaign Citizen's Alliance for NKHR

263 | Closing Remarks

Ven. Pomnyun Sunim (Chairperson, the Peace Foundation)

- Introduction of The Peace Foundation
- 222 Program of Symposium

Welcoming Remarks

Ven. Pomnyun Sunim Chairperson, The Peace Foundation

When I first came across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heard, 'many are dying of hunger', I could not believe and I did not want to believe their cry. However, after finding out the truth, I have literally been running around to help the North Korean sisters and brothers for ten years.

From 1995 to the year 2000, millions of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died in silence because they simply had no food to eat. This was the 'Deaths in Silence' and the 'Silent Massacre', since they have died in silence without even being able to moan to the world, the world did not know whether it ever existed. I, for one, am only trying to put my best to let the world know the moans of the people on behalf of the suffering people in silence.

Hundreds of thousands North Koreans crossed the border and live in China and being subjected to human trafficking, forced repatriation when in return the refugees will be persecuted, and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out an adequate protection. I have always thought they should at least be protected under the UN Human Rights standard, since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suffered severe hunger, diseases,



displacement and other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 these had to be known to the outside. And it took us ten years for it to be know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our human rights concerns to be resolved, I do not know how long it will take, but in solidarity, the synergy from our collaboration, we may shorten the time, thus, we have made an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I would like to extend my special thanks to the Konrad Adenauer Foundation and Marc Ziemek (Representative of KAS Liason office in Korea) for sponsoring this conference. And, Mr. Cho Young-Hoang,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r participating in this gathering.

My sincere thanks to those experts in the field taking a role in the conference as the facilitators, presenters and discussants. Particularly, His Excellency the Ambassador of Finland have accepted to be on the panel to represent the European Union's position and the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nd the Minist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South Korea, UN Human Rights Council experts who have taken part to discuss on the issues at hand. I do hope and anticipate fruitful result will come out of this conference to seek concret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Differences may arise, but I hope that will create diverse and rich discussion rather than a cause for another confrontation.

Sincere thanks to all the participation in the Conference.

평화

Congratulatory Speech

Cho, Young-Hoang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I would first like to thank Ven. Pomnyun Sunim and all those who worked to open this symposium in an effort to further genuine discourse on the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It is my pleasure to give this speech in the presence of experts from Korea and from other countries who are here to talk about North Korea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the now extinguishe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We have high hopes that the newly created UN Human Rights Council, which was inaugurated last June as an elevation of the function and status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will deem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 as one of its main agendas as well. On June 15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The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entails issues such as freedom of speech, movement, and religion;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and free access to North Korea by UN Human Rights Special Rapporteurs and human rights monitoring groups. The international attention given to North Korea human rights will be further explained in today's symposium by the Finnish ambassador H.E. Kim Luotonen and other counselors from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Domestic discourse on North Korea human rights has displayed an ideological rift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nd each has suggested different approaches and solutions. Our government's stance o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 has shown some consistency, but it is undeniable that it has also received considerable criticism.

At this juncture, the Peace Foundation's opening of a symposium to discuss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nothing short of excellent and significant timing.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we, people of different stances and opinions about the subject, gather to propose and discuss the problem. As the sheer diversity of opinions about the subject shows, the human rights problems of North Korea are deeply complex and difficult to resolve which can easily lead to misunderstandings and disputes. Thus, frequent discussion is necessar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differing perspectives, and for more cooperation.

In some respects, we should not be too quick to assume that differing opinions are automatically mutually exclusive. Rather, different approaches and solutions can be complimentary. In this light, I hope that today's symposium serves as a starting point in facilitating a cooperative discussion on how we can substantially improve the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Finally, I would like to briefly tell you about the current research project and future pla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Republic of Korea regarding North Korea. We are well aware of the need for our participation in support of North Korea Human Rights as demanded by

Korean and international entities. Our Commission is quietly but assertively examining our courses of action regarding various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Although I cannot divulge our plans at this time for they are not complete, I can assure you that our position on the issue will soon be presented.

I believe that the opinions and support of all of the participants today is indispensable to our Commission's future activities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We will listen courteously and take in as much of your suggestions as possible. I really thank you again for your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평화

Congratulatory Speech

Marc Ziemek Representative of Konrad Adenauer Foundation in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대표로 있는 '마크 지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n Korean).

Dear representatives, dear discussants, dear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welcome you on behalf of the Konrad-Adenauer Foundation to this symposium.

In this day and age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humans deserve certain fundamental rights. However, each day human rights are still being violated all around the world.

Although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ctual situation in North Korea is had to get a hold of, it is no secret that people in North Korea are starving and that their individual rights are strongly limited and regulated.

It is also no secret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are also being violated outside of North Korea, as can been seen, by the many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being sent back home from certain countries to a fate unknown.

The Konrad-Adenauer-Foundation sponsors this symposium, because we believe that it is not only very important to address this critical issue, but also to discuss it and find possible solutions.

As a German political foundation, we share the experience of being a divided nation and therefore would like to contribute with our knowledge to the Korean peace and reunification process.

In South Korea, the Konrad-Adenauer-Foundation has been present and engaged for over thirty years. During this time our activities and projects have adjusted to the democratic needs of this country.

We promote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s the most reliable foundation for stability and peace.

We hope that this symposium can contribute to a better situation for North Korean civilians — in and outside of North Korea — and eventually also to a future re—unification.

Dear participants, I am looking forward to an active discussion and would like to thank your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평화

Keynote Speech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 Possible ways to move forward together?

Ven. Pomnyun Sunim Chairperson, The Peace Foundation



Reconciliation, Peace, Unification and Human Rights are the issues at han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auses and the conditions for human rights are found in the peace, reconciliation and the unification, while human rights are the objectives of the peace, reconciliation and the unification.

First, the most urgent issue is the settlement of the peace. It has been 61 years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53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ease Fire' agreement and still, serious tensions inhabit on the peninsula. Nuclear weapons program and weapons for mass destruction from the North Korea ignited the already adversarial North Korea – US relationship, where the confrontation was pushed to the

extreme. The extreme tension was cranking up again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US was considering preemptive attack on North Korea. Despite the issue at hand, we need first of all to put our best effort to change the 'Cease Fire Agreement' to 'Peace Agreement' to harbor the peace transformed from the 53 years of the 'Cease Fire'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the state of pea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direct stakeholders and other stakeholders of the region, including China and the US would enable to bring an end to the war and further facilitate the US and North Korea to normalize the relations and provide a feasible ground for a 'Common Security Treaty' in the region; that is, among the six nations. These changes would abolish not only the security threats on the peninsula, but the states in the entire North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being secured, this provides breeding ground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The secured peninsula will bring about changes to reducing 13 years of long North Korean military serving period and reserved army and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from threats on the regime could no longer take place. This will bring about opportunity to transform the militant oriented society to grow into the civil society.

Second,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be reconciled.

In order for the reconciliation to take place, understanding the hostile emotions carried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s that hundreds of thousand people have lost lives through a war, thus, even with a small mistake from the agreement framework, the distrust is easily built which would then jeopardize the promises been made and return to the hostile relationship. Under the circumstances, one would need to take cautious steps both in verbal and physical behavior. Even a small promise has to be kept in faith since this is the gradual step into building confidence in each other.

Past 60 years has been in the hostile and competitive relationship. We would now need to abolish the tactics and strategies to bring down each other and in defense of the own systems and explore the way to forward with reforms of the both legal systems that designated each other as enemies. Immediate actions have to be taken to confirm the missing persons, separated families in the war, also the prisoners of war and ideological prisoners (conscientious prisoners) have to be sought after to ease the pains and suffering of the victims of war. A declaration on the reconciliation would be mad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or the processes to take place stating that it would not punish the actions been taken under the domestic rule of law. Also the 'Reconciliation Bill' should be enacted for amnesties.

Third, any benefits gathered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should be forwarded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process should ultimately aim towards the unification 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goal, common grounds need to be identified since unification means to living together as part of the community.

For the 75,000,000 to live together, the foremost issue needs to be dealt is the 20,000,000 North Korean who are still facing chronic food shortage and their threats upon the Right to Subsistence should most urgently be lif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o prioritize exploring all means and methods to increase the level of production of the grains and crops. Motivation for farming needs to be enhanced by transforming into private farming and enable them to sell what they have produced in markets. Rather than using the more laborious method, that is, the *Juche* Farming method, more up—to—date technology has to be adopted. Also settle issues on the increase the level of producing farming equipments, plastic sheeting, fertilizers, pesticides and other farming materials and small stock breeding should be more encourag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of 2,000,000MT of food to North Korea to manage chronic and absolute food shortage together with fertilizer, pesticides, farm equipments, and other materials for farming. To combat disease, medicines and medical equipments should also be provided and by providing education materials, fuels for heating and other daily essentials provided to address the Right to Subsistence of Lif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must be observed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Human beings need food, but cannot only live with food. North Korean people are also entitled to their Right to Movement,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the Right to Work. When arrested by the legal institution, they are entitled to due procedure without physical or verbal violence and torture which already are stated in the constitution, now these needs to be practiced on the ground level. Further, sentences for offenses by the offenders should be given from the rule of law rather than adding more sentences in order to educate the rest of the public. Guilt—by—association, where one is to serve the sentence not by one's

involvement in action, but by association as siblings and relations, should be abolished in the system. For the political prisoners, the due process of trial has to be conducted before the determining the sentences. Inhumane punishments such as, public execution, forced abortion of the women who have made illegal trespass on the border should bring to an end.

The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need to be addressed and protected under the common values and principle of the huma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should provide unconditional food assistance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uld no longer delay to meet the needs of her own people because of the specifics of the stat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not forcibly repatriate the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punish those who have returned voluntarily or forcib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should accommodate North Korean refugees on the humanitarian ground.

'Peace, Reconciliation, Unification' Common Values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is poor and needs to be improved.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make concrete improvement, participation and the efforts from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vital. If we were to criticize the government, it would further disengage from the human rights issues, but if we were to keep silence, it could not bring the government to take part. Hence, understanding the requests and need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facilitating the conditions (security and peace) for the government to see the feasibility of involvement in action with assistance and cooper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economic cooperation) they need. At the same time, though the human rights issues must be addressed and request for improvement. The human rights issues cannot be over—sighted or ignored by any reason, but address the root—causes of the violations rather than bluntly criticizing and deny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what we have seen on the surface has its limits.

When approaching the poor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should be considered with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specifics of the society, although we would need to observe the condition in the universal standards. Thus, both the universality and the specifics need t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harbo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existence of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e reconcili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ing common values for unification as a community are the essential elements need to be addressed when seeking the concrete improve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평화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cusing on Practical Approaches-

Session 1

722700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Divergent Approaches

Dr. Lee, Keum-So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Introduction

The continuing food crisis in North Korea has driven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to flee the country and allow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ain limited access to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Such developments have contributed to bringing the human rights practices in North Korea into sharper focus although the full extent of the situation is not yet known. With growing international concern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ublic debate within South Korea has also intensified. The nature of such debate, however, has been very skewed, focusing mostly on perceptional issues



and the structural factors that have given rise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Debates on how to approach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become confrontational as many espoused the belief that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if demands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are raised at this juncture. Al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peated call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criticized by some quarters in the Korean society as being insensitive to the uniqu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Such criticism is one of the reasons why South Korea is portrayed as being at odds with the rest of the world over its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Of course, it is true tha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not have an identical viewpoint on the matter. Given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interests, concerned countries and organizations have maintained different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his paper will attempt to explore the controversies and conflicts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both at the domestic and the international level and assess how effective the different array of approaches have been in alleviating human rights suffering in North Korea. In addition, we examine the roles that can be assum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to induce substantive improvements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nd the ways to enhance cooperation for this end. Through such an endeavor, we hope to channel the interest shown toward North Korea, both at home and abroad, into a more constructive force for positive change.

2. Perceptions toward North Korean Human Rights

1) Abuse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ue to Food Short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ns generally agree that the severe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since the 1990s has forced the North Korean people into a grave human rights situation. However, assessments of regional or class disparities in food access are areas in which estimates differ. Analysis of the fundamental causes behind the food crisis is another area where starkly different views exist. There are those who believe the contradictions inherent in a socialist economic system and the discriminatory food distribution underlie the current food crisis, whereas others blame external causes such as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hostile international environment. It would be difficult to pinpoint a single explanatory factor behind the food supply issue since the problem arose as the entire North Korean economy started breaking down. A review of the measures employ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cope with the food crisis may prove to be a useful exercise but it must be preceded by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North Korean central government had possessed the ability to monitor the overall food situation in major regions and respond to it. The North Korean regime's aversion to demands for free access to the country and monitoring of transparent distribution by international aid agencies, for reasons of regime security,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Given the fact that North Korea distributed social benefits basically in accordance with one's social class, it appears that the authorities' approach to the food crisis also placed priority on regime survival over the survival of its citizens.

2) Structural Inconsistencies Within the Regime: Abuses of Political Rights

One's perception of the state of North Koreans' physical freedom and freedom of expression is intricately linked to one's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self.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viol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center around public executions and political prison camp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used public executions and political prison camps as the primary means of maintaining control. A lame number of public executions took place since the mid 1990s as socially deviant behavior and crimes became rampant due to the food crisis. Views on the practice of public execution vary greatly. Some categorize it as a grave violation of human rights while there are those who accept it as a relevant measure taken by the authorities to prevent social crimes. Public executions are not subject to the due process of law and go against North Korean legal statutes stipulating the required presence of a prosecutor during execution procedures. It has also been noted that the punishment is a terrible instance of human rights abuse because in most cases it is not proportional to the crime committed and creates an atmosphere of extreme terror by conducting the execution in front of the entire public, including small school children. On the other hand, however, some sectors have tried to understand public execu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al relativism as North Korea's way of enforcing sentences for crime preven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ountry's unique situation¹⁾.

¹⁾ Keun-sik Kim,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erspectives from within," edited by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Peace and Human Rights in the Korean Peninsula 2, People's Thoughts (Publisher), 2002; Keun-sik Kim,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perts Roundtabl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July 30, 2003, pp.3-14.

With respect to labor camps, while acknowledging the presence of such institutions, some observers have questioned the credibility of the defectors' testimonies concerning the scale and extent of the political gulag.²⁾

From the sta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aken a particularly keen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issues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contrast, not much focus was given to this matter domestically in South Korea³). Internationally, the labor camps were compared to the Nazi concentration camps whereas the issue was played down in Korea as an unavoidable means of social control stemming from North Korea's political reality. Several South Korean groups working to promote democracy in North Korea, however, have sought to draw attention to the plight of the inmates in prison camps based on accounts provided by the North Korean defectors. Some groups have attempted to portray the entire country as a colossal prison camp to highligh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North⁴). But such assessments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an inhumane system reminiscent of the Nazis and leave no other alternative but to effect regime change in order to achieve genuine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3) Inter-Korean Humanitarian Issues: South Korean Abductees and POWs

Up to now, international debat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²⁾ Chang-joon Jang, Senior Research Fellow,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the Realit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North," Korean Civil Rights Research Center

³⁾ Man-ho Huh, "North Korean Human Rights: International Perceptions and Challenges Facing RO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perts Roundtabl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July 30, 2003, pp.53-98.

^{4) 2005} Seoul Summit: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v. 2005. Forward.

included Japanese abductee issues, but the human rights issues of abducted South Koreans and POWs have been mostly left for organizations of abductee families to raise. With the repatriation of sixty three unconverted long-tern prisoners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abductee and POW advocacy groups⁵⁾ have united to call on the government for a more active stance on the issue.⁶⁾

While continuing to raise the matter with the North,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tried to approach this from different angles to work around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such as classifying the victims of abduction and POWs as a special category of separated families and arranging for family reunions, address confirmation, etc. Some Koreans were concerned that demanding the release of POWs of the Korean war and those abducted during the post war years would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South-North relationship. The Korean government commenced ministerial level dialogues and Red Cross talks to tackle the issue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missing persons at the time of the national division" to seek a substantial solution.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pointed out the need for an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status of the civilians and POWs "missing" since the Korean war and in the postwar years as well as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problem. In June 2006, the European Parliament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which

⁵⁾ For postwar abductees, the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and Abductees Families Council have been formed. The Korean War Abductees Families Council advocates for the rights of those abducted during the Korean War.

⁶⁾ Woo-young Choi, "Human rights of abductees and the campaign to bring them home." North Korea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text{A}}\) New Approach toward Overseas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The 2004 Summer North Korea Human Rights Workshop, Jun. 25-26, 2004, pp.33-42.

mentions South Korean abductee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ceeded in drawing out an admission and promises for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through repeated calls to address the issue. Though North Korea is engaged in a dialogue with Japan over the issue, as it is a prerequisite in moving toward normal diplomatic relations, the country continues to emphasize the need for Japan to make reparations and apologize for the forced labor and comfort wom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⁷⁾. In addition, North Korea appears decidedly uncomfortable ab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iewing the abductee issue as a matter of human rights concern.

- 3.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Approaches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1) Criticism and Pressure
 - ① International Community

United Nations

⁷⁾ On June 13th 2006, North Korea announced the following through their Foreign Ministry spokesman: "Abductions were unfortunate events that took place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t a time when Japan and DPRK were in a hostile relationship. However, we have officially expressed our regrets to the Japanese authorities and promised to prevent any reoccurrences. We have exerted sincere efforts to resolve the issues raised by the Japanese side in a humanitarian manner. We have sent victims of abduction and their children to Japan. In cases where the victims had passed away we had allowed Japan to meet with the acquaintances of the deceased to collect their accounts and testimonies for 50 hours. That is not all. We have also sent the relics and remains of the dead to their families. We have given our best effort to address this issue."

Since the 49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in 1993, United States, European countries and Russia have voiced their concerns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y called on North Korea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human rights and release political prisoners. They also encouraged North Korea to rectify their human rights practic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criticized the country for depriving its citizens of basic rights and det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expressed grave concerns over restrictions on a number of civil liberties and generally urged the nations of the world to take notice of the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In 1997 the UN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adopted a four-point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includes the submission of regular reports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guarantees the freedom to mov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change one's permanent residence. This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be documented and discussed formally at the UN level. North Korea announced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the grounds that the Sub-commission's resolution infringed upon its sovereignty. But North Korea's request for withdrawal was refused by the UN. The significance of making the submission of progress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uman Rights Convention obligatory lies in the fact that it induced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subsequent submissions of the report and review process.

Starting from the 59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re adopt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and a Special Rapporteu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as appointed. The 60th UN Human Rights Commission resolution urged North Korea's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rapporteurs assigned, and the demands were partially accepted by North Korea. For the most part, however, North Korea denounced the resolutions as nothing more than "political pressure" and little progress was made on the human rights front, which l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pas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in 2005.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General Assembly express concern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North as well as a willingness to engage in dialogue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communist country. North Korea, however, seemed to have understood the resolutions to be primarily intended for "naming and shaming" themselves. In addition, because North Korea completely disregarded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identified them as an attempt by hostile forces to threaten their regime, it appears the country was unable to take part in the technical cooperation outlined in the North Korean resolutions. Although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condemn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s resolutions as a "political attack," the resolution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have succeeded in bringing international atten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North Korea, for its part, was also forced to devise strategies to address its human rights situation as not just a handful of countries but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united to voice its concerns and delivered policy recommendations.

Up to now, North Korea has shown a positive response to the four sess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o which it has been a party. It had submitted national reports, participated in reviews, and were open to final recommendations. Through such a process, the UN' body's detailed and substantive requests were presented to North Korea, and

the country is thought to be attempting to incorporate some of the recommendations. The review of national reports focuses more on pointing out specific issues and hearing out North Korea's position rather than a blanket criticism of the overall human rights situation. Such a format of requesting explanations for specific issues encouraged, albeit on a limited basis, North Korea to start taking human rights concerns seriously. For example, recommendations on prohibition of inferred interpretation were included to a large extent in the revision of North Korea's criminal code system.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rai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through publication of documents such as the State Department Human Rights Reports, Human Trafficking Reports, and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s by the U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he United States' active interest i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ok a more concrete shape whe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enacted in 2004. North Korea's reaction to this move was sensitive to say the least. In South Korea, the controversy over the intentions underlying the legislation impeded people from focusing on gaining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its North Korean policy under the overarching policy framework of propagat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But unilateral actions by the U.S.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the most representative of which is the War on Iraq, have led the country's human rights policies to be criticized as being an arbitrary tool used to promote its own interest. The United States has been bringing in North Korean refugees to testify at hearing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events such as the North Korea Freedom Week to promote the American people's awareness of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The problem is that some of these refugees continue to be invited to testify about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despite having fled the country in the early 1990s. Of course,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significant changes would not have occurred during the past decade since the structural inconsistencies that gave rise to such abuses are still very much intact. Be that as it may, however, without considering the degree to which North Korea's social system has evolved over the years, arriving at a viable solution to better conditions for North Koreans would be hardly possible.

The enactment of the 2004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owever, has failed to win international support. Not enough budget was allocated for the reportedly most important improvision in the legislation, which is that of extending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newly appointed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does not seem to have a concrete role other than drawing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the North. Through Freedom House, a leading human rights organization, a total of thre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ere held, but the meetings were unsuccessful in presenting any workable solutions. United States' approach is also giving cause for concern in South Korea. As it has been stated in the 2005 State Department repor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the United States had been of the position that admitting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to the diplomatic and consular facilities would pose a serious security risk to the American missions abroad and also put the asylum seekers in significant danger. However, in 2006, by allowing a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east Asia to be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North Korea Freedom Week, and by the decision of a district immigration court to grant political asylum to a North Korean family who had already resettled in South Korea, concerns had been raised that such U.S. policies would encourage a massiv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undermining the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North Korea is of the firm belief that United States is using human rights as a pretext to overturn their regime. In particular, as the U.S. measures concerning North Koreans have the possibility of leading to massive defection. North Korea is expected to severely tighten monitoring and penalties of border crossing. While the U.S criticism and pressure against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served as a wake-up call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U.S's approach of blanket denunciation has failed to bring about a positive change in the regime's response to the situation. In addition, cooper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re needed to affect true change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ut the inability of the U.S. administration to win the support of these countries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as impeded genuine cooperation from taking place.

Japan

Up to now, Japan has avoided directly rai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addressed the matter only insofar as the issue concerned its own national interest. In other words, Japan's interes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was limited to the treatment and rights of the Japanese abducted by North Korea rather than on the overall human rights practices of the North. The relatively passive approach taken by Japan is connected to the negotiations it is undertaking with North Korea to normalize relations. However, testimonies and anecdotal accounts of North Koreans who escaped the country have been used to sustain strong sentiments against North Korea.

Japan has made the abductee issue a critical precondition for normaliz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ucceeded in making the human rights issue a top priority in the bilateral talks. The foremost concern for Japan has always been the Japanese abductees. This was true in the six party talks held in Beijing and also during the following working level talks, where Japan conditioned humanitarian support on the resolution of the abductees issue. Japan, however, has been cautious in taking measures that might induce a massive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Japan, providing only limited protection to a Korean Japanese and his Japanese wife who came to Japan after escaping from North Korea. As of yet, discussions within Japan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not advanced significantly and has focused mostly on how it affects its national interest.

In June 2006, Japan enac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nd created legal grounds for fun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ocacy campaigns within Japan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refugees. Also, the law allows the government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prohibit specified vessels from entering into its ports, sanctions on foreign trade, etc.) on North Korea should the abductee issue remain unresolved. For Japanese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be taken more seriously, however, its interest should be broadened to include other areas such the food shortages in the country. Japan must also seriously consider the negative ramifications of imposing economic sanctions.

European Union

The European Union has consistently expressed concerns o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the UN and at the European Parliament level as well, demonstrated by the passage of a resolution specifically targe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The European Unio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t will continue to step up pressure on human rights issues through bilateral dialogues and multilateral forums until there is marked progress in the measures taken by the North Korean regime.⁸⁾ The European Union takes care to stress that such an approach is aimed at presenting a road map to make headway in human rights practices, rather than seeking a regime transformation or collapse.⁹⁾

In March 2006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gathered in Brussels to hold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Conference". This event led the European Parliament to call in North Korean refugees to testify at its human rights hearings. The European Parliament resolved on the 23rd of March to pursue conditional aid, linking humanitarian aid to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front.¹⁰⁾ Three months later, on June 15th, the Parliament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submitted by a civic group called the Group of th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The resolution includes calls to ban punishment of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faced with persecution for having converted to Christianity while hiding in China. The resolution also urges North Korea to permit special rapporteurs access into the country and articulates strong concerns over the practice of restricting the flow of information, freedom of assembly, and religion.

2 Korean Society

The so-called conservative camp in South Korea is of the position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sis is fundamentally a product of the country's political structure and requires outside intervention due to the

⁸⁾ Eui-chol Choi,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of EU(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5),

⁹⁾ http://www.delkor.cec.eu.int/en/eurorea/humanrights.htm

¹⁰⁾ Chosun Ilbo, Mar. 23, 2006.

incapability of North Korea to deal with the problem on its own.¹¹⁾ Such a view is based on the belief that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undermine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nter-Korean exchanges will not do enough to bring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Most conservatives have focused on exerting pressure and criticizing North Korea but have not been able to present a viable solution other than the transformation of the regime. But with the passage of time, continued debate on this issue has led some groups to introduce strategies for reform of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human rights practices. They have begin to put forth the view that while preventing another crisis on the peninsula is of utmost importance, raising human rights issues in itself will not endanger the security of the peninsula. These groups also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remaining silent on the substandard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North. (12)

However, genuine changes must entail substantive measure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ully comprehending the gravity of the issue. To enable this, North Korea must be more broadly engag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North Korean people's awareness of their own rights must be awakened by expanded contact with the outside

¹¹⁾ Man-ho Hu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a Cooperative-Hostile Relationship,"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3-2005 Report on the Human Rights Perception in the North, pp. 17-58.

¹²⁾ In its Dec. 2005 statement,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serted that efforts on the political front alone, such as provision of food and fertilizers to the North and co-organization of events, would not suffice for resol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maintained that human rights discussions would have positive contribution to achieving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without making the North Korean regime abruptly collapse, through helping the North open up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covering the homogeneity of the two Koreas.

world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all the while ensuring their basic survival. In this respect, an approach seeking radical changes through outside intervention tends to overlook the possibility that the ensuing conflict and confusion can further aggravate the situation.

2) Dialogue and Cooperation

① International Community

European Union

Since May 1995, the European Union has incorporated human rights clauses in b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with third-world nations. Thus it was inevitable that the EU members emphasiz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n the course of their discussions to form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regime.¹³⁾ Despite their divergent stances, the EU member states adopted EU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 a resolution on special considerations for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in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t calls for improvement in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observ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Human Rights, North Korean citizens' access to external aids, and satisfactory conditions for NGOs for activities within the country. It also urges that member state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their evaluation of the North's stance on these concerns.

With its engagement policy, the EU has been providing humanitarian

¹³⁾ Man-ho Huh, "2003 UN Resolution on Human Rights of North Korea: Process of Adoption and Analysis of Contents," The 22nd Academic Forum on Life and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s,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May 26, 2003

aid to North Korea and has also held human rights seminars as part of the EU-North Korea political talks, along with technical cooperation. The EU has discussed the human rights issue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human rights talks (Jun 11~12, 2001) and EU Human Rights Seminar, and in June 2002, agreed with North Korea to continue discussions on human rights. Thus the EU intended to turn North Korea into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pectful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world peace, by inducing the country to open up, rather than isolating it. The EU expressed concern over North Korea's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bsence of rule of law, lack of information on human rights within the country and restricted access of the UN bodies and NGOs to the reclusive country, but the North Korean regime maintained its position, denying the existence of human rights problem there.¹⁴⁾ The EU was satisfied with the fact that it succeeded in getting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human rights talks. but has a negative view regarding the results of such talks.

The EU attempted to induce change in North Korea by forming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regime and increasing exchanges. As it was interested in keeping the unilateralism of the US in check and given the aggravated US—North relationship due to the nuclear crisis, the EU intended to expand it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mediator for peace. Thus, it is viewed that the EU regard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n issue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North Korea protested strongly, arguing that it was not right for the EU and other Western countries to single out and criticize a particular country and that such action would

¹⁴⁾ Refer to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r10108.htm and Korean Peninsula-European Union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 Nov 2000, http://www.fes.or.kr/K_Unification/GAC-Nov2000.htm

not improve the actual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Still,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ok relatively moderate attitude towards the EU while strongly protesting against the US and Japan for commenting on their human rights issue. Such diverging response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by North Korea in trying to alleviat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parting the EU from the US, as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is in the deadlock with little progress made in the six-party talks on the North's nuclear program and as the US steps up its pressure on the country on the human rights front. Nevertheless, if North Korea is to reduce the international pressure, it has to positively respond to the North Korea resolution of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cluding allowing special rapporteurs' visit to North Korea. Furthermore, it is understood that, as the nuclear issue became aggravated and other issues were 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U also took the position of cutting exchanges with the North, including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s, unless there was substantive progress in the issues of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China

As was expressed in the Chinese representative's speech in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adopt the human rights resolution on North Korea, China is fairly uncomfortabl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ssuring North Korea over human rights issues. Stating that it is wrongful for the Western countries to raise human rights issues against the developing countries who had been placed under the colonial rule, China accused the western countries of having committed grave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the past and still distorting the situation and trying to adopt a resolution on a certain nation's human rights issues using political pressure and double standards. 15) Although China did not explicitly mention North Korea, it criticizes the grounds upon which the

human rights resolution on North Korea was adopted, likening it to the unilateralism of the US. In addition, China asserted that adopting a human rights resolution for a certain country is a harsh measure, alleging that such action would make the situation wors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trying to be more globalized.

It seems that China is very concerned ab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essur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hich it fears could lead to the accusation of China over its dealings with the North Korean defectors. Until now, the Chinese government has closed their eyes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South Korea via a third country after deportation, especially in the cases that may turn into a diplomatic conflict with the countries involved. It also appear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tentionally avoided punishing North Korean defectors unless they cause trouble during their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yhow, China has continued with forced repatriation,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urge to stop the measure, with the justification that the actions are targeted to "economic immigrants." It is also known that even during the forced repatriation process, the Chinese government did not hand over the interrogation records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order to prevent heavy punishments of the defectors who attempted to go to South Korea. Thus China has been focusing on minimizing their internal social problems caused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eempting any possibility of mass defection of North Koreans. Given the situation, it is understoo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 better choice but to igno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staying in China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who make their

¹⁵⁾ Statement by H.E. Ambassador SHA Zukang, Head of Chinese Delegation, on Item 9 at the 59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April 1, 2003), http://www.china-un.ch/eng/45906.html.

living there, and are in de facto marriage to a Chinese spouse, as long as they stay low-profile.

China has been putting continuous efforts in providing humanitarian relief to North Korea, through food aids and provision of heavy oil. The exact scale of Chines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country remains unknown, yet the trade conducted by individuals and aids delivered near the borders are assumed to be quite large in size, and thus China has been functioning as an essential life line for North Korea's survival. Given that China actively engages itself in the rule—mak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expect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ould be advising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though indirectly.

2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rdened with the task of pursuing two policy objectives —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improving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a party in the inter—Korean talks, to openly and actively urge North Korea to address its human rights issues. To cope with the burden, it has set down four principles for its policy regarding the North's human rights issues and has continued supplementing the principles: first, human rights is a universal value of the mankind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akes great interest in the need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second,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 a meaningful and effective way, each country can strategically review and choose from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its given circumstances; thir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firms that it seeks to reduc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reconcile and cooperate with the North while aiming for gradual and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las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on harmoniz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est in and effort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 South Korea's efforts for build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making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and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bstained from voting in the 60th and 61st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n the resolu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emphasized in the EOV that it shar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 over the seriousness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condition and that it was working on addressing the issue by expanding inter—Korean cooperation. In other word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ressed that to see actual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it was critical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 country could voluntarily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ake necessary changes to improve its human rights cond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constant efforts to speed up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o that North Korea can come out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has also provided special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rd countries like China who fled their homes due to food shortage and other reason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the government has accepted everyone who wished to live in South Korea,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governments, and supported them to successfully settle dow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Yet, the government's policies on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have been criticized both at home and abroad as being too passive, and thus the

government's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has been seen as ineffective.

It is true that in the earlier stages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t was difficult to bring up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outright other than pushing for the more pressing humanitarian issues such as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But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ve been expanded for mutual benefits in various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o move further forward from the stag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outh Korea should implement policies to institutionaliz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humanitarian aids, economic cooperation, and dialogue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aking only indirect and mid- to long-term approaches on the human rights issue, fearing possible threat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creasingly less persuasiv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t has been proven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conditions of China and other developing nations, it is certain that economic progres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mprovement are mutually reinforcing, and thus South Korea needs to seek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urse of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Aside from th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n approach that balances human rights and the national interest of North Korea, recognizing that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democratization of the North are essential tasks for South Korea's own benefit as well as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tire region. In other words, the South should remind the North that resolving the human rights issue is an indispensable step it should take towards developing the nation. The so-called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two Koreas" called for by the North, which requires restoration of human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s a precondition should also be emphasized. South Korea's approach towards the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mutually beneficial and consistent principles that combine economic assistance, resolution of humanitarian issues and encouragement of North Korea to improve its human rights situation.

- 4.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1) Compilation of Inform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t a time whe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become an international concern,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related issues in North Korea and closely work together to systematically compile relevant, objective information. Creating practical solutions for the human rights problem of North Korea based on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requires collecting and updating objectiv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Due to the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relating to individual North Korean human rights events and their latest developments, options for concrete measures for improvement have been limited. Given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 class, and point in time, efforts must continue

to be made to maintain a concrete, up-to-date picture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North. At the same time, we need to systematically track not only the human rights abuse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suc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tributable to chaotic change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social disorder, and bureaucratic corruption.

2) Parallel Pursui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affirm that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options for substantially advanc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at improved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ill in turn contribute to secur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whole. It is necessary because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conomic recovery of North Korea are prerequisites for furthering substantive discussion and making practical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ill be able to help advance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North Koreans through humanitarian assistance,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by encouraging the North, through cooperation and dialogue, to reform, open up and eng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help improve their civil and political rights. It is also necessary to garner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South Korean society's efforts for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aligned wit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Human Rights Improvements through Poverty Eradicati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thought to have significantly deteriora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untry's economic collapse in the mid 1990s. So, approaches without consideration of how to alleviate poverty in the North, such as solving its food shortage problem, will have only limited effects. Because the North Koreans' right to food, which is seriously threatened, is closely linked to their right to freedom, we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that relies on assistance from the outsid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to advance the political and civil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This is believed to be a better option in making progressive improvements without provok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ich fears the collapse of its regime.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elp North Korea build sufficient capabilities for eradicating poverty. To do so, future assistance to North Korea should be made in the form of social development aid, which will allow concrete steps to be taken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ransparency in providing development aid should also be ensured to engage North Korean citizens in poverty eradication efforts.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of development aid while advancing the human rights agenda, concrete measures for human rights improvements must be incorporated into the plan for providing development aid. For instance, a development plan may incorporate matters relating to land ownership and right to farming, empowerment of women, child labor and access to education, law enforcement system,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human rights issues, and strategy for poverty eradication. Also, concrete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political and civil rights may be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assistance. 16)

4) Establishment of Rule of Law in North Korea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aid a heightened attention to rule of law as a means to induce human rights improvements in some areas.¹⁷⁾ In some societies, a defective law enforcement system often undermin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Laws and law enforcement systems that do no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r that have a flawed justice mechanism, including those relating to the police and prosecution, are prone to human rights violations. Particularly, an independent law enforcement system is crucial for preventing violations of rights of an individual. Rule of law may help prevent wars and conflicts from occurring, and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global peace.

Thus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estern countries have been assisting societies with common human rights violations by establishing a rule of law.¹⁸⁾ Also, they have taken keen interest in the impact of rule of law on human rights improvements in some societies.¹⁹⁾ With reference to law enforcement, confusion exists in many Asian countries between "rule of law" and "rule of order." 20) In other words, law enforcement agencies actually function as "order enforcement" agencies rather than law enforcement agencies under the pretext of maintaining order, thereby causing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For instance, in a system

¹⁶⁾ Philip Alston and Mary Robinson, eds.,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owards Mutual Reinforce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eter Uvi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Bloomfield: Kumarin Press, 2004)

¹⁷⁾ Randall P. Peerenboom,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What's the Relationship, http://repositiories.cdlib.org/uclalaw/plltwps/5-21 (searched on May 12, 2006)

¹⁸⁾ USIP, Rebuilding Afghanistan: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Security and the Rule of Law, 2001.12.11. http://www.usip.org (searched on May 21, 2006)

¹⁹⁾ Meryam Dabhoiwala, "Effectiv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Human Rights www.ahrchk.net/pub/mainfile/php/pandp/165 (searched on May 12, 2006)

^{20) &}quot;Order" refers to rules implemented by the administrative power pursuant to the law.http://100.naver.com/100.nhn?docid=62207 (searched on May 12, 2006)

interested in maintaining order, human rights principles, such as prohibition of beatings and torture, are disregard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e police are freed from the controls of the judiciary and prosecution and put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powers. Also, order enforcement creates inequality and discourages transparency. Thus an independent law enforcement system free of corruption is key to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y society. Rule of law is also an indispensible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In this respect, assisting North Korea in establishing rule of law is expected to work effectively towards enhanc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We need to encourage North Korea to further advance its recent positive responses (e.g. revision of legislations), while creating internal conditions to facilitate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 to ensuring rule of law. Given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y not recognize the structural flaws in its institutions and laws that hamper the upholding of human rights, attempts should be made to understand the rationale or concepts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regard to certain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is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play a role to bridge the gap in percep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is necessary for building the capacity of North Korea's law enforcement agencies. For instance, training and education on basic human rights should be provided to law enforcement officers in North Korea, so that they become knowledgable about key human rights principles and implement them in their law enforcement activities. As one opti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could co-organize training sessions on human rights for their law enforcement officers by drawing on the training programs of UNHCHR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help establish rule of law in North Korea, inconsistency and limitations in North Korean laws regarding human rights should be identified first.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enacting legislations that are required but not yet in place. Conditions should be created in which the law enforcement system in North Korea can function independently and fairly. To support this, financial assistance and technical cooperation must take place, e.g.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provision of goods for establishing a well-functioning system. Then,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arbitrary law enforcement can be avoided, and the legal system will effectively work in favor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5. Challenges Ahea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enhanc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society must work more closely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may be taking different approaches toward the issues. South Korea must go beyond the confines of the political discours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have a clear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different players and reach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and risks inherent to each alternative approach, while maintaining continuous dialogues and cooperation. It is deemed most effective to seek concrete measures for improvement within an international, multilateral framework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here is not a single party that is free from human rights issues. Thus resorting to accusation and pressure, or

"naming and shaming" alone, without any bilateral dialogue and cooperation, is deemed highly unproductive and most likely to aggravate the situation.

Demand for human rights improvements in North Korea must be limited in scope and specific. If calling for human rights improvements in North Korea is aimed at dismantling or bringing about changes in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it will inevitably be met by sever backlash and ultimately fail to achieve its goal. Thus pressure on North Korea with respect to its human rights situation must aim for the ending of human rights abuses against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what needs to be done must be made clear to North Korea.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n society must be closely watched to assess what implications the measures taken to improve human rights will have on the lives of North Korean citizens. Those measures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impact must be taken first. For examp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rovide support for North Korea so that it can take necessary steps internally to give their citizens more access to food.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humanitarian issues must be dealt with first, and then, the agenda should be widened gradually to include human rights improvement issues. But too much emphasis on the longer term objective in the policy towar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ay lead to a disregard of the on-going human rights abuses. To encourage North Korea to make independent efforts, it is advised to acknowledge positive changes undertaken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o help North Koreans build on them.

Most critical to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the human rights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its citize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human rights issues and proactively embrace the reques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fact that efforts for sec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ntribute to eliminating hostile sentiment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ultimately to the creation of a peaceful atmosphere. Policies should be sought to advance these efforts toward long-term,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Joseph Y. Yoon

(Minister-Counselor, Political Affairs, The US Embassy in Korea)

With basic agreement with Dr. Lee's balanced treatment of very difficult topic going through cause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cluding food crisis and how food can be used to suppress human rights, three observations are made:

- 1. International community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nd have the right to be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2. Recognize the multi-dimensionality of human rights issue, including food,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 3. Response of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flect the reality of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des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its delivery considered. Instead of one track solutions, all relevant aspects such as freedom, transparency, rule of law, food, good governance and the delivery of these should be considered.

The US is often at the centre of attention. However, the US is not single dimensional. For instance, it consists of executive branch



including the president, the legislative branch (US congress consisting of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the judiciary, which recently gave asylum to one DPRK refugee which the executive branch might not have concurred, as well as civil and religious groups. All of these groups have varying opinions and responses, which often means that US as a whole cannot be characterized in one way or another.

Secondly, there is a mistaken assumption that the executive branch wishes a "regime change." To address the concerns of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ctions taken by the Bush administration are geared toward changing the behavior and policies of the DPRK rather than aimed at bringing down the regime.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US human rights policy is universal and is not strictly affected by other policies that the US is pursuing in terms of nuclear and missile issues. The goal of the US administration is to bring changes within the current DPRK regime for it to adhere to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NPT and missile testing.

Thirdly, the paper asserts improvements in th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Could the author give more details on what these are?

H.E. Kim Luotonen

(Ambassador of Finland to Korea)

There are European Union (EU) council approve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pplied to all inter-state dialogues, with four thematic guidelines on human rights: death penalty, torture, children and armed conflict. The EU has engaged in human rights dialogue with a number of countries as a part of the instruments as part of its external policies. Some dialogues focuses only on human rights issue (for instance with China) while in other dialogues such as with Iran and ad-hoc dialogue with Sudan, human rights agenda was a part of a broader agenda. The main objective is to have human rights agenda mainstreamed and consistently included in the EU's different foreign policy instruments.



In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developing countries, as a basic principle, human rights, democracy and rule of law is included in all programs, with specific issues determined case by case. (For instance, on all ratified agendas, human rights issues such as death penalty, freedom of expression. Good governance and gender issues are incorporated.) However, having an established dialogue process with a country does not prevent the EU from submitting resolutions by its council in UN and other relevant for an or does it disallow the EU to condemn the interlocutor regarding human rights.

Needless to say, with the DPRK, human rights issues are one of the agenda pursued by the EU. As such, there is an annual visit by troika (consisting of the EU presidency, incoming presidency and commission) to the DPRK, although the visit was called off by the DPRK last year and this year's visit scheduled for autumn is yet to be confirmed. Member state officials also Pyongyang bring up human rights issue consistently. Although discussions are sometimes like 'talking to a wall,' the EU is hopeful that they will start to listen. Progress made in this regard includes human rights reports submitted by the DPRK on conventions signed by it and although the reports can be criticized, the actual submission of the report can be considered as an achievement.

Lastly, hunger is a par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However, the EU constantly underline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completely de-linked from its human rights agenda and is based purely on humanitarian criteria. Therefore, Dr. Lee's paper on this issue does not correctly reflect the situation as the outcome is due to the DPRK's refusal to receive humanitarian aid.

Judith Gough

(Political Counsellor, The British Embassy in Korea)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world—wide is a UK Government priority and lies at the heart of UK foreign policy. We believe that human rights are universal and inalienable. This means that we will work through international for a and bilateral relationships to spread the values of human rights, civil liberties and democracy, which we demand for ourselves. This means that we cannot ignor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whilst I speak for the UK, I must also refer to the European Union. The EU, comprising 25 Member States, is also committed to tackling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as indeed are many other countries.



No country has a perfect record on human rights. Certainly the United Kingdom doesn't, and nor do our partners in the EU or our allies further afield. We, too, receive criticism about aspects of our human rights record. But unlike the DPRK we do not respond by expressing anger or refusing dialogue. We respond by inviting independent rapporteurs to undertake whatever study they consider necessary – in

fact, all UN rapporteurs have an open invitation to visit the UK at any tim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continues to give both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enormous cause for concern. Details of serious and widespread abuses have been highlighted in past reports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the DPRK, Professor Vitit Muntarbhorn.

The DPRK and others have claimed that human rights issues are raised as a stick with which to beat it. I want to make clear that when we talk about human rights we do so with no hidden agenda. I am hopeful that the concerns we have around the DPRK's human rights record can be dealt with, if their government is willing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is end. The UK stands ready to play its part in this process. It is because of our determination to engage with the DPRK on human rights - and on other complex and sensitive issues too - that we have maintained an Embassy in Pyongyang since 2001. Our staff have been able to have some frank conversations with the DPRK authorities at a senior level about our concerns. It is only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that we will make progress, however slow that might be. And throughout this time, both the UK and the EU have continued to raise human rights issues with the DPRK.

In July 2004, Professor Vitit Muntarbhorn was appointed as UN Special Rapporteur on DPRK Human Right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DPRK has refused to acknowledge either the CHR resolution or the appointment of the Special Rapporteur. The EU tabled a further resolution at the UNHCR in April 2005, which was adopted by an increased majority. When the DPRK failed to respond to those resolutions, the EU revised the issue in the UN General Assembly. A resolution was adopted in December 2005. We sincerely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to the clearly expressed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rettably though, the DPRK government has so far ignored the UN, and continues to pretend that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solely the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and a few Europeans. The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suggests otherwise: 88 in favour of the EU Resolution, and only 21 against.

Dr. Lee's presentation suggests that the EU has cut humanitarian assistance as a result of either the nuclear issue or human rights. This is not the case. We do not link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political issues. EU humanitarian and food aid programmes continue. What is true is that the DPRK announced last August that after 31 December 2005 humanitarian activities must stop, humanitarian agencies would have to leave and monitoring would be curtailed. In March of this year,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DPRK and the European Commission under which suspended EC funded projects could be re—activated through the NGOs which remain in the DPRK. We are closely monitoring the new arrangements with our partners to ensure that modalities are suitable. We believe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monitored to ensure it is received by those most in need.

We have made clear to the DPRK government that we cannot extend the benefits of a full and normal bilateral relationship until they have shown that they are addressing our concerns on human rights and other issues: in particular,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s and missile capability. Until the DPRK responds to international concerns, the UK will work with EU partners and others to maintain and increase focus on the issue in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bodies. There are some who will see this dialogue on human rights as unhelpful, if not damaging to broader engagement and the Six Party Talks. We disagree. This is an issue we cannot ignore in the 21st Century. Direct dialogue and engagement on human rights is the only way forward. We cannot let it drift and hope that other policies will somehow miraculously bring about a change.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dialogue on this issue and hope that through our policy of constructive engagement, the UK and the EU, along with other countries will be able to persuade the DPRK authorities to engage actively and seriously on human rights issues and address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ope that will be soon and that, despite the difficulties, our friends and partners in the region will support us.

Chung, Chin-Sung

(Member of the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I would like to speak not as a member of the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n Human Rights but as an individual.
- 2. When dealing with the NK human rights issue, it is crucial to take into account the closed nature of the country. Therefore, under any circumstances, we should avoid making overly assertive and extreme judgmen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not have an accurate picture of North Korea, and NK citizens have a lot to learn about the world outside their own boundaries. It is true that an internal motivation is essential to change any society; however, in NK, such internal motivation is absent. In 2005, I had interviewed 105 women who escaped from NK at Seoul University and realized that hey had almost no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In response to the survey question, "Do you know that NK is a member of the U.N.?", only 2 out of them replied in the



positive. Thus,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break through such closed nature of NK society.

3. I would rather positively evaluate the discussion on NK Human rights of International society since 1990s, even though many problems still exist in NK. The international society seems to have a common perception that 'NK hasn't changed at all. However, since early 1990s when European NGOs started to tackle the issue, UN Human Rights Commission passed its resolution in 2003 and even the UN General Assembly passed its resolution in 2005. During this same period, the NK government submitted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1984 and 1999, and 2005. It also submitted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1989 and again in 2002. Also, it submitted a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in 2003, and joined in the 'Covenant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in 2001 and submitted a report on it in 2002. Although submission of those reports does not necessarily mean real changes in NK society, at least it shows that the NK government was responding to international society. In addition, NK government reportedly reduced the number of provisions of death penalty from 33 to 5 and increased the legal age for death penalty from 17 to 18 in the amendment of Criminal Law in 1995. Again in the amendment of 1998, it made other changes, including a new provision for 'freedom to reside in and travel to any place.' In general, based on the

witnesses of defectors, NK's oppressive atmosphere seems to be improved remarkably.

In this regard, the perception of EU and the US - that 'NK hasn't changed at all' - looks to be too critical. Admittedly, NK strongly opposed resolutions of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and Human Rights Sub-Commission, even threatening to secede when the first resolution was passed in the Human Rights Sub-Commission however, other countries have behaved in a similar fashion when faced with the same thing. Therefore, it may not be fair to respond too sensitively to NK's resistance. On the contrary, it might be better if we hold their efforts in a positive light and encourage them to accelerate the changes.

4. Next, we have take into account that NK human rights situation, especially women's human rights, is largely caused by the backward and feudal nature of NK'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Hence, it is unreasonable to demand that they adhere to strict international standards. We need to approach each specific issue separately in a practical manner. For example, women'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female circumcision in North Africa and the caste system in India, Pakistan, and Nepal, is in the process of gradual change, not through self-motivated internal reforms but largely through external pressures brought about via international dialogue. We need to frame such human rights abuses as viol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rather than excuse them through cultural relativism but it will take time.

- 5. Various efforts to break the closed nature of NK society are important, including stimulating discussion of human rights, travels, studying aboard,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Humanitarian aid efforts can also be an important gate to opening the doors of NK society.
- 6. Final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helping NK new-settlers adjust to life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youths, many of whom have dropped out of school and are experimenting with unsavory life styles. We need to consider positive support mechanism for them.

Kim, Mun-Hwan

(Director of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OFAT)

1. Today's symposium is particularly meaningful because we are searching for alternatives and practical ways. The human rights issue is multi-sided, complicate and difficult.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is much more complicated because it contains many other additional factors such as particular conditions of North Korea and the security issue and so on. I want to present the government's position first and then, I will tell you what I have felt for almost one year performing the role of a Director of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 2. The current position of our government was formulated after holding close consultations with other ministries in early December 2005. The details are as follows:
- 1) Human rights are universal values which we consider very important.
- 2)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re our important political goals.

- 3) Because North Korea perceives criticiz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as an attempt to overturn its regime, our open demand may deepen the instability between South and North. Today, the U.S. Embassy in Seoul emphasized that the U.S. government has no intention of 'regime chang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how the NK regime perceives it.
- 4) We think ensuring the right to live is very important to make a substantial improvement of NK human rights. For refere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400,000 tons of food every year since 1995 and 300,000 tons of fertilizer every year since 1999, and accepted 8,200 North Korean defectors as of April of 2006.
- 5) Our government consistently takes active and practical measures to relie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s.
- 6) Our government will endeavor to improve the NK human rights while holding close consultations with North Korean society and helping the NK government to improve its human rights situation for itself.

The above 6 points of our policies on NK human rights can be summarized with several key words Special characteristics created by the division, issue of 'right to live' due to the food shortage, internal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gradual improvement of NK human rights.

- 3. Next are my personal views on current NK human rights issue.
- 1) First, the NK human rights situation remains at the same level. But, we should be reminded of the fact that we have very limited

- information on North Korea, so we need to have more information on North Korea available and disclosed.
- 2)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society on North Korea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s getting heavier.
- 3) In June2006, the Human Rights Commission was upgrad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refore, from this year,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be held for at least 10 weeks 4 times in a year, and special sessions can be held in addition. The previous Human Rights Commission used to be held once a year for six weeks until last year. This means the U.N. has a new semi-permanent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and South Korea became a board member of the Council.
- 4) I am concerned that divisions within the nation might be deepened with different views toward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camps might have an ideological feud with each other on this matter.
- 4. I would like to finish my speech with the following four comments.
- 1) Until now, our government has focused on the human rights improvement in the economic aspect but the government will also put more emphasis on the political aspect from now on.
- 2) We need to induce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play various roles. Various act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EU and NGOs need to act in their unique roles. Especially, the EU has moral superior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also has same historical background, thus it can contribute to discuss the North's human rights issue as an agenda of international society.

- 3) We need to help the NK regime to be familiar with the international laws or agreements and to cultivate the capacity to deal with the human rights issue.
- 4) Finally, we need to set our priorities. First, we should ensure the right of food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distribution aid supplies. Second, we nee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accept the visit of UN Special Rapporteur on NK Human Rights. Third, we need to send more supplies for children and women and to cooperate with WHO, UNICEF and other organizations to make sure such supplied goods are well delivered.

Lee, Keum-Soon

(Director,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KINU)

- 1. First, I agree with the point that the US is not single dimensional and civil society also has different opinions and approaches. As time goes by, they seem to sympathize with the inter-Korean relation and the necessity of peace settlement in Korean peninsular and try to reflect it.
- 2. There was a question about how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has been carried out recently in North Korea, and Prof. Chung, Chin-Sung already mentioned many cases in the discussion. If I may speak as an expert mainly studying Ai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e punishment that they receive in North Korea is still against human rights and the situation is very serious, but I think that there are some efforts to make changes. For example, North Korean government became cautious of classifying the types of defectors and punishing them. In addition, a change in improving the sanitation situation in detention facilities is detected.



- 3. I personally also hope that a visit by UN Special Rapporteur on NK Human Rights to North Korea should happen. The UN Special Rapporteur may visit not Pyongyang but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if it is difficult to make an inquiry about a general situation of North Korea human rights, I hope that a channel is arranged so that the inquiry can be carried out for some special regions that North Korea can open up for examination, or for special topics only.
- 4. For U.K., Germany, and EU, a human rights dialogue with NK government and consulting of technical support for NK officials in charge of human rights is a very difficult process that needs a lot of patience and efforts but I believe the work that 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no choice but to continue. Thus, although it doesn't receive enough response from NK government, it may provide an opportunity for learning human rights awareness and rules for a limited number of NK officials in charge of human rights.
- 5. First secretary of German Embassy in Seoul talked about the efforts to record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 East Germany. In fact,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of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which I am working was established in 1996 by referring to the German case to preserve records for cas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 violation. However, since that work was very difficult in practice, white paper on North Korea human rights was published as a substitute, and currently, NKDB, a private organization in South Korea is building up such a database.
- 6. On EU level, I think tha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s well as EU

NGOs for humanitarian aid in North Korea have been playing important roles. These NGOs didn't simply engage in emergency relief activities but also have systematically worked for community development as well as developmental aid projects to increase their capability. But, the problem i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the work as development aid but as humanitarian aid, and recognizes the development aid to be something else on a different level. I believe that these NGOs' efforts should expand also in future.

7. We have to prepare a plan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North Koreans so that they can recognize human rights issues. In addition, not only should we provide information for them but also expand an opportunity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responsible officials lear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tter.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cusing on Practical Approaches-

Session 2

1322100



A Reasonable Approach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Challenges and** the Refugee Issues in ChinaD



Won, Jae-Chun

- Professor of Law, H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School - Director of International Campaign, Citizens'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1. Introducti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a sensitive issue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We can't easily embrace it nor ignore it. It is becoming a defining issue that divides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older generation and younger generations in South Korea. North Korean Human Rights already increasingly becoming a heated issu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¹⁾ This is an unpublished paper prepared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ymposium organized by the Peace Foundation. The proper permission should be obtained through author before making any reference or usage of this paper. All rights reserved.

example, United Nations Human Right Commission and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assed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legislat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South Korea, contending policies designed by the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are voicing unconcerted different opinions in address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efore we dive into rash ideological disputes, we all need to be aware of the issue's direct relevance to Korea's future. All the concerned parties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should resist temptation to us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for their short term political gain. Peace and democratic development should benefit everyone and no one should be left out in the process of addressing Human Rights in the peninsula.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Concern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are already an internationalized issue. It's not something that can be covered or hidden for the need of South or North Korean regimes. All the concerned parties should convey a positive message to North Korea. The message is that it is possible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and such improvement would not necessarily undermin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nd their way of life. In fact, improving quality of life would quite possibly in turn could strengthen North Korean regime.

Two Koreas should have sought for me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process shaping the future situations. Until now, two Koreas have been reacting to international pressure such as whe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as passed in the United States and UN resolution were passed.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hould take more initiative in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both internally and internationally.

It is not hard to forsee that US will continue to avid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concern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ince the issue continue to draw public attention and since there is an already legal base available, such as NK Human Rights Act for committing further resources. The US Special Envoy is already in action and soon to visit Kaesu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The United Nations and Europe are also accelerating their discuss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activities of UN Special Rapporteur and his reports are already submitted to UN General Assembly. The common grounds are deepening amo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bout publicizing of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ir coalition will bring more effective advocacy due to increasingly available resource.

Organized behavior by the desperate NK refugees in China is predicted an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gainst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will receive much more atten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as 2008 Peking Olympic Games nears. With Japanese abduction issue further complicating the matter, North Korean Humans Rights issues are quickly becoming hot potato issue in North East Asia. There is a possibility for the situation to worsen if North Korea does not read the situation and chooses to further isolate themselves in reaction to these movements. T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no longer be able to acquiesce the situation.

3. Reacting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The problem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is an issue all three entities involved,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want resolved. It appears that three countries wished that somehow the refugees issues would just go away or at least one country would come up with solution. It is clear that in order for any feasible resolution to refugee matters all three countries have to cooperate. The later the solution comes, the more pressure will be given by the US and Europe, and there will be lesser room for three countries to resolve the matter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We need to pay attention that the issue of NK refugees in China has such an importance that major portion of US's NK Human Rights Act is devoted to it.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by asking China through negotiation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and the Chinese law in treating the refugees and we need to convince China to apply humanitarian principles in dealing NK refugees. Since all means for mobilization in legal and institutional rationale are available, aggressive attempts for quick political compromise could further complicate matters. Principled based approach will more likely render positive results.

The problem of NK refugees is moving from a general refugee problem to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and religious freedom issues and the perceived seriousness is progressively increasing. We first need to demand the Chinese government to enforce Chinese law by prohibiting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of female refugees in China (it is reported over 70% of all refugees are female). The international NGOs should be allowed to have access to refugee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urthermore, forceful repatriation of refugees to North Korea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As long as prosecution and persecution of returnee continue in North Korea, China should consider issuing temporary legal status for the refugees to stay in China in order for their basic human rights to be protected. Three countries could come up with realistic solution to the refugee issues, for example, North Korea need to amend the criminal statute and not punish returnees, China should extend temporary legal protection to refugee and South Korea should be willing to provide resources and technical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to China. These are matters of practical concern and does not call for further politicizing the issue.

4. Facilitation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Better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at are the alternatives? The Asia human rights regime should be established (here, the term 'regime' refers to a 'system' that includes not only the government but civil sectors as well). In the 21st century East Asia, the military—economic hegemony of China and Japan are under its way, which is bringing forth discussion of Asia's regional security order. Therefore, a field for discussion is required for the North and South Korean issue as well as the tens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A space of discussion for economic system in the region is also required. Although ASEAN, FTA, APEC and the like are active, neither the South nor North Korea assumes the leadership roles in those regional systems in area of human rights. In this light, human rights issue should be suggested to all of Asia. South Korea is apt to assume the leadership role in discussing human rights than other countries in the Eastern Asia. South Korea, as one of the most free and democratized country in Asia, have overcome the pains of dictatorship in the past and undertook a peaceful change of government.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well solidified in terms of freedom of speech and religion, and have experience in betterment of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active at work,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d movements of democratization are in vital roles of the current government.

Judging from the above, South Korea can be considered to have an objective position to speak abou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lieu of other strong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is at an advantage to establish a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Regional human rights regimes are already established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The regional system does not necessary unfairly single out any one country in fact, when United Nations discuss human rights violations concerning countries in these areas, the regional regimes have been serving as a buffer against unilateral pressure or intervention from powerful countries thus providing more room for self determination for each country. Currently, regional human rights regimes exist and resolve various human rights problems in most continents except Asia, including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3),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69), Arab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69) and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1981). The Asian version of a human rights regime is far over due and, I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lead the effort to introduce the system to Asia.

How is such a plan able to persuade North Korea? Firstly, North Korea will be given some breathing room through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a regional human rights regime. By participating formation process of "Asi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North Korea could display its good will effort to North America, Europe and United Nations that they are working towards betterment of human rights on their own.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also be less pressured to engage in discussions because by participating on their own and on their own term, they stand a position that they will not lose their face and could work to adjust to the Asian human rights standards. Also, since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will entail cases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North Korea will be less disadvantaged in censuring those human rights weaknesses.

Advantages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re considerable as well. The current government is restraining itself on comments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order to avoid provoking them. Through an Asian human rights regime, however, South Korea can not only discuss those issues freely but also render substantial improvement of NK human rights as well as addressing Sou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oth liberals and conservatives will have says in the process and this might be the rare opportunities for both camps to address NK human rights issues without further dividing country.

In the end, human right is about quality of life. North Korea needs to realize that if it wants a developed and civilized society, it cannot avoid addressing human rights, or quality of life issue. To join the WTO, North Korea needs to reform many of their system such as labor condition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courts to administer contract disputes. The establishment of these systems will provid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ditions. It needs to clear that amelioration of human rights is not separated from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that it is directly related to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nless North Korea has the world to think that they are undergoing a reform on human rights situations, they will be hard pressed to be incorporat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plan to make an Asian human rights regime is actually a model that has already been tried and proven in Europe through the Helsinki Convention. The Helsinki Convention is a case that Western Europe and Eastern Europe together created, in 1970's, the minimal standards of human rights for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to abide by, in return of recognition of their territories and system and substantial economic assistance. The convention stabilized the region when the Eastern Europe achieved preservation of their system and economic benefits and Western Europe elicited Eastern Europe's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planted seeds for democratic development.

Unilateral and sudden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system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the regional security dynamics and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 East Asia. Therefore, it is best that we help North Korea be incorporated into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licit higher quality of life for its citizens and establishment of democratic order through having North Korea promise amelioration of human rights.

We should provide environment and invite North Korea progressively to

engage in cooperation activiti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uch as through economic programmes with a human rights component (e.g. labour rights in the industrial zone), Rule of Law programmes (e.g. training and education to capacity-building law enforcers, to respect civil liberties, and to reform the prison system), and legal literacy programmes (e.g. dissemin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s, policies and practices), with greater space for civil society participation.²⁾

5. Conclusion

Where will South Korea find national vision in the 21st century? How will we propose values that will garner respect and agreement of international society? We can do this by aspiring as an Asian advocate of human rights. We need to assert ourselves as a symbol of Asian democracy by leading the human rights discussion in Asia through the aforementioned Asian human rights regime and by hosting the Asian human rights courts in Korea. Netherlands have hosted the U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position herself as a center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justice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survival strategy. They are a small country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but positioned themselves as a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and the hub of international law. Not many country would consider

²⁾ Press Statement: Visit of the United Nations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10, November 2005, Seoul

invading a country which host regional human rights court. South Korea must find a alternative way to secure its survival in the region in addition to relying on miliary and must strive to play a positive role in Asia upholding profound historical mandate.

North Korean Human Rights challenge is not a hot potato issue. It is rather an opportunity for us to create a $21^{\rm st}$ century vision through positive engagements. It is a new opportunity that we elucidate to the world "Country we pursue is a place, where people wants to make their home" with noble values of human rights that can aspire all Asian countries.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s Approach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Lee, Tae-Ho

Deputy Secretary Genera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1. Assumptions

- 1)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tandards are realistic and can be assumed by all countries and civil societies
 - Considering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it is possible to identify common evaluation criteria that are applicable to all societies despite differences which may exist among systems and institutions. But a number of complications arise as well.
 -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has recently declared, at least in

public, that it would abide by the UN's human rights codes instead of applying its own standards.

- 2) Problems of So-called 'Human Rights Diplomacy' or 'Expansion of Freedom"
 - In apply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o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gative side effects can result as a result of arbitrary interpretation.
 - There have been few cases where discussion of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have been fairly applied in international politics.
 - During the Cold War, the Western world supported the feudal monarchy system in the Middle East. In South America and parts of Africa, it supported the authoritarian and military governments or directly supported coup d'etats. In addition, the Hosnī Mubārak government of Egypt has also been support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HAMAS in Palestine, who had been directly elected under UN monitoring, has faced economic sanctions.
- 3) Prevention of Disputes and Betterment of Human Rights
 - Uses of containment, pressure and military threats can be quite effective to expose the problem and its opposite situation. However, such measures have certain side effects including:
 - i) They make the defending entity nervous, and create internal unity and a justification to their authoritarian system.
 - ii) Citizens suffer the consequences more than the power-holders.
 - iii) The possibility of using such measures for political abuse & for other purposes.
 - There is no clear evidence to prove that the threats and methods

employed in the cases of Kosovo, Iraq, Afghanistan and Iran contributed to democracy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those countries.

- However, dispute resolution can facilitate a reconciliatory atmosphere for the betterment of human rights. This means that conflict resolution (including military conflicts) and human rights realization (or justice) are closely related.

2. Positive Peace and Constructive Engagement Policies: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Areas of Conflict

- 1) Positive Peace Action and Procedural Definition Positive peace refers to a situation where the factors that led to conflict are no longer present (presence of justice). 'Positive Peace' means more than just absence of a war; it includes betterment of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 On the other hand, positive peace theory sees procedural justice just as important as substantive justice, and emphasizes the "dialectic of procedures and substance." It especially emphasizes that the executors of procedural justice should not take sides.
- 2) Engagement Rather Than Intervention or Containment
 - Engagement as a collaborated effort for positive peace.
 - Humanitarian engagement for the people disregarding the ruling power, by civil society rather than the government.
 - Instead of exacerbating the dispute, careful support and consideration regarding the long-term process of creating democratic

subjects in the respective societies.

- collective engagement to ensure and help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3) Approach of Entities Involved in the Dispute

- In regard to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main entities.
- For example,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had hatred towards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facilitated by the slogan "Kill Kim Il-Sung, tear down the communist party, and defeat their Army." In this context, the NK human rights issue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South Korean civil society can be considered both a new and an old agenda.
- In order for the civil sector in South Korea to discuss the NK human rights issues in a democratic way, it should be fully free internally from political slogans of the Cold-War, and manifest different way of approach from the past as well.
- The original goal of promoting "Human rights and Peace" should not be corrupted by insisting on liberation of the North Korean society saying "Give them same freedom as we enjoy." nor accepting external politico-military intervention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4) Approaches of PSP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The Peace Establishment Center of PSPD is not a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monitors NK human rights situation. It is rather an organization that searches for resolutions for peace in the peninsula and cessation of the arms race.

- We are, however, interested in the NK human rights issue and think of it as an important subject closely related to the peace system and expansion of human security in the peninsula.
- We support various collective efforts as well as research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 PSPD's principles are:
- i) Maintaining of ethics in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exclusion of politics in human rights.
- ii) Multifaceted cooperation for substantial improvement of human rights.
- iii)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conflict prevention.
- iv) Being cautious of the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divided statu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uman rights.
- v) Building equal 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3. Limitations of the UN Resolution

1) Alternatives to the 'Resolution'

- Being cautious of the trend that the UN Human Rights resolutions often get politically used for so called 'Freedom Expansion policy' or 'Transformation Diplomacy'.
- And as a result, approaches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grade into so-called 'politics of criticism' that does not result in any substantial benefits, but only lessen the potential for human rights promotion and sow the seeds for later disputes
- Rather than resolutions, multi-channel dialogue efforts by ROK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hould come first to recommend and

urge the NK government to release information on human rights and to acknowledg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s other countries do.

-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use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and consulting services through the UNHCHR.
- 2) The Need for Substantial Conversation on Human Rights
 - Constructive observation and criticism for human rights should be encouraged.
 - Consistent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that will bring about substantial improvement in human rights should be encouraged rather than promoting conflict-prone and political approaches.
 - A phased approach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 afford to accept.
 - Pluralization of discussion channels; especially strengthening the engagement of civil society is necessary.
 - The ROK government needs to clarify its intention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n South Korea when demanding improvement of NK human rights.
 - The mediator rol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need to be magnified in order to seek a tailored approach that considers the unique structure of the peninsula when engaging in conversation with the global community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 4. Conversation with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Human Rights

- 1) "Human Rights in the Peninsula" and the Role of Civil Sector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As main players in a prolonged conflict, North and South Korea must recognize interconnectedness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North and South Korean human rights.
 - Tolerant, responsible and reflexive approach instead of confrontational approach
 - The situation of divided peninsula demands an assertive overview of the 'Right to develop' in human rights standards

2) Start Conversations to Overcome the Division

- Instead of unilaterally asking North Korea to change its syste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udently start conversations which deal with distorted systems and custom caused by division.
- Also, the efforts should first assume the substantial cooperation for overcoming humanitarian emergency and increasing quality of life. This should include effective assistance (direct or indirect) in cushioning the side effects of economic reform of the North and in fostering a self-management capability.
- In order to mitigate the military tension that helps sustai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North Korea, leading and active role in efforts for the promotion of peace must be accompanied.
- Conversation with the North should be continued along with peace and human rights improvement in the South such as arms reduction and aboli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3)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nifest in United Nations its

interest in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cluding Right to Development) in North Korea and the peninsula,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ialogue and practical measures rather than political pressures and rhetoric.

- It also needs to appeal for UN's support for easing tension in the peninsula, support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and support for mutual North and South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 The Korean NGOs concerned with human rights should also work to increase international society's awareness of the indivisibility and mutuality between betterment of human rights and easing of animosity and disputes. The global solidarity working towards helping this goal should be more active.
- The NGOs also need to fortify the lia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which are free from external influence and fund out of non-HR groups while abiding strictly by the democratic rules and human rights standards.

■ The Problems of Connection Between Development Aid and NK Human Rights

- It is valid in principle that development aid other than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connected with amelioration of human rights. However, this is effective only when it serves as an incentive for amelioration rather than as restrictive measures.
- It should be noted that North Korea had been excluded from such assistance by factors unrelated to human rights for decades.
- North Korea has been strengthening their system of 'Sit In" demonstrations for many decades and has been maintaining their

authoritarian system with the name of 'March of Hardship' even after rapid worsening of its economic situation after the Cold War.

- Today's North Korean economy has been undergoing slow but fundamental changes. Development aid will promote higher quality of life for North Korean citizens rather than serve the fortification of existing the authoritarian system. The positive effects of assistance seem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reform and market economy.
- Particularly, remembering that the expansion of market doesn't necessarily bring the betterment of human rights,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aid and minimiz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 Mitigation of animosity rather than impositions of sanctions can change the North Korea's 'Military-prioritized politics'.
- Therefore, ceasing development aid or imposing economic sanctions because of human rights issues is not wise.
- The Connection between the Six-Party Talks and NK Human Rights
 - It is questionable that the European model of human rights conversation that entails agendas such as multi-party arms reduction, cooperation for security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will be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 The commonness of religion, shared norms and experience of democratization that existed in all of Europe in the 1980s do not exist in Northeast Asia. Accordingly, actors who can excise arbitration power and basis for civil society hardly exist.
 - It is also questionable that the attempt to resolve many issues, as a package, such as the nuclear weapons problem, multi-party peace

cooperation system and amelioration of human rights is appropriate.

- Also, pressuring North Korea to transform their system with the name of human rights may inflict dispute and hurt the cause of improvement of human rights.
- The effect of resolving animosity and peace system in the peninsula on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hould be considered, and human rights issues should not be connected with peace system or counter-proliferation issue.

■ North Korean Refugees

- The border area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an exert crucial influence for positive change in NK; yet, its importance demands sensitivity and careful approach.
- Asylums of refugees to South Korea or third countries should be protected and guaranteed.
- Each refugee has different motivations, and the human rights of these refugees can be seen on various levels besides right to exile.
 Overall, improvement of conditions for civilians to move in and out of their country freely is important.
- However, we oppose orchestrated asylum seeking, which politicizes the issue and may cause more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should be restrained in order to facilitate an environment that human rights issues can be justifiably addressed and improved for North Korean refugees.

Practical Programs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n, Ki-Hong

President,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 1. Our Organization's Principl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 1) Ultimate subjects of solution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are the North Korean citizens.
- 2) A change in the North Korean regime is unavoidable and indispensable to sol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 3) External support programs are extremely important as North Korea is

¹⁾ This is not a complete essay with proper formatting. Rather, it is a brief description of various activities that the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has achieved in the past decade and what we should further work on in order to ameliorat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under radical surveillance.

4) Sol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should not be tied with a specific ideology.

2. An Outline of Our Organization's Past Activities

1) Publicity

(a) Aim

• To solve human rights problems in North Korea, people in South Korea as well as the world should be aware of the human rights problems and the North Korean reality.

(b) Method

- Publishing and distribution of our organization's magazine <Keys>, for five years (2000 to 2004). 2,000 copies of the Korean version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monthly, while 1,000 English and 1,000 Japanese version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quarterly.
- Maintenance of internet newspaper <dailynk.com> in both Korean and English since December 2004. Approximately 8,000 to 10,000 users visit the page every day.

2) Education and Research

(a) Aim

• To deliver systematic knowledge of North Korea's reality to those interested.

- To prepare activists to solve the facing problems.
- To prepare those who will help reconstruct North Korea even after the future changes with North Koreans.
- To prepare policy alternatives regarding various subjects such as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opening and reforms of North Korea, reconstruction,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reunification strategy.

(b) Method

 Holding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um> three times per year with four to six lectures per forum.

Lecture contents range from human rights reality in North Korea, fu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possibilities for opening and reform of North Korea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and North Korean nuclear weapon issue, mostly given by experts of each area such as North Korean refugees or academic scholars. Participants are university students, young North Korean refugees and normal citizens.

- Concentrated training for student members during summer and winter vacations, for three to four days a session.
- Establishment of a Research Committee to study policies mentioned above, and to present and discuss in various seminars and forums.
- Regular holding of policy forum sponsored by dailynk.com

3) Publishing Activity

(a) Aim

• To publish North Korea related books with the result of education and research work as a part of publicizing activities.

- (b) Result
- Published about 30 books regarding North Korean famine, concentration camps, human rights violation, North Korean regime and Kim Jong-II, and future of North Korea.
- 4) Supporting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3. Future Direction

1) Direction in Principle

(a) For the past decad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ties were largely concentrated on wha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do to ameliorate the North Korean situation outside of North Korea.

Example) Humanitarian aid of food, rescuing refugees, hol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resolutions on NK human rights, etc.

(b) We should now transfer the focus to inside of North Korea, because the ultimate subjects of human rights movements are the North Korean citizens. Leading the North Korean citizens themselve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s of the outside world, to compare their situations and to have them reclaim control over their lives is important.

2) Direction of Main Activities

- (a) Expanding <dailynk.com> and Publishing Chinese Version
- Although China isn't a completely democratized country, its

accelerated reform makes consideration of public opinion of Chinese people for government affairs unavoidable in the long—run.

• Convincing the Chinese intellectuals or North Korean policy experts that changes in North Korea will ultimately be beneficial to China, so that they can influence their policy—making.

(b)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Inflow of Information inside North Korea

- Sending shortwave radio broadcasts
- Sending radios
- Sending the Bible, Buddhist scriptures, videos or books.

<Data 1>: South Korean Press and Media Channels North which Korean Respondents Heard/Watched (Multiple Responses Allowed)

Experienced Media	Respondents	Percentage (%)
Far East Broadcasting Co.(Christian)	2	0.65
Recorded Videotapes	1	0.32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32	10.52
Free NK Broadcast	2	0.65
RFA(Radio Free Asia)	11	3.61
Hankook Ilbo	2	0.65
MBC	3	0.98
VOA (Voice of America)	2	0.65
Do not remember / Others	3	0.98
None / No response	261	85.8
Total (Respondents)	319 (304)	104.81

Data: 'Research on New-settlers' Exposure to Media' by Korea Press Foundation <Data 2>: Frequency of Using South Korean Media in North Korea

Frequency	Respondents	Percentage (%)	Percentage of Those Experienced(%)
Almost Everyday	15	4.9	22.7
Once or Twice Per Week	15	4.9	22.7
Once or Twice Per Month	10	3.3	15.2
Once or Twice in 2 months	2	.7	3.0
Once of Twice Per Year	5	1.6	7.6
Once or Twice in NK	19	6.3	28.8
Subtotal	66	21.7	100.0
Not Experienced / No Response	238	78.3	
Total	304	100.0	

Data: "Research on New-settlers' Exposure to Media 2005" by Korea Press Foundation

4. Opinion on Government Policy

1) Principles

- (a)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hould be viewed in relation to the worldwide spread of democratization and human rights initiatives. Therefore, understan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efforts as one of the dependent variable of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policies is failing to follow the periodical changes.
- (b)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rooted from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refore, an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without a

fundamental chang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a far-fetched idea.

(c) The government should relate any aid to North Korea, except minimum humanitarian support, with human rights issues.

2) Method

- (a) Division of work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ngress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or human right assistance related Act.
- (b) Utiliz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of Korea
- Establishment of neutrality of NHRC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 within NHRC
- Administration by those with degrees concern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or experience in NK human rights organizations.
- (c) If it is hard for the government to be in the front line because it is North Korea at the other end of the conversation, ink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issues.

평화

Report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s Efforts for Better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Rev. Joseph Park

Director, Committee for Society,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1. Introduction to the Role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CCK) is a cooperative organization of 63 Korean Christian denominations, 22 institutional organizations, 49,419 churches and 12,000,000 followers. We focus on the epochal calling of church, to society, nation, history and the world.

Human Rights Committee within CCK was established two years ago and are executing various programs both in and out of Korea. But a comprehensive efforts for North Korean are made by the South-North Korean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17 years ago.

Korean Christianity does not believe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can be solved only by activity for NK refugees and people in North Korea.

For an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Korean Churches should discern precisely the realiti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the Kim Jong II regime's strategies to them, and gather the appropriate awareness and powers. More importantly, Korean Churches have to make an effort to definite the identify of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o solidity KOR-US alliance, to assume the position of a guardian of the Korean society, government and citizens, and to mobilize the churches of the whole world, world citizens, healthy forces, friendly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to seriously work on bringing about peace, human rights, love and justice to North Korean.

2. The Work of CCK for North Korean

The CCK have worked for North Korean in five different areas since 17 years ago. We describe these five areas as the work of "front-door, back-door, side-door, up-door and the spiritual-door". CCK, member denomination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a lot of Churches and believers have undertaken the work toward North Korean. But explanation in detail should be given up, because there are specific areas in which secrecy should be respected.

Brief descriptions of each area as follows:

1) The "front-door" work comprise of various activities through authorized channel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such a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f religious activities, humanitarian assistance, various projects, facilitation of continued relationships, eliciting reform to North Korea, and peace—making efforts.

- 2) The "back-door" work is strategic efforts as rescuing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converting them to Christ, rescues and strategic works inside NK. An enormous sum of money has been invested in these works, with numerous Christian leaders and local co-workers involved. Some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specifically protected and cultivating, and various projects are still in progress.
- 3) The "side—door" work focuses on collaborative aims of mobilizing action from other friendly nations as United States, or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world' media,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influential individuals.
- 4) The "up-door" work focus on utilizing all means of media such as broadcasting, internet, satellite TV, radio, video, and phonograph disc etc.
- 5) The "spiritual—door" work is literally a spiritual support as practical and futuristic. Activities include prayers for North Korean, strategic mission research for North Korean, NK human rights symposiums, administration of Reunification Mission College, fundraising for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training missionary for North Korea, safeguarding for South Korea identity, projecting for reunified Korea. The "spiritual—door" work aspires that North Korean citizens participate to lead a peaceful unification Korea.
- 3. Main Work for Better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Future
 - 1) The CCK will elicit research results in July 2006 through the "Special Research Committe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stablished on May 2006. And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

denominations in this September, CCK will gather influential powers of the Korean churches to actively propel in the new movement towards North Korean human rights.

- 2) The CCK will continue to undertake the "Protection and Rescu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with the support of Korean churches. And for the sake of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CCK will try to find coopera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civil diplomacy, for the sake of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 3) The CCK aims to strengthen mission projects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other official visitors in China, and also build up the special programs to support their re-entry into North Korea for "Mission inside North Korea."
- 4) In particular, we protect refugees of women, children and teenagers in China, and aim to continue to support their livelihood, education and betterment of their human rights needs.
- 5) In order to shape common sympathetic feeling to North Korean among Korean churches, citizens of South Korea and the world, we can hold events related to better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or sponsor and participate in it. In addition this, we will strengthen patriotic powers within South Korea and formulate a worldwide network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6) We aim to support North Korean human rights institutes, NGOs, various media, and leaders of friendly countries that work towards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visit the working field in North Korea. We will continue to assist their visiting to the working field as a guide, and educating them of the realities of North Korean citizens.
- 7) We stand by our firm position of opposition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s, betterment of human rights and opening and reforms of North Korean societ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hold powerful events such as petition movements

and "Candlelight rally for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8) Others

- 4. Demand for the Korean Churches, South Korean Government, China, North Korea and the World
 - 1) We urge Korean Churches to love the brothers in North Korea with charity of Jesus Christ. Korean Churches must support them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ten times more through prayers and devotion for human rights, freedom and emancipation of North Koreans. We call upon Korean Churches to lead the movement through all good means.
 - 2) The Korean government must not forget that the people including North Koreans are the owners of the country and sovereignty. We wish that the government would immediately assent people's fervent wish to improve NK human rights as Heaven's decree. We also demand that the government protects the identity of Republic of Korea, strengthens the KOR-US alliance, and reconsider the uncondi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regime without improvement of human rights.
 - 3) The Chinese government arrests, imprisons, and repatriates the North Korean refugees forcefully. But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host of the 2008 Olympics and 2010 World Expo, the Chinese government ought not to oppress the North Korean refugees nor repatriate considering its national image and international role in the future.
 - 4) As North Korea's called the "People's Republic,"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ensure the right to live of North Koreans, respect for humanity, religious freedom, freedom for residence and transportation and freedom of speech. North Korean regime ought to confess the oppression and sins for sixty years, apologize va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isintegrate the infamous political prisoners' camps.

5) We gratitude the countries related the Korean peninsula,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continued efforts. And we ask for them further assistance and particip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Better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not tomorrow's assignment but today's necessity."

평화

Assessments and Prospects on the Action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

Noh Ok-jae

Secretary of General

Good Friends: Centre for Peace, Human Rights and Refugees



1. Goals

- 1) Good Friends Approache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Movement
 - From the fact oriented, understanding whereabout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 Human Rights issues will not be used as a political instrument for ulterior purposes.
 - Human Rights issues are to advocate the people of North

Korean in their interest and position.

• Exploring practical measures for the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2) Objectives

- To conduct fact finding studies and presenting objective information to the public.
- To present practical measures to alleviate the situation by understanding the precise needs and requirements of North Korean people.
- To promote solidarity with other organizations within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 2. Activities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1) Activities in 1996-2001

(1) Objectives

-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violation is that the humanitarian standards are being threatened by famine and economic hardship. The Subsistence of life the foremost human rights concerns for the most people.
- Increase awareness of the North Korean famine situation an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Lectures, Fact finding activities, and active

campaign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 Research on the realities and causes of famine, the ensued hardships, leaving North Korea,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the awareness of North Korean people about human rights situations.

(2) Major Activities

- Research Activities
- 'Report on the Famine' (1998) after surveying 1,855 North Korean refugees
- 'Report on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Human Rights' (1999) after researching 2,479 villages in northeast China.
- 'Report on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North Korean Society and Economy by North Korean Citizens' (2000)
- 'Report on Juxtaposition of Attitude towards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2000)
-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 Various programs (1998-2003) such as emergency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or delivery of "Life in a Backpack" program to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 International Activities
- Submission of North Korean Refugee Reports to the UNHCR and other United Nations(UN) affiliated organizations to seek assistance to refugees (1998–2001).

2) Activities Since 2001

(1) Objectives

- Initia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focu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refugees on the border and those settled in South Korea
-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women and children.
- Focusing on the famine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wrote the repor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Food Crisis.' Prioritize the amelior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 Securing of basic social rights such as complete allowance of street markets, right for movement and recognition of private farming.
- Requesting to reform and improv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ducing the level of punishment for those who have offended for their subsistence by trespass the border illegally. Alleviation of tortures and inhumane treatment, abolition of the class system and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 guarantee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 Consultation to policy decis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increasing awareness of the lives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the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ies through publishing the "North Korea Today" since September 2004.
- Information dissemination on realities of North Korea in accordance to internationalization of the issues, submission of alternative reports and monitoring of collaboration with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or substantial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Major Activities

- Research
- Publication of "North Korean Famine and Human Rights" Report
 (2004)
- Research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2005, 2006) and support women and children
- Currently publishing the "North Korea Today" weekly webzine in both Korean and English (26th on June 21st, 2006), and Japanese version monthly. Over 12,000 Koreans have subscribed.
- International Activities
- Monitoring and submitted 'Alternative Reports' and the position papers to the various UN Human Rights monitoring bodies,
- 60th(2004), 61st (2005)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Geneva
- 31s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ittee (2003), Geneva
- 36th UN Committee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4). Geneva
- 33rd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005), New York
- Information exchanges and networking activities on human rights and the social developments in North Korea with various foreign missions and relevant organizations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field.
- Opinion Gathering Efforts in
- Forums

Forum for Korean civil organiza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relevant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2003), Peace in the

Peninsula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2004), "US's Intervention Policies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s" (2004), Expert Focus Forum for Amelioration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2006)

- Publications: 10 books published, including "Finding Hope of the Race", "The People That Crossed the Dooman River", "Stories about North Korea Told by North Koreans", "North Korean Society, What is Changing" and "Today's North Korea, North Korea's Tomorrow"
- Public education: educating the civil sector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its possible solutions

"Human Rights From the Rice Pan" Public Unification lecture (2004), Unification Conversation Fair "Lives and Dreams Heard from Brothers in North Korea" (2005) Stories about North Korea from Citizens of Some Countries (2006)

3. Prospects on the Activities

1) Direction of Major Activities

- (1)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Society
- Providing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society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rough the 'North Korea Toda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 News from various sectors and all walks of life in North Korea
- (2) Practical Measure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 Issues
- Research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particularly to the women and children.

- research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ctivities
- estimated total number of refugees as 100,000 people and around 50,000 refugee children are found to be in the three North Eastern states in China.
- married women are often threatened to be sent back by force to North Korea by the restrictions of Chinese government. Children of the refugees, whether they have a guardian or not, have poor education opportunities.
- Practical Measures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 Publication of reports on female and children refugees
- For the married women, recognition of their marriage as international marriage, approval of sojourn and temporary residence on the humanitarian ground, opposition to return by force in case of illegal sojourn, recognition of citizenship and legal education for the children who were born between them
- Minimal state assistance since most families are below the poverty level
- recognition of citizenship for children without it, humanitarian scholarships and legal education to children in need
- (3) Promotion of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Within North Korea
-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legal system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2) Expectations abo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rovement Activitie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 (1) Supporting the North through stabilizing the legal system and

publicizing

- Suggesting alternatives to the post—unification changes in North Korea and publicizing the matter
- Division of roles with civil organizations
- Assertive legaliz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Reconciliation of the Race'
- (2) Progressive Human Rights Diplomacy with North Korea
- Conversations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by official and unofficial means
- (3) Universal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 Rather than a defensive reaction such as abstaining from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 change to assertive intervention and ask for both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melioration of human rights to the North
- Development of universal and international logic behind South Korean policies fo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 3) Expectations about the Korea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orking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 Multi-level approach to amelioration of human rights amelioration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happen through increased developments and quality of life, awareness of human rights by the public, the drive of those working to resolve it, realistic potential and prioritized items and flexibility of policies of legalization. It cannot be achieved just by improvement or change in one department/sector.

- Discussion of Substantial Solutions
- Peace in the peninsula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not mutually exclusive. Research and effort to find a realistic approach that recognizes the needs and requests of citizens directly related are needed. An orderly approach should be employed.
- 4) Expectations abou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king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 Efforts to elicit reforms by North Korea are needed
 - Development and assistance of programs for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평화

Yoon, Yeosang

(President, NKDB Center)



- 1. The NKDB Centre is building a datab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within DPRK and abroad. This is similar to West German government's work from 1961 to 1992, but because the current ROK government is not carrying out this task, it is being done at a research level.
- 2. As opposed to the unproductive disputes of the past from ideological confrontations, various approaches to the NK human rights within NGO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have recently been merging, and the awareness level of the discussants are maturing.
- 3. The outcome of today's discussion on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 be summarized into four points:
- 1) In the beginning, many NGOs concentrated their efforts, with notable success, to address the lack of interes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2) Next, points regarding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gathering on the DPRK, insufficient data and information, and the verification and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were raised.
- 3) There is also an issue with technical cooperation.
- 4) The need to raise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North Koreans.
- 4. From here on, we need to concentrate our efforts on data accumulation, technical cooperation and raising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North Koreans. The ROK government should increase its efforts to gather information. Due to the limits and inaccessibility by civil societies, it is preferable for government to make the initiative. In addition, as technical cooperation has immediate impact on increasing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North Korean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In fact, this issue is more significant as human rights issues being raised by North Koreans is far more effective and preferable approach.
- 5. Taking a step beyond the division of roles within the ROK, it is time to consider the assignment of role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 division of roles within the ROK has been agreed upon, even distribution of roles between China and the ROK, as well as international community is critical. For instance, the ROK can gather information and carry out campaigns while China can help the North Korea defectors. In addition, as certain types of work are only possible to be carri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 or within the DPRK, more research into this matter is required.

Kim, Hee-Jin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1. Although it is more than good news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re becoming a central issue, it should be clearly noted that realizing human rights is the ultimate goal, not a means to another end.
- 2. Until now, as represented by some organizations, North Korea has been known to outside world as an uninhabitable place, where public execution, torture and political criminal camps abound. However, "North Korea Today" published regularly by "Good Friends" which contains realistic facts on daily lives of North Koreans awakened us that the North Korean Society we had known was highly exaggerated and distorted. I personally think that there should be more such groups that deal directly with the people. The international society's aware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changed in recent years and the local organization's awareness has changed as well.
- 3. The suggestion to connect the betterment of human rights with

economic assistance as incentives looks to be a highly approachable goal at current state. Substantial measures that can ameliorate the basic human rights needs of North Korean citizens should be sought. The famine and refugee problem are admittedly the most urgent problems of them all. Then, efforts to include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discussion and recognizing them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follow. Liber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continuously be encouraged and the provision of correct information required.

- 4. I have four questions regarding today's presentation.
- 1) Public execution, one of the key issues that arise during North Korean discussion, is one form of capital punishment. If one is for capital punishment but against public executi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such a stance is flawed. If one thinks public execution is morally wrong, please join the movement for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 2) I strongly support Professor Won Jae-Chun's suggestion of South Korea becoming a human rights leader in Asia. For South Korea to have Asian leadership, it needs to work on some of the domestic problems as suggested by the UN.
- 3) It is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material by Christian Council of Korea: '...we will strengthen patriotic powers within South Korea.' I would like to know how patriotism could help human rights issues.
- 4) It is important that the public does not mistakenly think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cerned only with North Korea. We frequently talk of the UN resolutions regarding international pressure about the North Korean problem, but there have been 61 resolutions

in 2005 and 42 until June of 2006. The subjects of these resolutions are other nations in which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taking place, and North Korea is merely one of the 61 cases.

5. The amelioration of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should be discussed as part of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 that espouses basic human rights for all individuals. Human rights advocacy organizations should not discuss human rights violations just because it is about North Korea and should not acquiesce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just because it is North Korea. I strongly agree with the opinion that human rights cannot exist without peace. And the various actors in South Korea should agree on this issue. Although overdue, I hope to see more balanced voices.

평화

Seo, Bo-Hyuk

(Research Fellow, Community of Korean Political Studies)

1. When we address the NK human right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overall situation in the DPRK including humanitarian circumstances and security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r because thes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issue. In addition, the present situation ("Sein") and the direction where it must head ("Sollen") should not be confused.



- 2. Some advices for NGOs working for the NK human rights are:
- 1) Considering the NK human rights, most people accept the idea that human rights are universal. However, when human rights are understood and applied in reality, the notions should be taken as neither absolute nor standardized.
- 2) Considering the complexity and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issue, it must be recognized that each group's work is only partial and the other groups' work in different fields must be acknowledged so that the endeavors can be mutually complemented.

- 3) Needless to say, human rights is a universal value worldwide, but as there are many other important values such as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reconciliation, and democracy, the divers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 3. On improving the NK human rights, the NK government is the prime violator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the protector. Because of this dilemma, it is very difficult to balance between criticism and cooperation with the NK government. Even though exposing the current state of the NK human and criticiz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itself may be meaningful, at the level of promoting practical improvements, partnership with the NK government becomes critical.
- 4. Going down to more specific details, two issues are raised.
- 1) The extensive efforts by the South Korean NGOs led to greater interes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ventually to the UN resolution. Most give favorable evaluation of NGOs' contribution to notifying the world about the previously unknown NK human rights situation. However, the NGOs were negligent on exploring ways to bring practical improvements in NK human right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K government as well as failing to suggest the roles of the NK government. In addition, it must be considered that pressuring the DPRK may increase DPRK's apprehensive atmosphere, resulting more inflexible attitude by the DPRK.

- 2) The following discussion is abou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Helsinki Accord. To apply this agreement, two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First is the balance of power. In the 70's there was a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Europe, but it is not the case with present North Korea. Second is the balance in benefits. In the Helsinki Accord, there was balance of interests and benefits such as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in the socialist states for Western Europe while the socialist states maintained territorial and political status quo as well as economic exchange with the West.
- 5. I agree with the active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considering the limited capacity of NK government to bring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and the lack of civil societies in the DPRK. However, the prime subjects of a nation's human rights improvements are its government and the people.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play a supporting or catalytic role. If such positions are reversed, many side effects may occur.

평화

Gail Kim

(Research Analyst, North East Asia Project, International Crisis Group)



Three basic factors shape a state's decision to improve human rights: political will, largely determined by external incentive structures; capacity, both technical and financial; and standards, universal and never to be compromised but to be used more as a yardstick than an indictment. While a state that falls gravely short of human rights standards cannot cast off blame or responsibility onto other states or institu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have its own responsibility to promote human rights by creating positive incentives and sharing capacity. In order for an Asian human rights regime to be anything more than a paper tiger, states must first work to create the right incentive structure.

If the Helsinki Accords are the model here,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the Accords were reached as part of a larger move towards engagement. There was a desire to participate, not least for the security guarantees included in the final act. Although it opened the door for progress on human rights, advances here were also dependent on the efforts of local civil society movements.

In Asia today, with practically every state vulnerable to criticism and human rights widely associated with regime change rhetoric, there is no incentive to participate in a human rights regime. Even the formation of such a regime against a common enemy is unlikely given the suspicion, mistrust, and sensitivity between states on other issues such as territory. Even more unlikely is North Korea, a state known to exploit its position outsi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ing back into the fold through a human rights channel.

At the end of the day, North Korea does want access and lever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is challenged most directly by the security situation — North Korea is more likely to respond to progress in this area than any other. Ultimately the US and other parties will have to commit to serious negotiations in which security issues are separated from human rights, and during which basic humanitarian aid continues. Advances here can then g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ace to bring in and build up capacity to better the lives of ordinary North Koreans.

This will likely be a long process with setbacks along the way, and the undeniable fact is that people are suffering now. This means that until we see standards being met, someone needs to stand in the gap and defend human rights. What we have heard today from groups that are on the ground proves that civil society and private NGOs can and should play this role. Gathering accurate information and making as much of it widely available as possible is essential.

Two other issues that should be given high priority are cross-border trafficking and poverty. Crackdowns on trafficking should focus on the demand side and must be accompanied by victim's assistance and reintegration programs. NGOs should also make as much use of the space they have in China as they can to alleviate the extreme poverty that is contributing to the trafficking. Opening the programs whether they target children's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or basic relief - to Chinese citizens who are also in need may go a long way in gaining Chinese cooperation.

평화

Kim, Soo-Am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There are two dimensions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e is how to solve this problem and the other is how to manage the political conflicts that may occur during the process of solving it. Until now, most of the conversations have focused on the latter, forcing us to waste our time with unfruitful debates. Progressive groups may be concerned that North-South Korea issue may be devaluated as a dependent factor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enda; bu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understand the political significance that human rights have on the international forum.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there is the concern that an overemphasis on the uniqueness of North-South relationship might weaken the international coalition. It is time to stop our debates and begin discussions on detailed practical approaches.



2. In this context, how do we define 'pressure'? It is a given that North Koreans themselves must play a major role in improving human rights in their own country; however, the closed nature of their society

makes it very difficult for them to tackle the issue of their own initiative. In light of such circumstances, we must allow that we need both a long-term strategy for opening up NK society and an immediate one to propagate information within NK. Although it isn't desirable to criticize NK for "pressure" sake, consistent demands are very necessary. For example, one of the key issues of UN resolutions in 1997 and 1998 was about 'freedom to reside in and travel to any place.' North Korea later introduced new article of 'freedom to reside in and travel to any place' in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PRK in 1998. Also, when the NK government submitted a report o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2001, the committee strongly demanded, in its final review document, that NK change its criminal law system by repealing the articles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adap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ccordingly, in 2004, North Korea amended its criminal code as requested. Besides, conservative groups also need to go beyond their biased view of NK human rights.

- 3. Progressive groups, in their efforts to improve the basic living conditions of NK people, must also develop strategies to ensure their political and civil rights. At the same time, conservative groups must consider strategies to ensure the basic survival needs of NK citizens.
- 4. There is a tendency to discuss NK human rights according to specific regions. For example, NK human rights dialogue have largely centered on the border areas. Therefore, human rights abuses that might occur in the inner regions of the country might escape attention, frustrating our effort to gain a total human rights picture.

평화

Noh, Ok-Jae

Secretary General, Good Friends

Q: In regard to your reporting of internal NK news through your 'NK Today', do you intend to give clearer voice about the causes and become involved more actively? Also, do you have plans to widen the discussion to include how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e faring in NK?

A: Of course we do. So far, we are only proving the very basic information through 'NK Today.' In the near future, we seek to discuss concrete methods we can use to improve human rights within NK, what areas are deficient when compared to norm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how to resolve the problems thus unearthed. We will also try to elevate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NK citizens themselves.

Cho, Gi-Youn

Manager, Department of Society, CCK

Q: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riotic powers and human right improvement? (or how patriotism could help human right issues?) A: I want you understand 'patriotic powers' in the context that some civil groups need to have more diverse views toward the human rights issue. The term 'patriotic powers' is an interpretation by the conservatives referring groups of those taking balanced approaches in the issues of humanitarian aid, the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human rights, rather than an unconditional approval and support for North Korea while ignoring the human rights problems.

Han, Ki-Hong

President, Network for NK Democracy and Human Rights

Q: Shouldn't death penalty in general be opposed rather than just the public execution?

A: Personally, I am against the death penalty. But, the core issue of the current problem is that, the procedure of criminal law is not abided by in North Korea, and the verdict of death sentence is made within 20 minutes by the judge without pleading and the sentence is carried out immediately. More than 60% of defectors have witnessed it. Further more,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are present to see all the processes. These must be changed.

There was a question "Isn't it your tactic to overturn the NK regime to raise the human rights issue intensively?" If it will benefit the people of the DPRK, I would agree. For instance, despite problems, if operat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allow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of the North and the South, I think that would be a positive result. Although I do not personally agree on the idea of paying cash for Mt. Keumgang tour, I will not oppose 100 or 1,000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Kim II Sung coming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a month for an exchange program. After all, strengthening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i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would it possible to overturn the Kim Jung-Il regime if I tried to do it? Even if I try so, such policy cannot be executed if our people don't want it. Why do those people who said democratization were as important a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Park Jung-Hee's era say it is not proper to talk about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because the economy is still undeveloped? Such people apply double standards to the same matter. It is not possible to unite contrasting ideas and arguments. After all, it is the people who have to decid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Lee, Tae-Ho

Deputy Secretary General, PDPS

Q: Tell me about specific activities the progressive camp is carrying out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A: It is a little bit embarrassing question which contains some blame. In my opinion, the most progressive groups in Korea are "Good Friends" and Ven. Pomnyun. They tried to persuade us by saying that people were dying and we needed to do something to save them.

More specifically, there are many lines in the progressive camp. It can be controversial to say tha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is a progressive group. But, the first ones who introduced the severe circumstance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progressive activists who worked for the labor campaign for foreign workers. Personally, I think that can be a flaw that the progressive camp has once avoided NK human rights issue while trying to create a mood of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But, I think the progressive camp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t must have been very helpful for NK human rights that they urged for continual humanitarian aid and maintaining a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o matter what the obstacles.

This is probably a controversial statement, but I feel if North Korea sells missiles and earns money, it could be helpful for their people's human rights. Selling missiles is a business that all other nations do, and even though it can be a issue of security, it might be helpful to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in North's public welfare. Considering a military authority in a socialist state is a military, industrial, economic and labor organization all at the same time, we can assume that if they earn more money, they can affect NK to be more liberalized.

Lastly, I want to add one more thing. That is, when talking about the human rights in China, we mainly refer to the human rights issue in Southern China. Taking a hard look at some events taking place there, those events are similar to those in the pioneer era in American history and the Enclosure Movement in England. Is this a socialist factor? Or is it a capitalist factor? Are those events in Southern China more severe than those in the Pioneer Era in America? Or Are those harsher than those in the Enclosure Movement Era? In this aspect, we should consider various sides of the human rights issue.

Won, Jae-Chun

Director of Campaign, Citizen's Alliance for NKHR

Q: Do you think the Helsinki process is applicable to North Korea?

A: Responding to my remark on the human rights regime, Dr. Seo Bo-Hyuk questions whether it is too early to conduct the Helsinki process. However, I am 100% sure about that an Asian statement on human rights will be made in 20 or 30 years and it is indispensable to have a new human rights regime.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will have one economic system and consequently, those countries will need a common standard to deal with the quality of life such as foreign workers' issue. An Asian covenant on human rights will be made through a multilateral process of addressing the quality of life issue.

The critical part of the Helsinki Agreement was actually about security of regimes in Europe. Relating it to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U.S. frequently used the term 'regime change' some years ago, however, they do not use it any more in spite of many events. They now use the term 'regime transformation.' I think the United States intend to accept and ensure the North Korean regime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This is also true of South Korea. We do not accept the idea that using military means is one practical option. We should keep persuading North Korea to believe we do not have any intention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I think South and North could discuss various matters on human rights if such trust is built between both.

It is true that we are not still fully capable of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Asian human rights regime. For example, we criticize China for not giving status of refugees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but we actually have nothing to say about it because we just began to receive refugees in 2000 and we have accepted only 100 refugees until now. In addition, we still have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security law. However, it is time for us to speak up to resolve such issues and give priority to human rights in our diplomatic policy in Asia. I am also willing to do this.

Lastly, I want to talk abou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ho are deprived of their human rights in China. What do we do to deal with this matter? I think we should continually raise this matter in the UN Committee, and NGOs need to hold a full campaign on this matter. Furthermore,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should sit down together to find ways to solve this problem. Then, they should discuss more detailed ways such as building a temporary refugee camp in Mongolia under UN aid or issuing temporary resident visas to North Korean defectors.

평화

Closing Remarks

Ven. Pomnyun Sunim Chairperson, The Peace Foundation



- 1. The biggest achievement from today's symposium is not how many discussions were made and how many were covered in depth, but how we were able to confirm the fact that people who hold different ideas and views, for instance the progressives and the conservatives can gather in one place and agree on the goal of alleviating the sufferings of North Koreans.
- 2. It is natural to have different ideas in deciding priority to solve the human rights issue. Some may prioritize on peace as the basic foundation to solve the problem while others may pay attention to saving the starving people or those subjected to human trafficking. Taking a broader view of the situation, we can approach these differences with a concept of different roles to be played and thereby solve this issue.
- 3. We now need to search for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and I wish for such meetings as this to be a foundation to bringing unity to our societies.

평화재단 소개 Introduction of The Peace Foundation

They



평화재단 소개

평화재단은

이런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을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고 해방 직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서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관계 속에 체제경쟁을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되어온 불안전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의 활동

평화재단은 2004년 10월 25일 출범하였고,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연구 및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1. 정책연구시업

- ① (평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연구
- ② (통일) 남북한의 통일 미래를 대비한 통일방안 연구
- ③ (인권)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
- ④ (한민족 네트워크) 70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공동체 네트워크 연구
- ⑤ (동북아 평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 ⑥ (갈등·분쟁) 세계 분쟁지역의 갈등과 그 해결에 관한 연구
- ⑦ 위의 활동을 위한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국제회의 및 도서 발간

2. 교육, 훈련사업

- ① (대중교육)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민교육
- ② (교육훈련) 통일 미래를 위한 활동가 교육훈련
- ③ (월례강연회)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련 인사 초청강연회

3. <u>포럼과 토론회</u>

- ①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통일관련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 포럼
- ② (단체 간 네트워크 포럼) 사회단체 간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는 활동교류 협력 포럼
- ③ (월례 토론회) 관련 쟁점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4. 도서, 잡지 및 웹진 발행

- 계간지 발행
- ② 인터넷 웹진 발행

평화재단이 걸어온 길

- 1998 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1발의모임
- 2003. 1 ~8. 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4발의모임 10여회 진
 - 9. 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5발의모임 및 사무실 마련
- 2004. 1. 실무진 구성(2명) 및 내부 세미나 8회 진행
 - 8~10 재단 창립 준비위원회 구성
 - 사무총장 임명(정안숙) 및 법인 준비
 - 10.25 평화재단(가칭) 창립 발기인 대회(40명) 창립 이사회 (9명)
- 2004. 11.29 통일부 재단법인 설립 인가
 - 12.21 임원진 모임(법인인가축하 및 2005년사업계획수립건)
- 2005. 4~ 9.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국민화합을 위해
 진보보수, 여야 등 각계 인사 만남(100여명)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방문,
 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 만남 2회(6월, 8월 각 20여명)
 북한 입장 청취를 위해 중국 방문 7회
 상근 실무진 확충(총 9명) 및 사무실 확장
 - 7~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준비를 위한 연구팀 정기 모임 (매월 2회 이상)
 - 9. 통일강좌 3회(130여명 참가)
 - 9.~11.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단행본 제작 준비 대학생, 일반인 대상 통일교육영상물 제작(5회분)
 - 10. 7 제1차 평화재단 임시 이사회(임원 추천, 1주년기념행사건)
 - 11.15 평화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 2006. 3~ 평화재단 전문가모임 구성 및 운영 평화체제구축과 통일방안연구 전문가모임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전문가모임 남북화해와 북한인권개선 연구 전문가모임

평화법제 연구 전문가모임

- 2006. 4 제1차 평화재단 4월 전문가 포럼 '최근 조·중관계, 어떻게 보이야 하는가?' 제2차 평화재단 5월 전문가 포럼 '데펜호이어 교수 초청강연회' 제3차 평화재단 6월 전문가 포럼 '중급평화국가론'
- 2006. 6 제1차 남북화해와 평화 네트워크 워크샵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 2006. 7.11 제2차 평화재단 심포지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

함께 하는 사람들

고문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오 현 (백담사 회주)

지도위원

오재식 (성공회대 초빙교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백낙청 (재단법인 시민방송 이사장)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도 법 (생명평화탁발순례단 단장)

스티브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

김형기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사 **김홍신** (소설가)

윤명철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센터장)

이사장 법륜(정토회지도법사)

감사 김기진 (전 천안공원묘원 전무)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사무총장 **정안숙** (재단법인 평화재단)

Activities of The Peace Foundation

As of July 2006

We wish to accomplish to such peace

The Peace Foundation.

wishes to create a new culture, where individuality and diversity harmonize in perfect balance where love transcends all malice and envy. harmony transcends animosity and conflict, and peace transcends strife and war, just as clusters of various flowers create one parterre.

The Peace Foundation,

wishes to bloom flowers of peace by acknowledging and understanding our differences by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conflict that may stem from our differences by allowing diversity and abundance thrive through our differences.

The Objectives of The Peace Foundation

The Peace Foundation holds involvement in peace and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s its main objective.

The Korean peninsula was grievously afflicted by colonialist rul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after its emancipation, was divided into the North and South by the great powers.

Millions lost their lives while the Korean peninsula lived through the war as the scapegoat of the Cold War. For over half a century, it experienced much strife and conflict through the ideological struggles of cold war antagonism.

The Peace Foundation seeks to take an active part in resolving such pain and affliction caused by the peninsula's past struggles. It holds peace settlement and unification within the North and South as its main objective.

Firstly, it seeks to ease the heightened tension caus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erform a turnabou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that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armistice, and construct a war—free, durable peace structur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Secondly, it seeks to overcome the 60-year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ge onward toward unification by the North and South both acknowledging and understanding their different systems, wiping away the painful stains of cold war antagonism, and pursuing common interest through cooperative exchange.

Thirdly,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collaborative prosperity and harmony of East Asia, with the hope that the endeavor for peaceful unification within the Korean peninsula will help and not harm the interests of Northeast Asia and its surrounding countries.

Also, a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Peace Foundation is impartial to a particular ideology, doctrine, or political party.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materialization of a peaceful world by garnering national consent and bringing an end to strife and structural violence.

Activities of the Peac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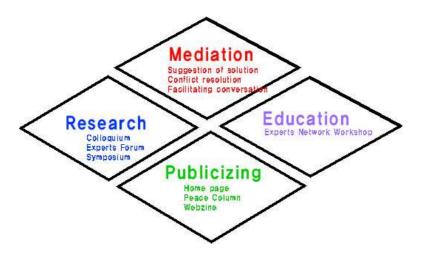
Long-term Plan Initiatives

- 1) Develop middle and long—term policies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 2) Seek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crisis management of the peninsula.
- 3) Arbitrate crises and mediate pea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the US and the North Korea, and the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South Korea.
- 4)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Activities in 2006

- 1) (Research) Research peace and unification policies through colloquiums, experts forums and symposiums.
- 2) (Education) Facilitate educational networks through Expert Network Workshops.
- 3) (Arbitrating and Mediating) Help establish peace in the peninsula by unifying the national opinion through facilitating conversation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leaders.
- 4) (Publicizing) Form a public opinion supporting peace by activating discussion of the unification and sharing research results through homepage and webzine.

Main Activities of 2006



1. Research

Focus Activities

- ① (Vision and Prospect) Suggest middle and long term vision and prospects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and a peaceful future.
- ② (Suggestion of Alternative) Suggest clear policy alternatives by forming research groups for every sub field and theme.
- (3) (Network) Form a network between researchers and activists.

(1) Colloquiums

- Goals
 - (1) Providing a venue in which experts can share information and discuss.
 - ② Researching various policies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③ Researching various policies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Administration:

(1) Each team, comprised of less than 10 experts of a specific topic such as professors, scholars, policy experts, lawyers and related personnel, will meet once a month to discuss various matters and host an experts forum twice a year. Teams will also present the year's worth of research results at the November annual symposium and publish a journal.

Th	iemes	Establishing a Peace System and Researching Unification System	Understanding and Research of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Research for Better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rth-South Reconciliation	Research of Legal System of Peace
Ме	mbers	Dr.Cho,Seong-Ryeo ul and 8 members	Prof. Kim, Young-Soo and 8 members	Dr. Lee Keum-Soon and 5 members	Lawyer Kim,Dong- Kyun and 8members
	search ntents	Research on policies and solutions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Research on policies to establish a peace system Discussion and Policy analysis on Unification System	3. Seeking reaction options based on	1.Collect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n realities 2. Seeking realistic policy options for betterment of human rights 3. Accommodating various discussions on human rights	1. Legal research on "Humanitarian Assistance Act" 2. Legal research on "Reconciliation Act" 3. Legal research on "Peace Treaty"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2) Experts Forum

- Goals:
 - 1 Discussing peace, unification and human rights
 - 2 Activating discussion and formulating public opinion
 - (3) A venue for discussion and interaction between members and the research panel
- Administration:
 - ① The colloquium teams hosts eight forums per year.
- Program

- ① April 20 (Thur):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future outlook"
- ② May 19 (Fri): "Legal Problems in reunification of Divided States Implication of German Reunification to two koreas"
- ③ June 14 (Wed): New Proposal for South Korean Diplomatic Security: Intermediate Peace Country Theory
- ④ September 14 (Thur): Five Misperceptions about North Korea (temporary title)
- ⑤ October 12 (Thurs): Humanitarian Assistance to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 (temporary title)
- ⑥ December 14 (Thurs): Plans for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temporary title)

(3) Symposium

• Goals:

- ① First Symposium: Internationalization of key agendas and formul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public opinion through an international symposium.
- ② Second Symposium: Comprehensiv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a year's worth of colloquium's accomplishments and co—host the Peace Foundation's anniversary event.

Program Proposal

- ① July 11 (Tues): Human Rights Issues International Symposium * Theme: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 * Target Audience: Foreign press and diplomats in Korea, scholars, researchers, civil activists, etc.
- ② November 14 (Tues): the Peace Foundation's Anniversary Symposium on Unification Policies
 - * Each colloquium will present research accomplishments
 - * Theme: Legal System to Realiz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South Reconciliation

2. Education

(1) Experts' Networking Workshop

- Goal: Activists and experts in various sectors of the society will understand each others' standpoints and share information to formulate a friendly network and cooperation.
- Administration :
 - ① Length: 1 night 2 days
 - 2 Participants: 20 persons per workshop
- Program
 - ① First workshop on June 30 (Thur) July 1 (Sat):
 - Subject: A workshop for Activists in Better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 ② Second workshop in October:
 - Subject: Workshop for Activists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 (temporary title)
 - ③ Third Workshop in November:
 - Theme: Workshop for Activists for Peace in the Peninsula and Unification Movement (temporary title)
 - (4) Forth Workshop in December:
 - Theme: Accomplishments and Assignments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temporary title)

3. Arbitrating and Mediating

(1) Focus of Activities

- (1) (Arbitrating Conflicts) While maintaining the balance, mediate and arbitrate the conflicts opposing ideologies make.
- ② (Suggestion of Solutions) Seek and suggest alternatives to resolve conflicts.
- (3) (Facilitating Conversation) Encourage and facilitate active conversation

between standpoints and serve as the mediator.

(2) Activities

- ① Arbitrate crises and mediate peac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the US and the North Korea, and the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South Korea.
- ② Continued shar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 between main policy setters in related countries.
- ③ Formulate and pro-peace public opinion to make official conversation and interaction possible with North Korea
- ④ Promote unified opinion on unification by conversation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social leaders.

4. Publici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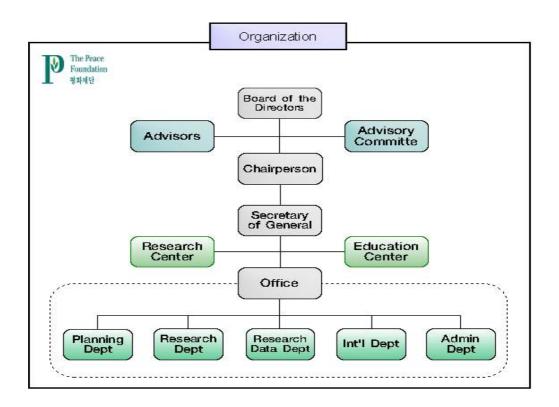
(1) Focus of Activities

- ① Publishing pro-peace opinions and "Peace Column" (editorials) that delivers
 - clear messages
- ② Share research results of the Colloquiums and Experts Forums via foundation homepage.
- ③ Develop a portal site to store and provide large quantities of information and data.

(2) Stabl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n Active Homepage

- ① Stabl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homepage
- ② Bi-weekly "Peace Column" to suggest and deliver main agenda and messages
- ③ Administration of homepage in English / Publishing English editorials ("Peace Column")
- (4) Expansion of sponsoring members and stable management (CMS)
- (5) Storing and sharing research data of important agendas

Organizational Chart



Executive Members

Advisors

Suh, Young Hoon

President, The Korea Federation of Common Good Movement for New Society

Ohhyun Sunim

l Head Master of Buddhist Priest, Temple of Baekdam

Advisory Committee

Oh, Jae Shik

| Visiting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Kim, Chin Kyung

l President,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Kim, Myung Hyuk

| Chairman, Korea Evangelical Fellowship

Paik, Nak Chung

Chairman, The Citizens' Broadcast Foundation

Mun, Kyu Hyeon

| President, Catholic Priests' Association for Justice (CPAJ) in Korea

Yoon, Yeo Joon

| Former President of Yoido Institute /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e-Il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G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obub Sunim

| Buddhist Priest, Chairman of Life Peace

Steve Linton

| Chairman, EugeneBell Foundation

Kim, Hyung Ki

|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Board of the Directors

Kim, Hong Shin

| Novelist /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oun, Myung Chul

| Professor, Dept of history at Dongguk University Kil, Jeong Woo

|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Strategy & Development of JoongAng Ilbo

Kim, Young Soo

|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at Sogang University
Kwon, Young Kyong

| Professor,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Cho, Seong Ryoul

> | Director, Center for Int'l Relations Studies, Research Institute for Int'l Affairs (RIIA)

Chairman

Pomnyun Sunim

| Chairman of Jungto Society

Auditors

Kim, Gi Jin

| Former Executive director, Cheonan Cemetery Park Kim, Dong Gyun

| Attorney, Dasan Legal Affairs Office

Secretary of General

Jung, An Sook

| The Peace Foundation

프로그램 | 제2차 평화재단 심포지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

13:00 접수

13:30 여는 의식

인사말

축사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마크 지멕 '주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소장

기조발표

남북화해와 북한인권 개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14:00 제1회의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사 회 |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주제발표 |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논 평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

킴 루오토넨 '주한핀란드대사 : EU이사회 의장국

주디스 고호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울리케 볼프 '주한독일대사관 1등서기관

정진성 '유엔인권소위원회 정위원, 서울대 교수

김문환 '한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과장

15:40 Tea Break

13221130

16:00 제2회의

국내 인권단체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

사 회 | 김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 원재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한동대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조기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부장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론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타 소장 토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게일 김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 프로젝트 연구원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7:30 전체토론 (질의응답)

폐회사 & 폐회 18:00

hat can be done the North Korean Rights? to improve

-Focusing on Practical Approaches-

Reception 13:00

13:30 Opening

Congratulatory performance

Welcoming Remarks

Congratulatory Speech

Cho, Young-Hoang

(Chairperson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arc Ziemek

(Representative of Konrad Adenauer Foundation in Korea)

Keynote Speech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 South Korea and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 Possible ways to move forward together?

Ven. Pomnyun Sunim

(Chairperson, The Peace Foundation)

14:00 Session 1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Divergent Approaches

Moderator | Kil, Jeong-Woo

(Executive Director, Int'l Strategy & Development of JoongAng Ilbo)

Presentation | Lee, Keum-So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cussion |

Joseph Y. Yun

(Minister-Counselor, Political Affairs, The US Embassy in Korea)

H.E. Kim Luotonen

(Ambassador of Finland to Korea: EU Council)

Judith Gough

(Political Counsellor, The British Embassy in Korea)

Ulrike Wolf

(First Secretary, Political Affairs, The German Embassy in Korea)

Chung, Chin-Sung

(Member of the UN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Kim, Mun-Hwan

(Director of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15:40 Tea Break

16:00 Session 2

Practical Approaches by South Kore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for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Moderator | Kim, Dong-Kyun (Committee for reunificatio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resentation |

Won, Jae-Chun (Director of Campaign,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Lee, Tae-Ho (Deputy Secretary General,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Han, Ki-Hong (President, Network for NK Democracy and Human Rights)

Cho, Gi-Youn (Manager, Department of Society,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Noh, Ok-Jae (Secretary of General, Good Friends)

Discussion |

Yoon, Yeosang (President, NKDB Center)

Kim, Hee-Jin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Korea) Seo, Bo-Hyuk (Research Fellow, Community of Korean Political Studies)

Gail Kim (Research Analyst, North East Asia Project, International Crisis Group)

Kim, Soo-Am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7:30 Plenary Discussion

18:00 Closing

회의 프로그램 및 사진

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